

2000년 봄호

언론중재



특집

[전망]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국내 논문

선거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99년도 중재신청 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

2000. 봄

차 례

특 집

전망/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 4 · 미디어융합과 규제 · 김대호
- 21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 황성기
- 37 · 인터넷 신문 · 방송과 반론보도 · 박선영

국내논문

51 · 선거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 박형상

기 고

62 ·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 염규호

위원칼럼

82 · 언론과의 질긴(?) 인연 · 신영철

통계보고

86 · 1999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해외동향

108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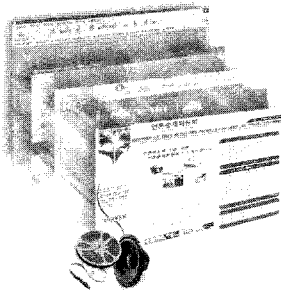
- 114 · 언론중재신청사례
- 126 · 선거기사심의사례
- 136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54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64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위원회 소식

168

지상중계

170 · On-Line 중재상담실



계간/2000년 봄호 · 제20권 · 제1호/통권74호
 인쇄/2000년 3월 25일 · 발행/2000년 3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영식 · 편집인/이병훈
 인쇄인/김형술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 * 본지는 잡지윤리수칙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특 집

<전 망>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미디어융합과 규제

김 대 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 동 대학원 석사
-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언론학박사
-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팀장 겸 연구위원
- 한국방송학회 편집이사
- 현재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방송정책』
- 『멀티미디어시대를 대비한 미디어 정책』
- 『세계의 방송법』 (역서)등

I. 들어가는 말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은 미디어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디지털화에 기인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전자미디어 서비스간의 구별과 장벽을 없앤다. 지금까지 매스 미디어 규제는 특정한 미디어 양식과 정보형태에 의해 구별되어 왔다. 방송, 영화, 신문, 통신 등은 각각 별개의 서비스와 산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따라 이러한 정보형태에 따른 서비스 구별이 어렵게 되고 어떠한 콘텐츠도 어떠한 전자 전송 양식에서든 자유롭게 전송된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미디어 융합을 가속화하고 종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디어 융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융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¹⁾

첫째, 미디어 시장구조의 변화이다. 기존에 한 시장에 속해있던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업들도 융합된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합병이나 제휴 등에 적극적이며, 따라서 미디어 산업이 변화한다.

둘째, 서비스가 변화한다. 융합의 결과 기존 서비스의 특징을 혼합한 전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며, 내용과 액세스 과정 모두 맞춤화(customized)되어 간다. 그러나 VOD와 같은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셋째, 수용자의 위상이 변화한다.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정보의 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수용자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주도할 여지가 훨씬 확대된다. 그러나 수용자의 변화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구분, 예컨대 TV와 PC의 구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1) OECD, *Regulation and competition issues in broadcasting in the light of Convergence* DAF/CLP(99)1, 1999, pp.13-14.

미디어 융합은 시장구조와 서비스
그리고 수용자 위상을 변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규제 문제를 제기

이러한 미디어 융합의 결과 당연히 미디어 규제에 변화가 나타난다. 미디어 융합에 따라 종전에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근거한 미디어 법제는 기술, 산업 정책 이슈를 다루는 규제로 변화하게 된다. 예컨대 융합에 의해 미디어산업에서 지배적인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편성, 서비스 제공, 소비자 단말기에 이르는 산업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지배하려 하면서 미디어 기업간 결합-합병이든 전략적 제휴든 간에 -을 낳는다. 이는 미디어 집중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수용자와 산업간의 이해의 차이도 불러일으킨다. 방송의 공공서비스와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같은 공적책임 사항도 변화하게 되며 내용규제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융합에 의해 이러한 새로운 규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미디어 융합이 가져오는 규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 융합의 전개를 살펴보고, 미디어 규제 방식과 이슈들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규제 이슈로는 미디어 집중, 내용규제, 보편적 서비스, 규제 체제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미디어 융합의 전개

1. 기술의 융합

지난 수년간 네트워크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송 데이터의 속도, 저장 능력, 정확도가 크게 증진되었다. 디지털

전송 기준(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음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를 다양한 형태의 전송 방식(유무선, 광통신)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더욱이 네트워크의 전송 능력은 디지털 압축기술에 의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영상 압축기술로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가 세계 표준으로 발전하였다. 디지털 압축기술은 용량, 속도, 질의 고도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은 전화, 케이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간의 융합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분야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통신, 방송, 컴퓨터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서로 다른 소비자 단말기(전화, TV수상기, PC)를 연결시키고, 새로운 복합 다기능 단말기를 낳는다. 다양한 부가가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가 소비자 시장에서 각축을 벌인다. 메시지 제공서비스에는 종전의 전화에 데이터 통신, 이메일, 동영상 정보, 팩스 전송, 온라인 정보, 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어 홈쇼핑뿐만 아니라 홈뱅킹,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따른 전송 방식도 다양해진다. 위성을 이용한 고화질TV(HDTV), 전화망이나 케이블TV망을 통한 영상 서비스 제공, 케이블모뎀이나 초고속가입자망(ADS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네트워크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변화이다.

기술의 융합은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

정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이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융합에 따라 미디어 융합이 더욱 현실화하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다.

2. 서비스의 융합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으로 상이한 미디어들의 융합이 가능해지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낳으며, 양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서비스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정보 형태에 의한 서비스 구분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을 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간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텍스트, 영상, 음성 콘텐츠가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콘텐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묶여질 수 있고, 콘텐츠 형태에 따라, 방송서비스나 통신서비스나 신문서비스나 하여 구분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융합 서비스인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인터넷은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은 신문, 방송과

같은 일대다(一對多) 서비스(one to many service)는 물론, 이메일, 전화 등의 일대일(一對一) 서비스(one to one service)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 화면에 재생되는 서비스에는 신문 기사, 잡지의 사진, TV 프로그램, FM 음악, 전자 편지, 전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을 보면 뉴스서비스만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²⁾ 더욱이 인터넷신문이 포털 사이트화 하면서 포털사이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³⁾ 이는 인터넷신문이 광고유치는 물론 전자상거래 등의 부가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신문 서비스를 전통적인 신문서비스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새로운 융합서비스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작용성의 의미는 콘텐츠 제공자와 수용자의 실시간 교류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통제력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콘텐츠 제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용자는 그에 맞추어 받아보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해 지난 정보의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고, 방송도 실시간 방송만 볼 수 있

2) 1995년 3월 중앙일보의 '멀티미디어 전자신문'에서 출발한 인터넷신문은 초기에는 인쇄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여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3) 포털사이트란 사용자가 인터넷에 처음 접속할 때 접하게 만들어 검색, 채팅, 메일, 포럼, 쇼핑 등 모든 것을 한 사이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윈스톱 사이트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의 등장으로
수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용자 자신이
콘텐츠 제공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시킨다

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지난 프로그램도 원하는 시간에 꺼내어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자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다. 기존에는 한정된 신문사, 방송사만이 콘텐츠 제공자로서 기능하였고, 이런 면에서 신문사, 방송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수용자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으나,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의 등장으로 수용자의 선택의 폭을 증대시키고 수용자 자신이 콘텐츠 제공자가 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방송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인터넷방송은 기존의 방송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사나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서비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의 보조적인 서비스 수단이 아닌 독립 인터넷 방송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이들 방송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독립 방송국은 멀티미디어 PC나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등 몇 가지 기자재만 갖추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약 200여 개의 인터넷방송국이 운영중인데 최근에는 대기업과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하면서 인터넷방

송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가 2000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이 도입된 지 불과 몇 년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방송이 미래의 주도적인 방송미디어로 등장할 것으로 평가될 정도이다(방송전문가 그룹 40%, 일반인 68.5%, 네티즌 78.8%).⁴⁾ 더 나아가 향후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케이블TV, 위성방송 같은 기존의 방송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높게 나타나(방송전문가 그룹 75%, 일반인 79.6%, 네티즌 95.8%), 미래 미디어환경은 아주 급변할 것이고, 그 방향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산업의 융합

미디어를 둘러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융합은 기업 집중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거대 기업들의 합병이 일어나고 특히 통신사업자, 케이블TV, 망사업자들이 콘텐츠 분야나 서비스 제공 분야로 확대하려고 한다. 더욱이 전력회사나 도로회사 같은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미디어 관련 분야로 다각화하려고 한다.⁵⁾ 미국에서는 특히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거대 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0년을 시작하면서 발표된 AOL(America On Line)과 Time Warner의 합병, 1999년에

4) 한국방송공사, 『미래의 환경에 대한 여론조사』, 2000.

5)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파워콤이란 자회사를 설립하여 통신사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며, 도로공사도 이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 분야에 뛰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루어진 AT&T와 TCI, MediaOne의 합병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최대의 미디어기업인 Time Warner와 AOL의 합병은 미디어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향후 미디어기업의 변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Time Warner는 세계 1위의 미디어기업으로 방송채널 CNN,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인쇄매체 타임지를 소유 운영하고 있고, AOL 역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세계 최대의 기업합병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의 융합이라는 향후 미디어산업의 방향을 예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인 AT&T와 케이블TV MSO인 TCI, MediaOne의 결합은 통신사업자들의 방송 분야 진출로 주목할만하다. 이는 전화·비디오·인터넷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AT&T가 전화와 광대역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서 전화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케이블망을 일방향에서 쌍방향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작용했다.⁶⁾ 이 합병의 결과 AT&T는 불과 1년만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케이블TV 방송사로 등장하였다. AT&T는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AT&T Broadband & Internet Service라고 함으로써 인터넷으로의 진출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과

통신산업이 기존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TV, 전화, 컴퓨터의 통합)을 통해 미래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수와 합병을 통한 이러한 결합은 네트워크들이나 배급업자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 서게 해주기 때문에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계의 다음 합병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 업계의 Walt Disney, Viacom, News Corp., 통신업계의 마이크로소프트, AT&T, MIC Worldcom, 인터넷 업계의 Yahoo, Amazon.com, eBay 간의 결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⁷⁾ 이러한 변화는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II. 미디어 규제 모델

정보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모델은 출판 모델, 방송모델, 통신모델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⁸⁾

첫째, 출판 모델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발행 및 편집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델이다. 전자미디어와 달리 인쇄미디어는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인쇄미디어에 대한 진

6) 김은미, 「디지털시대의 방송정책-케이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1999.

7) 한국방송진흥원, 『동향과 분석』, 2000-1호.

8) OECD,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or Collision?* Paris: OECD, 1992, pp:33-43.

미디어간 융합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출판·방송·통신에 대한 규제논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입장벽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신문이나 출판사업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신문이나 출판사업자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으며, 면허세와 같은 특별한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또한 인쇄미디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공익적 서비스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한 종류의 의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통제에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 모델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네트워크, 전송, 내용 면에서 규제를 받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받는 대신 공익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는 이용 가능한 주파수에 비해 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파수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수탁자로서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이것이 바로 공익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통신 모델은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전송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모델이다.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독점을 정당화하는 대신 독점적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인 음성전화의 경우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것

이 국민의 생활이나 통신망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신 모델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인정된다. 세계 각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음성전화 가입비나 기본료 등 시내전화요금을 원가 이하로 유지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할인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화사업자에게는 전국적 서비스 제공, 전국적으로 균일요금 부과, 이용자별 균일요금 부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디어가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내용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는 신문이나 출판에 대한 종전의 규제 논리, 일반적인 공중의 개념과 문화적·정치적 가치보호에 근거하고 있는 방송 규제의 논리,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에 근거하고 있는 통신 규제의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융합에 따라 네트워크와 전송 시스템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⁹⁾

첫째, 보편적 서비스 -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둘째, 다양성을 위한 규제 - 비차별적인 요금 제도에 의한 미디어에의 접근 확대

셋째, 경쟁을 위한 규제 - 독점사업자나 내부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경쟁 행위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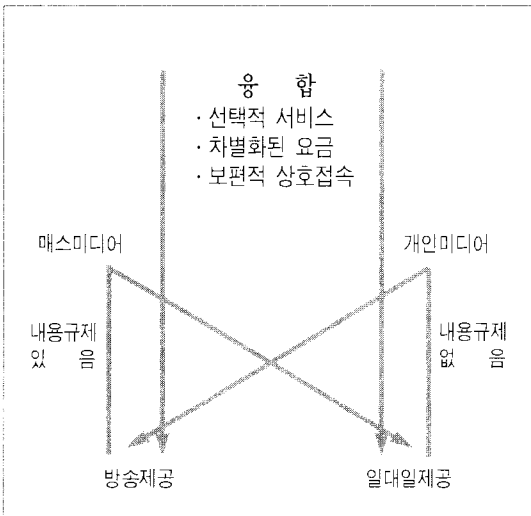
9) Ostergaard, B., "Convergence: Legislative Dilemmas", McQuail, D. & Siune, K., (eds)(1998) *Media Policy: Convergence, Concentration and Commerce*, London: Sage, 1998, p.96.

넷째, 콘텐츠 규제 - 영화 심의나 의무전송 규정과 같은 콘텐츠 규제를 통한 국가 정체성, 계층의 보호 네트워크와 전송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전송 용량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 양방향성을

전에 따른 산업간 융합은 수평적인 결합을 촉진시킨다. 이는 미디어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전송까지 미디어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디어기업들은 단말기, 즉 셋톱박스까지도 통제하려고 한다. 이는 융합된 멀티미디어를 통제하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셋톱박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편을 증대시키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 이슈로서는 이러한 수평적인 통합에 대해 경쟁법의 관점에서 적용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규제기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간의 다른 인터페이스에 대한 공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와 콘텐츠 규제 등도 융합 환경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규제 이슈들이다.

〈그림〉 제공 영역을 넘나드는 미디어



1. 보편적 서비스 : 선택적 서비스 -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어려워지는 일반적인 콘텐츠의 접근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보장
 2. 수신료 : 광고나 가입료 재원 - 채널과 전송시스템이 많아지면서 시청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중요성 증대
 3. 내용규제 - 내용규제는 매스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디어가 개인화될수록 내용규제의 타당성 상실
- * 출처: Ostergaard (1998) p.96

갖는 방송 서비스와 방송이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간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발

IV. 미디어 규제 이슈

1. 미디어집중

미디어 집중 문제는 융합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에서는 미디어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데 반대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엄격한 경쟁 규제

융합에 따른 미디어 집중에 대해 정부나 규제기구는 수평적·수직적 통합에 대한 제한, 미디어 소유 제한, 효과적인 경쟁증진, 다원주의 증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어

를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경쟁, 다양성, 다원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추진에 부심하고 있다. 융합에 따른 미디어 집중에 대해 정부나 규제기구가 취하는 조치로는 수평적 통합에 대한 제한,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제한, 효과적인 경쟁 증진, 미디어 소유 제한, 내부 다원주의 증진, 재정에 대한 투명성 증진 등으로 나타난다.¹⁰⁾

(1) 수평적 통합에 대한 제한

신문이나 방송의 영역에서 한 기업이 여러 채널이나 미디어를 통제하지 않도록 허가, 소유권, 지분참여 등에 제한을 가한다. 독일의 경우 시청 점유율 30% 이내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사의 소유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널 수에는 관계없다. 스페인에서는 한 사람이나 기업이 하나의 텔레비전 채널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반면 신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한 미디어 기업이 전체 신문 구독률의 30% 이상을 점유하면 신문사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50만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사가 다른 신문을 인수하려고 할 때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탈리아는 전국 신문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독점 제한이 부과된다.

(2) 수직적 통합과 교차 소유에 대한 제한

교차소유에 대한 규정은 엄격한 편이다. 미디어 기업이 한 미디어 분야 이외에 다른 미디어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는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차소유는 특히 경쟁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교차 소유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 주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신문 미디어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법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 방송 시장에 대해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함부르크와 브레멘에서는 신문사가 합작투자의 형식으로만, 그것도 25% 지분 이내에서 방송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바덴-뷔르템부르크에서는 소유 제한이 없는 대신, 지배적인 신문사가 방송 미디어에 참여할 경우 내적인 다원주의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신문사는 전국 신문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경우 방송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97년 케이블 및 위성법에 의해 신문사가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26% 이상 지분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신문사에 25% 이상 지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조사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전국 발행부수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신문사는 전국 텔레비전 방송사와 지역 텔레비전 방송사에 20% 이상 지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신문사는 상업텔레비전위원회와 라디오위원회의 공익 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두 규제기구의 심사 결과 신문사의 라디오 방송사나 텔레비전 방송사 소유나 지분 참여가 공익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가 부여되지 않

10) 김대호 역, 에릭바렌트 저, 『세계의 방송법』, 한울출판사, 1998.

는다. 공익 심사 내용 중에는 소유 지분의 다원주의 증진이나 정보의 다양성 증진 항목 등이 들어 있다.

한편, 벨기에의 법제도는 미디어 집중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하는 편에 속한다.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한 신문사가 독점 민영 방송사를 운영하여 지역내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교차 소유를 옹호하고 있다. 지역 신문사와 전국 신문사는 '공공 의견의 장'을 제공한다든 조건하에 지역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3) 효율적인 경쟁의 증진

수평적 결합 또는 수직적 결합 과정은 보통 소수의 기업의 손에 미디어 자원이 장악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공정한 경쟁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제도가 널리 고안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976년에 이미 통합이나 합병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합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신문사간의 집중이나 지배적인 언론사에 의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1993년 미디어융합의 결과 다양성이 훼손된다면 그 융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미디어 기업간 융합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것이 시장점유라든지, 재정, 시장 진입 장벽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만 고려될 뿐,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융합에 대한 규제의 약점은 이미 융합이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실질적

인 제한이 어렵다는데 있다.

(4) 미디어 소유 제한

미디어 소유 제한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한 기업이나 개인의 지분에 대해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방송사내에 단일 주주가 지분 참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는 규제를 택하고 있다. 이는 지배 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주주를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누구도 전국 텔레비전 방송사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민영채널 TV2에 대해 1/3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어떠한 자연인이나 법인도 전국 라디오 방송사나 텔레비전 방송사의 2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포르투갈에서도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25% 지분 제한이 적용된다.

둘째,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덴마크에서는 미디어 분야 이외의 기업은 지역 라디오 방송사나 텔레비전 방송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신문사는 예외다. 또한 방송사 이사의 과반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정당, 대학, 공영방송사와 같은 공공 기구는 지역 라디오 방송사나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셋째, 해외 자본의 참여에 대한 제한이다. 미디어 제도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해외자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스위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럽에서는 민영 방송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원칙' 적용

스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스위스 국적을 가지거나, 기업의 경우, 스위스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신문, 출판, 방송사에 대해 해외자본이 2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내적 다원주의 증진

내적인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관여는 미디어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공공서비스로 간주하고 다양한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되고 보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BBC는 칙허장에 다양한 취미와 이해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고품질이어야 하며 국가의 이해와 문화적 전통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져 있다.

오스트리아의 방송법은 공영방송 ORF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벤트 등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대중에게 알릴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객관성과 다양성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ORF 종사자의 독립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1994년의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도 특히 공영방송의 내적인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다원적인 내부 이사회나 기타 독립 기구를 통해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원칙'이 민영방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민영방송과는 차이가 크다. 1997년 독일의 제3차 방송국가조약에서는 전국 시청점유율 10% 이상을 가진 텔레

비전 방송사는 주당 4시간 이상을 독립 제3당에 할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텔레비전에서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6) 재정의 투명성 증진

미디어기업의 경영에 대한 정보는 투명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 정책의 기초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방송사업자는 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의견이나 선택의 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유 지분의 변화(자본의 5% 이상)나 허가 상의 변화는 규제 당국에 고지해야 한다.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디어 집중 규제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미디어 집중에 대한 규제 이슈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융합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또한 각국이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미디어집중 규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즉 미디어 소유나 집중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집중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미디어집중 규제가 오히려 신문사나 방송사의 활동에 제약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쟁에 대처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집중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그것은 '시청자 점유율 모델(audience share model)'이다. 이 모델은 개별적인 미디어 형태에 획일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디어 수용자에 대하여 개별 매체의 전체 점유율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미디어 집중을 규제하고 다원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모델을 제안하였다. 영국이 1996년 방송법에 의해 처음 이를 도입하고 독일도 1997년 방송국가조약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 어느 누구도 전체 텔레비전 시장 시청 점유율의 15%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시청 점유율은 12개월 동안 특정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시청 점유율을 의미하며, 이는 영국에서 수신되는 모든 텔레비전 채널에 적용된다. 다만, 15% 제한은 BBC, Channel 4, S4C에는 적용되지 않고, 방송사에 대한 수적인 제한의 일부도 여전히 유효하다. 독일에서는 전국시청자의 30% 이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장점이 많은 방안이기도 하지만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점유율의 15%를, 독일에서는 30%를 제한선으로 보았다. 그러나 왜 15%, 30%인가? 20%나 25%는 안 되는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또한 시청점유율 조사의 객관성이 의문시된다. 시청률 조사는 광고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시청률 조사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를 법적인 규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안된 규제 모델 중 가장 나은 시청자 점유율 모델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규제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2. 내용규제

내용 규제는 신문과 방송, 통신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신문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

유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자율적인 신문윤리 위원회에서 내용 규제를 담당하지만 공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신문사들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친다. 반면 방송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규제 사항이 적용된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 심의가 방송규제기구의 주요임무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99년 방송법 개정 이전까지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정도였다. 통신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그것은 통신의 비밀성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정보내용에 대한 규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융합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신문이 전자신문으로 발전하고 통신에서도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은 기존의 매체에 따른 내용규제의 적합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TV수상기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내용규제가 적용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경우 방송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내용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통신의 비밀성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던 기존의 규제 내용은 융합 서비스의 상호작용성 증대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정책의 필요와 목적, 수용자, 여론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다원성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융합에 의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의 방향을 띠 수밖에 없다. 이는 점차 내용 규제의 근거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채널의 확대와 서비스 내용

미디어 융합에 따라 내용규제의 근거가 희박해 지고 있고
채널의 확대와 서비스 내용의 양적 증대로 인해
일률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 양적 증가로 인해 일률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와 영상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영상 제작기반 구조의 확충 등을 위해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상상력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융합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의 주체가 점차 정부에서 민간 자율기구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변화이다. 또한 종전의 물리적인 제재방식에서 등급제로의 변화도 필연적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와 비디오 등급제 도입에 이어 최근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해서도 등급제가 도입된 것은 그러한 변화의 요구를 수용한 규제방식이다.

V-Chip의 도입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내용규제 방안이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1998년부터 13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모든 새로운 TV수상기에 부모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내장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 정부는 V-Chip이 프로그램 등급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딜레마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기술이 융합 환경에서 완전한 내용규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종전의 엄격한 내용규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과 각종 낭비도 만만치 않게 된다. 인터넷방송의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방송법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방송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규제 제도는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직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초기의 서비스는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엄격한 규제가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애초에 막아버릴 수 있으며, 새로운 매체 환경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수 있고, 자율규제는 그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등장한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러하다.

3.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미디어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도입된 경쟁의 원리는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제공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인 미디어시장 구조하에서도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차별 없이 중요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강조된다. 첫째, 개인 권리 차원에서 여러 미디어에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모든 개인은 한 사회의 시민이라는 사실로도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참여하는 기회를 의미하는 정

보 하부구조에의 접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 시스템 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새로운 전자 미디어 환경은 단순히 기술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보편적 서비스 없는 디지털 전자미디어는 인구 대다수가 지불할 여유가 없는 비싼 요금이나 광고에 의해 유지됨으로써, 부유한 계층만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¹¹⁾

과거의 미디어 시장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하나가 교차지원이다. 방송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이 공익 프로그램을 보조하며¹²⁾ KBS의 경우 KBS2의 광고 수입이 KBS1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통신의 경우에는 장거리 전화와 기업 이용자가 시내 전화와 일반가구를 보조한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교차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1998년에 발표된 미국의 <디지털TV방송사업자의 공적의무에 관한 자문위원회>(일명 고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자문위원회는 디지털화에 따른 광범위한 새로운 선택성이 '공공 수탁자'(public trusteeship) 원칙하의 기존의 공적의무를 그대로 디지털 미디어

에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익성과(public interest performance) 원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와 추가적인 공적의무로는 어떠한 것이 적절하겠는가를 다루었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건의하였다. 그것은 첫째, 공중은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누려야 한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기술적 발전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셋째, 규제와 반대되는 경제적 유인, 자발적인 자율 규제, 정보 공개 등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¹³⁾

이 같은 원칙하의 보고서가 채택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방송사업자 공익활동의 공개
- ② 방송산업을 대표하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의 자발적인 행위 기준
- ③ 지역사회와의 교류, 분기별로 공중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보고해야 할 책임(Accountability), 공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 의무, 지역적인 이슈와 요구에 중점을 둔 공익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의 자막방송 등 최소한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장치
- ④ 디지털방송을 통한 교육 개선
- ⑤ 멀티플렉싱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디지털 TV 방송사업자들은 유료화와 공익 목적의 멀티캐스팅 채널제공에 있

11) 이은미,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 방송위원회, 1999, p.152.

12) KBS의 경우 KBS2의 광고 수입이 KBS1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3)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ers, *Char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Future*, Final Report, 1998, 12, 18

통합 방송법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추진이나 융합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불분명하게 규정

어서 유연성을 가져야 함

- ⑥ 정치담론의 질적인 향상
- ⑦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재해경고
- ⑧ 디지털 프로그래밍에 대한 장애자의 액세스권
- ⑨ 방송에 있어서의 다양성
- ⑩ 새로운 TV 환경에 있어서의 공익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비록 자문위원회가 공익의무를 수행하는데 전적으로 새로운 모델에 관한 권고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자문위원회는 반드시 공공 수요와 이해에 봉사하면서도 보다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는 대안적 접근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방송을 통한 교육 개선, 멀티플렉싱과 공익, 디지털 프로그래밍에 대한 장애자의 액세스권 등을 통해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 환경하에서 공공 서비스를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규제체제

융합의 진전에 따라 규제체제의 개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999년 12월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어 방송 미디어 전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제고한 측면은 있으나, 미디어 융합 시대의 규제체제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융합 시대

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추진이나 융합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었다. 예컨대 방송영상진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와 중복된다. 이는 자칫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¹⁴⁾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방송·통신 관련 정책 규제체제 개편 방향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8년 1차 정부조직개편안은 방송과 통신을 함께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1999년의 2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2001년 설립)에 이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1999년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를 먼저 설립하고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도록 제안하였다. 물론 이들 안대로 실현되지는 않았고 각각의 제안이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방송개혁위원회 안은 융합시대의 방송발전 방안은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방송 중심적인 틀을 가짐으로써 타 국가 목표에 대한 고려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2차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 방송통신네트워크의 고도화 등 정보통신부의 중요한 기능들이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으나 방송과의 융합에 대한 대응은

14) 이러한 예는 과거 위성방송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시 공보처의 아날로그 방식 주장과 당시 체신부의 디지털 방식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경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미흡하다.¹⁵⁾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개편안의 공통된 특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융합 규제체제의 대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계 주요국가의 정책과 규제체제의 변화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방송과 통신의 정책, 규제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¹⁶⁾ 다른 국가들은 방송과 통신이 별도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정책기구든 규제기구 등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는 1997년 규제기구를 Autorita(방송통신위원회)로 단일화하였고, 호주는 1993년 정책기구를 정보통신문화부로 단일화하였으며, 캐나다도 규제기구를 CRTC(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단일화하였다.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를 검토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오랫동안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이의 통합을 검토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1998년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 상임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정책을 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로 통합하고, 규제는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RC:Communication Regulation Commission)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물론 당장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방송과 통신 양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지만¹⁷⁾ 그 방향

은 작지않았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방송과 통신 규제체제의 검토에 들어갔고 각국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결국 규제체제의 변화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융합 시대에 유통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간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데이터통신 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구분되던 분리 방식은 점차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한정적이라고 한 이유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미디어 구분은 유효하되 융합의 확산은 이들 미디어가 서로를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¹⁸⁾

<디지털이다>에서 니그로폰테는 신문이 종말을 고한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디지털 정보로 대체되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된다. 정보는 비트에 기초한 것으로 변모한다. 니그로폰테에 따르면 독자들은 더 이상 신문 전체를 읽지 않고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부분만을 읽는다. 하나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이 신문, 저 신문을 돌아다니면

15) 윤창번 외,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pp.26-27.

16) 미국은 FCC, 일본은 우정성이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17) 김대호, 「영국의 방송·통신 정부부처, 규제기구 일원화 추진」, 『정보통신정책』 제10권 제12호, 1998, pp.1-3.

18) 박동숙, 「브로드 캐칭 시대, 정보선택은 수용자 몫」, 『신문과 방송』, 2000년 1월호.

미디어 융합은 신·구 미디어가 병존하는 가운데
미디어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변화 시키는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미디어 규제도 새롭게 검토해야

서 관심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극단적이다. 전통적인 신문의 장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독자들은 신문을 만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면을 두루 훑어보기를 원한다. 물론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문에 접하며 정보를 얻고자 한다. 또한 신문사도 전자신문에 진출하며 신문 자체도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하고 컬러화하고 섹션화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요 신문 사이트는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사이트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신문이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다. 향후에도 신문은 전자신문을 보완 서비스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신문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관심있는 독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문 자체가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융합이 신문사의 위상과 서비스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신문사는 뉴스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융합 사업자로 변신하고 있다. 신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이다. 이는 방송에 대해서도, 통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디어 융합은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가 병존하는 가운데 미디어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크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 문제도 새로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융합에 따른 규제 문제들로 미디어집중, 내용규제, 공공서비스와 보

편적 서비스, 규제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융합은 미래형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융합의 속도는 지난 90년대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규제 문제 역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대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호 옮김, 『세계의 방송법』, 에릭 바렌트 저, 한울출판사, 1998.
- 김대호, 「영국의 방송·통신 정부부처, 규제기구 일원화 추진」, 『정보통신정책』 제10권 제12호, 1998.
- 김대호, 『디지털시대의 방송정책』, 커뮤니케이션신서 30,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김은미, 「디지털시대의 방송정책 - 케이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1999.
- 박동숙, 「브로드캐칭 시대, 정보선택은 수용자 몫」, 『신문과 방송』 2000.1, 2000.
- 박형상, 「새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2000.
- 방송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효율적인 심의규제체계 연구』, 1996.
- 윤창번 외,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 이은미,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공익성 확보방안』, 방송위원회, 1999.
- 이효성 외,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규제체제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

19) Negroponte, N., Being Digital, 백옥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박영출판사, 1995.

- 방안 수립』정책토론회 발표문, 1999.
- 조은기, 『방송·통신 융합과 경쟁 도입에 따른 방송 규제 모델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 통신개발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연구』, 1996.
- 한국방송공사, 『미래의 방송환경에 대한 여론조사』, 2000.
- 방송진흥원, 『동향과 분석』, 2000-1호.
-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ers, *Char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Future*, Final Report, 1998,12,18.
- Bens, E.D. & Mazzoleni, G.(1998) "The Media in the Age of Digital Communication", McQuail, D. & Siune, K., (eds) (1998) *Media Policy: Convergence, Concentration and Commerce*, London: Sage.
- European Commission (1997) *Green Paper on the Convergence*.
- Negroponte, N. (1995) *Being Digital*, 백옥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박영률출판사.
- OECD (1992)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or Collision?* Paris: OECD.
- OECD (1999) *Regulation and competition issues in broadcasting in the light of Convergence*, DAFNE/CLP(99)1.
- Ostergaard, B.(1998) "Convergence: Legislative Dilemmas", McQuail, D. & Siune, K.,(eds)(1998) *Media Policy: Convergence, Concentration and Commerce*, London: Sage.
- Owen, B. (1999) *The Internet Challenge to Television*, Cambridge.
- Oxman, J. (1999) "The FCC and the Unregulation of the Internet", FCC Office of Plans and Policy Working Paper Series, 31.
- Tadayoni, R & Skouby,K(1999) "Terrestrial Digital Broadcasting: Convergence and its Regulatory Implications", *Telecommunication Policy*, No.23.
- Trappel, J. & Meier, W.(1998) "Media concentration : options for policy", McQuail, D. & Siune,K.,(eds)(1998) *Media Policy: Convergence, Concentration and Commerce*, London : Sage. □

특 집

〈전 망〉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1. 매체환경의 변화와 명예훼손법리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래피의 유통, 명예훼손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사회변동의 반영물이자, 또한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사회변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해악은 저지시켜야 하는 법의 역할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에서도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법현상의 출현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와 그 규율에 관한 명예훼손법의 문제이다.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에 있어서 매우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각국의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예훼손법의 적용범위 및 정도가 그 나라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정도의 척도가 되곤 하였다. 그리고 명예훼손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줄 동 대학원 법학박사
-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규제도의 개선방안」 외
-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손법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어느 가치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도 명예훼손법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표현매체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명예훼손법은 구술에 의한 언론(speech)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혹은 매체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명예훼손법이 오늘날 PC통신 및 인터넷 등 쌍방향 매체라고 하는 새로운 전자미디어의 출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명예훼손법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접근방법 -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매체특성론' 적 접근방법

먼저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이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이 글은 명예훼손법의 문제를 '매체특성론' 적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매체특성론' 적 접근방법이란 정보의 흐름과 통제에 있어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른 매체에 따라 규제에 관한 법적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즉 표현의 자유나 표현매체에 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의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원리들을 재구성해야 하며 또한 표현매체규제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나타나는 매체의 구조적 특성과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각 매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을 명예훼손법의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즉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에 적용되는 명예훼손법리도 달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II. 매스미디어와 명예훼손법리

일반적으로 명예훼손(defamation)이라 함은 언론기관이나 타인이 문서나 구두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명예라

1)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전자디지털기술에 의한 새로운 표현영역의 출현으로 표현의 자유론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기능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류시조,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 1999, p.219.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

함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의미한다. 한 사회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법리는 한편으로는 명예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그 사회의 국민의 산물이다. 즉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²⁾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가치들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역사적 조건 및 전통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³⁾ 다음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와 명예훼손법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의 명예훼손법리는 신문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명예훼손법리가 적용될 여지를 좁히고 있다.⁴⁾ 특히 1964년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판결⁵⁾은 신문에 의해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고에로의 입증책임의 전환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입증기준의 채택을 통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을 과중하게 만들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의 명예라는 가치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였다.⁶⁾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1966년의 *Rosenblatt v. Baer*판결⁷⁾과 1971년의 *Monitor Patriot Co. v. Roy*판결⁸⁾을 통하여 ‘공무원(public official)’과 ‘공무상행위(public conduct)’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New York Times*판결에서 비롯된 이러한 명예훼손법리는 그 이후의 판결들이 ‘공인(public figures)’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기에 이른다. 즉 1967년의 *Curtis Publishing Co. v. Butts*판결⁹⁾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현실적 악의’라는 입증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인’의 개념도 *Gertz v. Robert Welch, Inc.*판결¹⁰⁾, *Time, Inc. v. Firestone*판결¹¹⁾, *Wolston v.*

2) 명예훼손법은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p.142.

3) Frederick Schauer도 영미간의 명예훼손법리를 언론의 자유와의 관련성을 통해 비교 고찰하면서, 명예훼손의 법리는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한다. Frederick Schauer, "Social Foundations of the Law of Defamation: A Comparative Analysis", 1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3(1980), p.18.

4) 미국 명예훼손법의 발전에 관해서는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pp.32-48.

5) 367 U.S. 254(1964)

6) 즉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보도사실이 거짓(false)이어야 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보도사실이 거짓이었음을 피고가 알았거나(actual knowledge of falsity) 적어도 거짓일거라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했다라는 점(reckless disregard of the truth)을 입증해야만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결국 명예훼손의 입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7) 383 U.S. 75(1966).

8) 401 U.S. 265(1971).

9) 388 U.S. 130(1967).

10) 418 U.S. 323(1974).

11) 424 U.S. 448(1976).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판결¹²⁾, 을 통해서 정립·확장되어 왔다.¹³⁾ 한편 이러한 법리들은 방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파악된다. 왜냐하면 Common law상 명예훼손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으로 나뉘는데, 방송은 전자 즉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간의 매체특성에 따른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2. 우리 나라

위와 같이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화시키는 방식은 민사법에 의한 규율(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제764조)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의한 규율(형법 제307조~제310조)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

라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의 구제방식은 주로 형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⁵⁾

먼저 형사법에 의한 규율의 측면을 살펴볼 때,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들간의 충돌과 그 조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 균형점을 매스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는 점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9조는 제307조와 비교해 볼 때, 비록 법정형은 높지만 구성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제307조에 비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설령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12) 99 S.Ct. 2701(1979).

13) 또한 위의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공무원”이나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보도된 사실이 “거짓(false)”이어야 하고, 피고의 행위가 적어도 “과실(negligence)”에 의한 것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정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만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있다.

14)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전자매체의 발달은 전통적인 libel과 slander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각주의 입법도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표성수, 앞의 책, p. 30.

15) 이러한 접근방식의 차이점은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 사회에 있어서 법의식 내지 법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대권, 『언론과 법』, 『서울대 법학』 제28권 2호, 1987, p.113.

16) 형법 제정 당시 원래 정부가 제안한 형법초안에서는 위법성조각을 규정하고 있던 제333조가 “제330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치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제333조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전조 제1항의 행위”부분은 삭제되었다. 그 이유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서로 상반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을 규정할 제333조가 적용될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제332조의 제1항은 여기에 삭제제를 하고,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표현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신문, 방송매체간의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차별성이 없어

이러한 법조문상의 명시적인 문언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24일 선고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¹⁷⁾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목적은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는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서 인쇄매체와 방송간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하여, 형법 자체가 인쇄매체에 의한 명예훼손과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을 동일한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민사법에 의한 규율의 측면에 있어서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몇 가지 기준의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형법 제310조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의 진실성’, ‘공익성’을 그대로 민사상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의 진실성’ 및 ‘공익성’ 이외에 (설령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의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

이것은 신문, 잡지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서 공표를 했다 할지라도 원칙적인 제330조로 돌아가서 사실을 오로지 공익에 관한 이유로서 이것을 적시했을 적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은 제330조의 원칙에 돌아가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32조에 그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법이기 때문에 그 조문만은 여기서 삭제한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pp.482-483 참조.

17) 현재결 1999.6.24.[97헌마265]. 헌판집 제11권 1집, p.778. 이 판결은 공적 인물(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간의 충돌의 조화점을 찾고자 한 ‘최초의’ 헌법재판소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라는 기준을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있어서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과정에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 여기서 “기타 출판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그 수단이 되고 있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이 여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해석론상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현행 형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는 구성요건이 다른 뿐만 아니라, 범정형도 다르기 때문이다.

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 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public issue)' 인지의 여부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헌법재판소판결의 내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¹⁹⁾

이상에서 보다시피,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명예훼손법리의 구성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의 진실성'이라든지 '공익성' 또는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객관적 요소, 둘째, 명예훼손적 표현의 행위자나 피해자가 관련되어 있는 '상당한 이유'라든지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명예훼손법리에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수단이 되는 표현매체(언론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Ⅲ.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법리

1. 사이버공간의 특성

오늘날 점점 보편적이고도 일상적인 문화현상 내지 개념으로 인식되어가는 '사이버공간'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interface)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공간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하부구조는 바로 PC통신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현매체(혹은 언론매체)를 "표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 내지 기술적 수단"이라고 파악하는 한, 사이버공간을 형성하는 하부구조로서의 PC통신과 인터넷도 표현매체에 해당함은 물론일 것이다. 왜냐하면 PC통신과 인터넷도 표현 내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오늘날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그 하부구조로서의 표현매체인 PC통신과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들간의 연결로 인해 PC통신이 인터넷에 포섭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바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인터넷이라는 표현매체의 매체적 특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원격통신의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컴퓨터를 통해 문자, 음성, 영상물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이른바 통합적 다기능

19) 이상의 요건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우리 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1998.12., pp.271-299 참조.

20) 마이클 스프링, 「가상현실과 종합적 정보전달」, 산드라 헬셀·유디스 로스 엮음, 노용덕 옮김,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세종대학교 출판부, 1994, pp.26-27. 원저명은 Sandra K. Helse & Judith Paris Roth, *Virtual Reality: Theory, Practice and Promise*, 1991년.

PC통신이 인터넷에 포섭되어 가는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

매체”²¹⁾ 또는 “전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넷용 프로토콜(특히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상호연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OSI: Open System Interface)로서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간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²²⁾라고 정의되기도 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커뮤니케이션방식의 면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는 일대다(一對多)의 전형적인 일방향의 매스미디어인 반면에, 인터넷은 일대일(一對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다대다(多對多)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매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 즉 화자와 청자간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터넷이 일대일(一對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라는 것은, TV, 라디오와 같은 기존의 방송매체와는 달리 인터넷

이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²³⁾ 이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하부구조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대다(多對多)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라는 것은 소위 ‘인터넷교대화(IRC)’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 기술적으로 전화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통신매체로 개념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보의 생산 및 흐름에 있어서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정보통제자(gatekeeper)²⁴⁾가 존재한 반면에,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은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 매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은 ① 기술적으로 모든 메시지들이 유통경로상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심축이 없다는 점, ② 인터넷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체가 없이 매우 효율적이고도 무정부적인 자율성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 등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셋째, 정보 및 미디어의 이용자면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 정보생산자는 소수이자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 반면에, 정보소비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이지 결코 적극적인 이

21) 오백섭,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1호, 1997년 가을호, p.6.

22) 윤준수,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영출판사, 1998, p.51.

23) 이 점은 동일한 전자매체이면서도 커뮤니케이션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이 서로 다른 매체로 구분되고, 또한 법적 원리나 제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될 것이다.

24) 정보통제자(gatekeeper)의 존재 유무는 표현매체규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표현매체규제의 합헌성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판결이 바로 1994년 미국연방대법원의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CC(114 S.Ct. 2445[1994])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케이블TV의 경우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의 선택에 있어서 케이블방송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해 케이블소유자나 운영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의 이러한 특성을 “병목(bottleneck)” 내지 “정보통제자(gatekeeper)”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용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수의 정보생산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은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 재생산, 분배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서의 수동적인 '시청자'는 쌍방향 내지 상호작용매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²⁵⁾ 그리고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이 가졌던 편집자율성(editorial autonomy) 내지 편집통제권(editorial control)은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이제는 정보수용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통제권(User Control)이 확립 내지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이용,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있어서 인터넷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 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넷째, 매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매체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싶은 화자들은 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반면에, 인터넷은 현재 진입을 가로막는 법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

현할 수 있다. 사실 '매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경제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예컨대 인쇄매체나 방송매체 등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접근가능성이 주로 경제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이 풍부한 자나 대기업만이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이념이 한낱 이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이용비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전의 매스미디어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 근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학교, 정부, 도서관, 기업에서 그리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PC방'에서도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easily accessible)' 매체라는 점이 또한 하나의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먼저 정보의 형식면에서, 기존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텍스트(문서)로 되어 있거나, 음성 및 화상으로만 되어 있었고, 설령 텍스트

25) "매스미디어는 작은 규모의 조직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인쇄매체나 방송보다 더 유연성이 있다.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배될 때, 그 과정은 많은 수용자들을 겨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이나 소그룹들에게도 호의적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전자정보가 생산자에 의해 분배되기 보다는 이용자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이다. 인쇄출판의 목표가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반해 전자출판의 목표는 정보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자출판의 패러다임은 인쇄출판과 다르다". M. 이센 카트시, 김유정 역, 『디지털시대의 법제이론』, 나남출판, 1997, p.168.

26) 따라서 Volokh는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매체들이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ugene Volokh, "Cheap Speech and What It Will Do", 104 *Yale Law Journal* 1805(1995) 참조.

신문과 방송이 내용적 규제에서는 차별성을 갖는 반면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매스미디어가 일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와 사진이 같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나열식이었을 뿐이었지만, 인터넷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은 텍스트, 사운드, 사진을 비롯한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제공해 줌으로써, 형식면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내용면에서도 인터넷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보통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그 내용에 대한 압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²⁷⁾, 소위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듯이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다.

2. 새로운 명예훼손법리의 필요성

(1)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그러면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사이버공간상에서는 기존의 명예훼손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²⁸⁾ 그 주된 하부구조이기도 한 표현매체로서의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되지는 않는가?²⁹⁾

우선 명예훼손법리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과 조화의 문제라는 점은 사이버공간상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명예훼손법리라는 것이, 언론기관이나 타인이 문서나 구두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적 처벌이나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형사적 처벌과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민사적 구제수단은 명예를 훼손하는 상대방의 표현에 대해 반박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명예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의미있는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일방성이 그 특징인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에, 형사적 처벌과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민사적 구제수단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신문과 방송의 경우에 내용적 규제에 있어서의 차별성³⁰⁾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보이지 않

27) 방송 특히 상업방송이 그 재정을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광고주의 입김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해 준다.

28)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포르노그라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할(jurisdiction)과 적용법률의 선택(choice of law)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자발적 내지 자율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강조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Lilian Edwards, "Defamation and the Internet", in Lilian Edwards & Charlotte Waelde(ed.), *Law & the Internet: Regulating Cyberspace*, Hart Publishing(1997), 183-198면 참조.

29) 특히 미국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과 이를 위한 공인/사인의 구분이 사이버공간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는 이재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66호, 1998.3, pp.25-35 참조.

30)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매체규제시스템에 있어서 특히 내용적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에 대해 차별적 규제제도를 적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규제의 논거로서는 회소성이론, 침투성이론, 영향력이론, 공공재이론, 공공신탁이론 등이 제시되어 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 자세한 것은 황성기,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pp.60-79 참조.

는 것도, 신문과 방송 모두 공통적으로 일방적 성격을 가지는 매스미디어라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인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이나 공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입증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기존의 미국의 법리도, 공무원이나 공인은 언론매체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용이하고 따라서 잘못된 표현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 할 것이다.³¹⁾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한 반박이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므로, 훼손된 명예에 대한 회복을 기존의 법적 수단에 의해 실현할 필요성이 실제로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³²⁾ 또한 이러한 경우 형사적 처벌이나 금전적 배

상을 포함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명예회복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라는 부정적 기능을 더 노정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는 사이버공간의 경우에는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며³³⁾,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하게 만든다.³⁴⁾

물론 사이버공간에 있어서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방법에 따라 명예훼손법리가 약간 다르게 적용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방법으로 ① 전자우편과 같은 일대일(一對一) 메시지전달, ② 리스트서브(listservs)나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s)와 같은 일대다(一對多) 메시지

31) Gertz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집필한 Powell대법관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분명히 하였다. "명예훼손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구제수단은 자조(self-help)이다. 즉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명예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공인은 대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수단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인(private individual)은 해악에 보다 쉽게 노출된다". Gertz v. Robert Weich, Inc., 418 U.S. 323, 344(1974). 한편 高橋和之 교수도, 미국의 공인이론을 정당화하는 최대의 근거가 표현수단에 관한 양당사자의 평등성에 있는 한, 이러한 원리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한다. 高橋和之, 「パソコン通信と名譽毀損」, 『ジュリス卜』 No.1120, 1997.10.1, p.81.

32)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금전적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David R. Johnson & David Post, "Law and Borders-The Rise of Law in Cyberspace", 48 *Stanford Law Review* 1367(1996), pp.1381-1382.

33) 이러한 관점은 달리 Hardy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의 문제는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한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defamatory content), 제3자에 대한 전파(publication to third parties), 현실적 악의 등의 요소들이 이 경우에도 여전히 발견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I. Trotter Hardy, "The Proper Legal Regime for 'Cyberspace'", 55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993(1994), p.999.

34)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경우 실정법에 의한 강압적인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규칙과 문화적 규범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윤영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제17권 제4호, 1997년 겨울호, pp.12-13.

새로운 매체에서 야기되는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매체특성론적 관점에 따라 해석해야

전달, ③ 유즈넷 뉴스그룹과 같은 메시지 분배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message databases), ④ 인터넷교대대화(Internet Relay Chat: IRC)와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⑤ 텔넷(telnet)과 같은 실시간 원격컴퓨터이용, ⑥ 파일전송 프로토콜(file transfer protocol: ftp), 고퍼(gopher),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와 같은 원격정보검색 등 대략 6개의 범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주들의 커뮤니케이션방법은 각각 성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명예훼손법리가 주로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성격을 지니는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경우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한위와 같은 결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론은, 새로운 매체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매체특성론적 관점에 따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6년 8월 22일에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판결(96고합472)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동 사건은 한 은행원이 1996년 2월경 PC통신 천리안 '주제토론실'란에 3차례에 걸쳐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박지원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경우인데, 담당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비방죄)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이 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비방죄에 국한된 것이지

만, 기존의 사건들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그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은 전혀 배제한 채 비방행위의 목적, 구체적인 사실적시의 유무 등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1996년 10월 29일의 판결(96노1916)을 통해 비방행위의 목적, 구체적인 사실적시의 유무 등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컴퓨터통신은 전체적인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통신문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이 있으면 그 반박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통신문은 통신가입자에게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인정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대법원(대판 1997.4.25.[96도2910])도 항소심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문을 게재하게 된 '경위(쌍방향적인 컴퓨터통신에 있어 다른 통신가입자의 반박에 대한 대응)'를 여러 사정 중의 하나로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문제에 있어서 또 한 아주 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그 공간을 제공해 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혹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바, 이 문제도 기존의 명예훼손법

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³⁵⁾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이 전자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 유형에서부터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디지털화된 커뮤니케이션 유통과정에 다양한 이해집단들 즉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자와 정보제공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은 다양한 역할을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한편 사이버공간상에서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정보제공자나 표현행위자의 책임이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적 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보제공자나 표현행위자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1)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결이 주목된다. 첫 번째 경우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 판결³⁸⁾로서, 이 판결의 독특한 논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의 인정은 편집통제권(editorial control)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출판인은 그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에 전화사업자와 같은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CompuServe를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이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사업자와 같이 취급할 것인가에 따라 그 책임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Peter Leisure에 따르면 CompuServe는 출판인(publisher)보다는 서점

35)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의 문제는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Hardy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BBS 운영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BBS 운영자의 경우,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을 중개하는 기존의 서점운영자나 도서배포자 등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I. Trotter Hardy, "The Proper Legal Regime for 'Cyberspace'", 55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993(1994), p.1001, pp. 1002-1006.

36) 황상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와 쟁점들-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창간호, 한국정보법학회, 1997, p.301.

37) Jonathan Rosenoer, *CyberLaw: The Law of the Internet*, Springer(1997), 116면. 高橋和之 교수도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체제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킨다"는 명제에 적합하리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 高橋和之, 「인터넷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No.1117, 1997.8.1-15, p.31.

38) 776 F. Supp. 135(S.D.N.Y. 1991).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CompuServe는 제3자와 CompuServe상에 "Rumorville"이라고 하는 포럼을 개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은행업을 하는 원고 Cubby사는 그 포럼에서 한 이용자에 의해 자신의 사업에 대한 명예훼손적 자료가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그 포럼의 운영자와 CompuServe를 제소하였던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정보제공자나 표현행위자의 책임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가 중요한 쟁점

소유자(bookstore owner)나 도서배포자(book distributor)에 가까우므로, 즉 CompuServe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지한(actual knowledge)” 경우나 CompuServe의 지위에 있는 이성적인 자(reasonable person)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한 인지를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실제로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Leisure 판사는 CompuServe에 대해서 신문사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인정되는 출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사업자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는 공중통신사업자도 아닌,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되는 서점소유자나 도서배포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³⁹⁾ 이러한 논거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모든 책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못한 서점소유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서점소유자로 하여금 모든 책들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서점사업을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배포를 위축시키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두 번째 경우는 1995년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판결⁴¹⁾로서, 이 판

결에서 담당판사인 Ain은 위에서 설명한 Cubby판결과는 달리, 기존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라 Prodigy는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Ain판사는 CompuServe와 Prodigy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로, 첫째, Prodigy는 컴퓨터게시판상의 내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과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 둘째, Prodigy는 이러한 통제권을 자동차단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운영자들(Board Leaders)에게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지침들을 통해서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Prodigy는 분명히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들에 대한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Prodigy는 배포자(distributor)라기보다는 출판인(publisher)이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위의 두 판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CompuServe판결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편집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즉 편집통제권의 실제적 행사의 가능성 그리고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다소 절충적인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Prodigy판결도 CompuServe판결과 비교해 볼 때 결론은 다르

39) 이러한 논리는 음란물인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서점소유자에 대해 음란물유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룬 Smith v. California, 361 U.S. 147(1959)판결에서 유추해 온 것이다.

40) Mike Godwin, Cyber Rights: Defending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Times Books(1998), p.85.

41) N. Y. Sup. Ct. May 24, 1995.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정체불명의 자가 이전의 프로디지의 직원이었던 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Money Talk”라는 전자게시판에 증권투자회사인 Stratton Oakmont사와 그 사장인 Daniki Porush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들을 게시하였다. 이에 Stratton Oakmont사는 프로디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만,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법리의 적용문제를 다룬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독일의 경우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독일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1997년 7월 22일 제정· 공포된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Das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IuKDG)'⁴²⁾은 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동 법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인 '서비스제공자(Diensteanbieter)'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어, 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진다(Art. 1 §5 (1)). 이것

은 정보제공자(I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Art. 1 §5 (2)). 셋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Zugang)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Art. 1 §5 (3)). 두 번째 규정과 세 번째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 불법적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Art. 1 §5 (4)).

한편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주간조약(Staatsvertrag über Mediendienste)'도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갖고 있다(§5).

42) 이 법률은 총 11개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처음의 3개절은 새로운 법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텔레서비스의이용에관한법률(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또는 '텔레서비스법 (Teledienstgesetz: TDG)'으로서, 텔레서비스의 정의, 접근자유의 보장 및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텔레서비스정보보호법(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혹은 'Teledienstdatenschutzgesetz: TDDSG'으로서, 텔레서비스상에서 개인관련 정보(personenbezogene Daten)의 보호를 위한 제반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절은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 SigG)으로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안전에 관한 법적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과 제5절은 각각 형법과 질서위반법상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들로서, 특히 형법과 질서위반법상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조항들도 확대된 개념에 조화되게 개정하고 있다. 제6절은 '청소년유해문서배포에관한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상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으로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7절은 저작권법의 개정법률로서, 유럽연합준칙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8절~제10절은 가격표시법령상의 일부 조항들의 개정에 관한 규정들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격표시법령을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제공에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효력발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제7조만 19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나머지는 199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택환, 「독일의 멀티미디어법」, 『세계언론법제 동향 (하)』, 한국언론연구원, 1997, pp.101-106; 이우승, 『독일의 멀티미디어 법』, 방송연구자료집 97-2, 한국방송개발원, 1997.12; 이종영, 「독일 멀티미디어법」, 『법제』 1998년 9월호, 법제처, pp.94-121 참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을 경우
사적 검열을 강화하여 정보제공자나
표현행위자에 대해 위축 효과를 야기

3) 영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즉 영국의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소재기를 당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a defence)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첫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statement)의 저자(author), 편집인(editor) 또는 출판인(publisher)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 둘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셋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 출판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특히 첫 번째 사유와 관련하여 동 법 제1조 제3항은 "자신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송 또는 이용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자"⁴³⁾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저자, 편집인 또는 출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바로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항변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변사유를 입증할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은 나름대로 법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⁴⁾

4) 사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선 예컨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을 경우, 수많은 이용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적 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보제공자나 표현행위자에 대한 위축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무조건 면책시키는 방법도 그리 합리적인 해결수단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으로 사이버공간상에서 반론권을 인정하자는 견해⁴⁵⁾도 등장하지만, 이 견해의 경우 어떻게 반론권을 구체적

43)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A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he author, editor or publisher of a statement if he is only involved as the operator of or provider of access to a communications system by means of which the statement is transmitted, or made available, by a person over whom he has no effective control".

44) Lilian Edwards, "Defamation and the Internet", in Lilian Edwards & Charlotte Waelde(ed.), *Law & the Internet: Regulating Cyberspace*, Hart Publishing(1997), pp.193-195 참조.

45) Anne Wells Branscomb, "Anonym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Challenges to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104 *Yale Law Journal* 1639(1995), pp.1671-1672.

으로 입법화시킬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은 그 접근이 용이하므로 법규범에 의해 반론권을 강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의 의문이 생긴다. 결국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는 사례별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⁴⁶⁾

IV.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의 문제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법의 문제로 환원하여 고찰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고찰을 위하여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와 쌍방향미디어에 적용되는 명예훼손법리도 달라야 한다”는 가설을 세운 뒤, 이 가설을 나름대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의 증명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매체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법리를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새롭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기준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은 이들 여러 가지 사정이나 기준들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법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명예훼손법의 재구성은 단지 ‘새로운’ 접근방법에 따른 이론적 산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관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새로운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의 문제를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든, 아니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적용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든, 문제해결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와 판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가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 새로운 틀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논의와 판결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46) 이러한 사례별 해결방식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문제에서도 하나의 해결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정, 「저작권침해행위에 관련된 자의 책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창립2주년 총회 및 기념세미나 자료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8.11.27. p.8.

특 집

〈전 망〉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인터넷 신문·방송과 반론보도

I. 새로운 전자기술의 발달 : 언론매체로의 통합

21세기는 전자시대라고도 하고, 디지털시대라고도 한다. 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각 매체간의 특성이 불투명해지자 혹은 전파매체의 대혁명기라고도 한다. 생각해보면, 라디오가 군사상의 목적이 아닌 대중매체로서 첫선을 보인 지 실로 100년만에 대중매체계에서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문과 방송, 라디오와 TV,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전자매체가 만들어내는 3차원의 공간, 즉 가상공간(cyberspace)이 인간생활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netizen)들은 각종 전자매체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의 바다에서 유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전 국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언론영역에서만 보더라도 국내 굴지의 각 신문사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사들도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을 연속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방송도 동화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궁화위성 3호기의 발사로 더욱 본격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방송과 통신, 인쇄 등 매체간의 특성이 더욱 모호해지고, 융합되어질 것이 분명하다.¹⁾ 결국에는 매체간의 구분과 특성에 기인한 개념정립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즉, 신문사가 운영하는 자사의 인터넷사

박 선 영

경기대 법학과 겸임교수

- 이화여대 대학원졸
- 서울대 법학박사
- 프랑스 소르본대학 연수
-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익성' 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외 논문 다수

1) 무궁화 인공위성의 발사로 한반도전역에는 155Mbps의 속도로 인터넷서비스제공이 가능해졌다. 즉, 무궁화3호기에 있는 20-30기가헤르츠(GHz) 고주파대역의 통신중계기가 초당 155Mbps의 위성멀티미디어 인터넷을 6개 채널까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등 기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고 속도보다 20-40배정도 빠른 속도를 제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도 TV에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

이트가 신문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또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나 Teletext(TV 문자방송)가 신문이나, 통신이나, 방송이나, 라디오나, TV나 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 전달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매체가 언론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언론매체일 뿐이며, 그에 대한 법적 대응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인쇄가 유일한 언론매체이던 19세기말에 라디오가 새로운 매체로 출연하자, 각국의 법제는 '기존의 인쇄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²⁾라는 이유로 '방송의 성격상의 차이'³⁾를 구분 지어 신문과는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차별성에 근거한 매체구분은 방송을 언론으로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 주저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방송에 대한 탈규제(deregulation)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인쇄매체와는 다른 이론과 법제로 방송을 옹호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제는 방송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전자매체들이 출현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19세기말에 저질렀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저항과 두려움'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⁵⁾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는 우를 범한다면, 모처럼 획기적인 과학정보기술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정보의 보고를 쓰레기창고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새로운 매체들의 언론 기능성에 유념하여, 언론으로서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의 개념과 특징, 역할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특히 반론권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1. 인터넷의 특징

인터넷(internet)을 한마디로 개념·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그 단어가 'inter'와 'net'으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그 의미를 '네트워크로 구성된 각 컴퓨터 네트워크간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고, 학자들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⁶⁾ 미국법원도 인터넷을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집단을 서로 연

2) *Metromedia, Inc. v. City of San Diego*, 453 U.S. 490, 555(1981); *Kovacs v. Cooper*, 336 U.S. 77, 97(1949).

3) 주파수의 희소성, 신탁이론, 공공자산론, 영향력, 침투력 등.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아니한다.

4) 자세한 것은 박운희,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참조.

5) 同註 : Thomas G. Krattenmaker & L.A. Powe, Jr., *Converging First Amendment Principles for Converging Communications media*, 104 *The Yale L. J.*, p.1721.

6) Anne Wells Brascomb, *Anonym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Challenges to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s*, 104 *The Yale L. J.* 1639; 조두영, 「인터넷과 수사에 관한 연구」, 『법조』, 1998. 5., p.43.

전달수단과 관계없이 어떤 매체가 언론의
역할을 한다면 그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내에서 논의되어야

결한 거대한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⁷⁾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은 상호작용적 형태(inter-active forms)로서 공개성과 쌍방향성(또는 탈중앙통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⁸⁾ 통신은 폐쇄성을, 방송은 공개성 또는 개방성을 그 생명으로 했던 고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이는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⁹⁾

2.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방송의 성격

현재 국내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대부분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이하 '인터넷언론'이라 한다)은 그 사이트의 성격을 보면, 독자투고나 시청자의견코너와 같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한 신문발행 또는 인터넷을 통한 재방송이나 중계방송 이외의 의미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나라의 인터넷언론은 자사의 홈페이지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인터넷신문을 보자. 물론 인터넷신문은 지면관계상 다 신지 못한 기사를 자세히 볼 수 있다든지, 아직 신문이 배달되기 전에, 혹은 지리적 여건상 배달된 이후의 소식을 즉각적·직접적으로 앉아서 볼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신속히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정보의 생산이나 흐름에 있어서의 탈중앙통제적(decentralized)인 요소, 또는 쌍방향성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중매체가 중앙통제식으로 보내는 정보를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down)받고 있을 뿐이다. 즉, 이용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문 제작이나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독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다. 단지 새로운 전자기술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신문과 다른 차별화된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창간된 '딴지일보'도 마찬가지이다.¹⁰⁾ 즉, 인터넷이

7) ACLU v. Reno 929 F. Supp. 824.

8) 자세한 내용은 Jerry Berman & Daniel J. Weitzner, *Abundance and User Control: Renewing the Democratic Heart of the First Amendment in the Age of Interactive Media*, 104 *The Yale L. J.*, pp.1621-1626.

9) 방송(broadcasting)이란 단어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널리 던져 보낸다는 뜻이어서 일방성, 공개성, 광역성을 그 특징으로 함에 반하여, 통신은 사인간(私人間)에 1대1로 오가는 개별성, 비밀성, 폐쇄성을 그 특징적 요소로 꼽았었던 것이 고전적 의미의 매체개념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방송은 오히려 가입자나 지역주민, 또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바뀌고 있고, 인터넷은 전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으면서 대집단적(對集團的)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특징적 요소에 착안해 어떤 학자들은 인터넷방송에 대해 cybercasting이라는 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Laura J. Gurak, *Cybercasting about Cyberspace*,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Magazine*, 1995, 1, 1.

10) 다만 200년 2월 22일 창간된 인터넷 종합일간지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의 경우 네티즌 700여 명이 시민 기자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 그 운영과 성과가 주목된다.

라고 하는 뉴미디어를 통해 기존의 신문발행 형태를 조금 달리했을 뿐, 인터넷신문이라고 해서 인터넷의 특징적 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방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방송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소리로만 들어야 했던 라디오를 시청각적으로 접할 수 있어 호기심과 오락성을 높일 수 있으며, TV도 문자로 재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기록성이 배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해진 뉴스 시간 외에도 새로운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다는 신속성이 인정된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의 방송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이는 새로 발족한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용자는 여전히 방송사가 통제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정보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받아 보는 시청자·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할 뿐,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개방성, 탈중앙통제적인 요소는 역시 찾아볼 수 없다.¹¹⁾ 다만 접근의 공개성(open access)¹²⁾과 용이성이 특징적 요소로 부각될 뿐이다.

요컨대, 우리 나라처럼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인쇄물이나 방송이라고 하는 수단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즉, 인쇄매체와 라디

오, TV, 통신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 언론활동을 계속할 뿐이다.

우리는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사가 인터넷을 통해 좀더 접근하기 쉽고, 자세하게 정보를 흘려 보낸다는 점에서 이를 차별화하여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방송이라고 부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이 갖는 특징적인 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신문과 방송의 다른 형태의 발간과 송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새로운 매체들도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냐? 또는 언론의 기능을 하느냐? 하는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미 언론의 명백한 또 다른 표현형태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문이 가두관매나 가정배달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접속될 때, 또는 방송이 TV나 라디오가 아닌 인터넷으로 송출될 때 과연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법제가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3. 법적 논리의 변환가능성

(1) 명백한 차이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문이나 방송을 내보내는 공급자(provider)는 그 행위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언론활동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2000년 3월 1일에 개국하는 인터넷방송 마이디오(MyDio)도 사실은 음악채널 m.net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기존 방송과의 차이점은 역시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 Jerry Berman and Daniel J. Weitzner, 앞의 논문, p.1622.

현 인터넷 신문·방송은 기존 언론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언론행위를 하고 있어

고 인터넷언론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다른 차이점은 첫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언론매체들과는 접근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고, 둘째,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도 신문이나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먼저,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접근방식의 변화를 보자.

우리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에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른 접근방법상의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현관 앞에 놓여있거나 거실탁자 위에 있는 신문을 단순히 펼쳐면 바로 읽을 수 있는 신문과도 다르고, 누군가가 틀어 놓은 라디오나 TV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고 보게 되는 방송과도 다른 것이다.

신문은 식자(識者)만이 읽을 수 있고, 읽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읽게 되는데 비하여, 방송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청객처럼 내 가정에 침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침투력이 엄청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규제논리는 인터넷언론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려면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령층은 10-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능력도 40대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과연 언론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법적 논리나 제한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용규제에 관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큰 시설투자 없이 인터넷신문이나 방송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용을 공급하면 그만이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기존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이 요구하고 있는 엄청난 시설기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다. 방송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자체 제작을 위해서는 스튜디오 등 방송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이나, 외부제작물을 구입·공급할 경우에는 인터넷신문과 비슷한 정도의 기본 공간과 시설만 있으면 족하다. 이 정도의 구비요건은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사가 허가나 등록시 필요로 했던 시설기준이나 투자규모에 비하면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2) 법적 논리와 법제의 변화를 위한 제언

위와 같은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논리와 법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첫째, 과연 매체의 종류에 따른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신문도 방송처럼, 방송도 신문처럼, 라디오도 TV처럼, TV도 신문처럼 이용자에게 다가오는 인터넷시대에 과연

신문과는 또 다른 방송의 희소성, 영향력, 침투력, 공공자산론 등의 이론에 따른 내용규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반론권에 두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둘째, 내용규제에 관한 방향과 기준설정이 다. 이는 주로 폭력과 외설물,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네티즌의 인구와 관련해¹³⁾ 주로 청소년 보호와의 관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논의의 범위가 단순히 청소년 관련성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본적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와 그 영역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에 관한 법률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때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방송의 시대적 요청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이 되고 말았으며, 정간법도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조항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¹⁴⁾

인터넷언론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비의 목적은 첫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보다 많은 언론사이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언론사이트의 개설은 상호경쟁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표출을 초래할 것이고, 이를 통한 활발한 논의와 정보의 쌍방향적 흐름은 곧바로 사회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 확립을 거쳐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희소성으로부터의 탈출은 곧 정부통제의 종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인터넷언론에 대한 진입장벽(entry barriers)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입장벽의 해소는 결국 일반인이 지출해야 하는 정보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정보화된 인간(informed person)은 곧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⁵⁾ 다만, 인터넷신문이든 인터넷방송이든 발행인과 공급자, 편집자의 성명, 주소 등은

13) 우리 나라에서의 정확한 네티즌인구에 관한 통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5년 현재 인터넷인구는 3·4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Cass R. Sunstein,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First Amendment Law Handbook (James L. Swanson ed.), 1996, Clark Boardman Callaghan, N.Y., p.25.

14) 예컨대 인터넷신문의 경우, 정간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통신의 시설기준은 전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7조상의 등록요건도 인터넷시대에는 걸맞지 아니한다. 소수의 재산가만이 가능했던 언론사 운영은 이제 그 막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신문서비스는 '신문사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자의 이기적 발상의 소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언론사를 소유·경영할 수 없었던 일반대중들도 전자시대를 맞이하여 손쉽게 자신들의 의견과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간법상의 신문사에 대한 시설구비조건과 등록요건은 인터넷상에서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이다. 엄청난 시설투자와 주파수의 희소성 때문에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에 진출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이 큰 자본 없이 인터넷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가 요구하고 있는 방송국의 허가제도가 재고되어야 하고, 시설과 기술수준도 전자시대에 걸맞게 최소한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 종합방송뿐만 아니라 특화된 다양한 방송의 공급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15) Thomas G. Krattenmaker & L. A. Powe, Jr., 앞의 논문, p.1734.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발행인과 공급자, 편집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밝히도록 해야

반드시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언론 활동으로 인해 일반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¹⁶⁾ 그밖에도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접근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상론(詳論)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Ⅲ. 매체의 변화와 반론권

1. 매체의 변화 : 예상되는 명암의 교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문사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우선 이용자들은 수많은 채널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다양한 선택의 폭도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터(free market of ideas)' 조성은 기존 인쇄매체나 방송매체, 통신매체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훨씬 잘 형성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¹⁷⁾

그런데, 인터넷언론의 자유로운 설립은 그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정성과 폭력성, 비공정성 등 예상되는 언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예에서 보면 '열린 광장'에 대한 이 같은 위협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생겨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매체의 활동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들이다.¹⁹⁾ 따라서 명령과 통제를 통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동기 유발²⁰⁾과 보조금지급, 특별프로그램과 특별방송장려금지급 등 다양한 장려정책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터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²¹⁾ 즉,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인터넷신문과 방송을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더 넓은 선택권과 그를 통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인터넷 언론에 대하여는 과감한 국고보조도 함으로써 다양한 언론매체시대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제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²²⁾ 이러한 정책과 법적 매체 배려는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16)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1664.

17)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1665 ;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27.

18) 자세한 것은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p.1664-1679 참조.

19) Thomas G. Krattenmaker & L. A. Powe, Jr., 앞의 논문, pp.1724-1725.

20)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35.

21) Thomas G. Krattenmaker & L. A. Powe, Jr., 앞의 논문, pp.1733-1734.

22) Jerry Berman & Daniel J. Weitzner, 앞의 논문, pp.1629-1634.

신문과 방송이 독점화, 거대화, 권력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언론이 늘어날 경우, 일반대중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2. 인터넷언론에서의 반론권의 의미와 가치

우리 나라에서는 신문과 방송에 모두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정간법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히 하게 하기 위해 보장하고 있는 것"²³⁾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반론권은 언론활동에 따른 일반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에 보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는 인터넷언론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설립이 자유화되면 자연스럽게 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이 상호경쟁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선정성과 상업성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문제에 대한 토론이 증가되어야 하고, 그 증진방법 중의 하나가 반론권의 활발한 제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한 강력한 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공적 문제(public issue)의 활발한 토론을 조장하기 위해 모든 전자매체운영자는 교육기관이나 건강관리기구,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영방송국, 도서관, 공공영조물, 지역신문, 소규모방송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접근권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²⁴⁾. 반론권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반론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방송에서만 인정되고있는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²⁵⁾ 대단한 입법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는 1987년 공정성원칙이 폐기된 이후에도²⁶⁾ 전자매체에 있어서는 공적 문제(public affairs)에 관한 공적 토론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견해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지금까지 탐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쇄매체에서의 반론권이 위헌무효판결을 받고²⁷⁾ FCC가 공정성원칙을 폐기시켰으며 법원도 공정성원칙의 적용을 거부²⁸⁾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반론권(a limited right of reply)²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신공격의 원칙(personal attack rule)³⁰⁾과 정치적 논설원칙(political editorial rule)³¹⁾³²⁾에

23)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헌판집 3권, p.518).

24) S. 1822, 103d Cong., 2d Sess. §103(a)(Communicator Act of 1994).

25)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1969).

26) 자세한 내용은 박운희, 앞의 논문, pp.140-158 참조.

27)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28) Syracuse Peace Council v. FCC, 867 F.2d 654(D.C. Cir. 1989).

29) 또는 유사반론권(a similar right of reply)이라고도 한다. Radio-Television News Directors Association(이하 RTNDA 이라 축약한다) v. FCC, 184 F. 3d 872(1999).

30) 47 C.F.R. @ 73.1920 (a) (1998).

31) 47 C.F.R. @ 73.1930 (a) (1998).

32) 자세한 내용은 박운희, 앞의 논문, pp.158-168 참조.

방송에서만 제한적으로 반론권이 인정되는 미국에서 최근 전자매체운영자에 대해 주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도서관, 중소 언론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보장토록 하는 입법안 제출

대한 폐기요청과 위헌소송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두 원칙을 계속 지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³⁾ 즉, 두 원칙이 모두 공정성원칙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폐기된 상황에서 어떻게 파생원칙이 유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위헌론자들의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신공격이나 논설을 통해 공격받은 입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반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으로 다양한 사상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³⁴⁾며, 두 원칙이 피해자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공정성원칙이 폐기되고도 10년이 더 흐른 1998년에 “두 원칙이 일반인의 관심을 야기하기 위한 공익에서 나온 것이지 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치명

적인 것은 아니다”³⁵⁾라는 이유로 합헌판결을 내려 위헌성논란에 중지부를 찍었다. 즉, “유발방송을 보고 들은 일반인에게 확인방송을 듣게 한다든지, 인신공격을 받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공익에 기여하게 하는 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³⁶⁾는 것이다. 요컨대 일반 대중은 문제의 양측면을 모두 보고 들어야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진실발견은 올바른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된 반론권’, 또는 ‘유사 반론권(similar right of reply)’³⁷⁾으로서의 공적 의미를 인정한 것이다.³⁸⁾ 1992년의 케이블TV 소비자보호 및 경쟁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다.³⁹⁾ 한 마디로 인신공격의 피해자나 반대당의 입후보자는 그들의 견해를 표명하고 방송매체에 접근할

33) *Sangre de Cristo Communications Inc. v. FCC*, 139 F. 3d 953(1998); *Time Warner Entertainment Co. v. FCC*, 323 U.S. App. D.C. 109(D.C.Cir. 1997); *Radio Television News Directors Ass'n*, 1997 U.S. App. No. 96-1338, 1997 WL 150084(D.C.Cir. Feb. 7, 1997); *Syracuse Peace Council v. FCC*, 276 U.S. App. D.C. 38, 867 F.2d 654(D.C.Cir. 1989); *Branch v. FCC*, 262 U.S. App. D.C. 310(D.C.Cir. 1987).

34) *Time Warner Entertainment Co. v. FCC*, 323 U.S. App. D.C. 109(D.C. Cir. 1997); *Branch v. FCC*, 262 U.S. App. D.C. 310(D.C. Cir. 1987); *Telecommunications Research & Action Ctr. v. FCC*, 255 U.S. App. D.C. 287(D.C. Cir. 1986).

35) *Arkansas Educ. Television Comm'n v. Forbes*, 523 U.S. 666(1998).

36) *Sangre de Cristo Communications Inc. v. FCC*, 139 F. 3d 953(1998).

37) *Arkansas AFL-CIO v. FCC*, 11 F.3d 1430(8th Cir. 1993).

38) 물론 이 판결이후 미국의 라디오TV뉴스책임자협회(RTND)와 전국방송연합회(NBA) 등이 연합으로 FCC가 광범위한 규칙제정권을 행사하고 있어 미 행정절차법(U.S.C. @ 706(1994)) 제5조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하자 콜롬비아순회법원은 지난 해 8월 이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면서 FCC측에 “두 원칙의 보다 상세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라”고 판시하였다(RTND v. FCC, 184 F. 3d 872(1999) (No. 98-1305, No. 98-1334), 1999 U.S. App. LEXIS 18163). 따라서 FCC가 앞으로 어떻게 그 이론적 설명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두 단체는 1987년과 1990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두 원칙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FCC에 대하여 직무집행명장(writ of mandamus)을 발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매번 기각결정을 내렸었다[*Radio Television News Directors Ass'n*, 1997 U.S. App. Lexis 6015, No. 96-1338, 1997 WL 150084(D.C. Cir. Feb. 7, 1997)].

39) Jerry Berman & Daniel J. Weitzner, 앞의 논문, p.1636.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디슨(James Madison)이 주장한 이른바 '공적 검토'(public deliberation) 이론의 개가라고 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공적 검토 이론은 최근들어 특히 전자매체와 가상공간에서의 공적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목적 역시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체제(a well-functioning democratic regime)'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⁴¹⁾ 케이블TV에서 요구되는 must-carry rule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must-carry rule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성을 인정받았다.⁴²⁾ 물론 오킨(O'Connor)대법관과 같이 '정부의 조잡한 간섭'이라며 must-carry rule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반대론자도 있었지만,⁴³⁾이 규정이 교육적, 공적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합헌성이 인정되었다.⁴⁴⁾

그런데 가상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⁴⁵⁾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⁴⁶⁾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규제 논의는 회의론자와 적극주의자들이 각각 '자유시장론'과 '공적 검토론'을 주장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⁴⁷⁾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레드라이온 판결⁴⁸⁾은 아주 탁월한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적어도 가상공간에서 인신공격을 받아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는 당연히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⁴⁹⁾ 그런가 하면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공정성원칙을 폐기한지 3년이 지난 1990년에 동 원칙과 반론권을 방송최고법(Israel Broadcasting Authority Law)에 법제화해 시행하는 등 반론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유럽대륙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⁵⁰⁾

물론 모든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으며, 만일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상공간에서의 '공적 광장(public forum)'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⁵¹⁾ 또 공개성과 쌍방향성을

40)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5

41)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7.

42) Turner Broadcasting Sys., Inc. v. FCC, 114 S. Ct. 2445(D.D.C. 1993)

43) Turner Broadcasting Sys., Inc. v. FCC, 114 S. Ct. 2445(D.D.C. 1993), 2478(in O'Connor, J. dissenting opinion).

44) 따라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터너유형(Turner Model)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p.9-23 참조.

45) Pub L. No 104-104, codified at 47 USCA.

46) 통신품위법은 1997년 연방대법원에서 부분무효판결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Reno v. ACLU, 177 S.Ct 2329(1997) 참조.

47) 자세한 논의는 Jack L. Goldsmith, 앞의 논문 pp.5-9, 참조.

48)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1969).

49)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1671.

50) 자세한 것은 Amit M. Schejter, The Fairness Doctrine is Dead and Living in Israel, 51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281(1999) 참조.

51)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1672.

모든 가상공간의 정보에 대해 반론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굳이 반론이라는 법적 도구를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견해를 즉각 밝힐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이나 외설, 음란 등의 내용규제가 아닌 한, 다른 사이버해결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은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한 언론활동일 뿐, 인터넷의 특징적 요소를 구비한 것이 아닌, 다시 말해 공개성은 있으나, 쌍방향성이 결여된 언론활동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법익이 침해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 생활에서 반론권이 야기하는 다양성 확보와 진리 발견, 민주주의를 위한 여론 형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가 인터넷언론에서도 똑 같이 요구되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헌법 제21조).

IV. 인터넷언론에서의 반론권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새로운 전자매체의 발달은 또 하나의 색다른 장치(just another appliance)⁵²⁾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일 뿐, 그 장치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민주적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유념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논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⁵³⁾ 따라서 반론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정간법이나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의 반론권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반론권법 체계가 아직은 미숙할 뿐만 아니라, 전자매체에 걸맞는 반론권의 모습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반론권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⁵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겠지만, 시론정도의 제시를 하자면 반론권의 주체와 대상, 제기방법·기간, 담당기관 등에 관한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양성 확보와 진실 발견을 위해 인터넷언론에도 반론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 대상은 사실보도만이 아니라 논평과 의견, 가치판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반론제기기간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른 날로부터 1달'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인터넷세계에 걸맞을 것이다. 모든 반론은 '사람들의 뇌리에 유발기사가 남아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52)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5.

53) 실제로미국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일반 언론에서와 똑같은 법을 적용하였다.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1991).

54) 보다 자세한 것은 박운희,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가상세계는 현실생활보다도 훨씬 빠르게 정보가 흐른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기간에 대한 검토는 필연적인 것이다.

또 반론의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공개성과 다양성, 탈중앙통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가상세계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방법'만이 정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완고한 사이버단체에 대한 경직된 법 적용이 가져온 외국에서의 실패사례를 되돌아본다면,⁵⁵⁾ 그리고 네티즌들의 공격적이고도 보복적인 행동양식⁵⁶⁾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반론권의 실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언론중재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의 충족이라든지,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중재방안모색이라든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제기건수에 대비한 중재위원의 상근화 등이 구비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멀티미디어시대의 반론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전자매체의 초영역적(extraterritorial) 특징, 특히 인터넷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국가간의 사법공조체제도 구축되어야 하며, 자연히 재판관할권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⁵⁷⁾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과 독일의 포르노사이트사건,⁵⁸⁾ 영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북(Digitalbook)사건⁵⁹⁾ 등이 외국 인터넷업체에 의한 국내법 위반사항에 대한 선례로서 초영역적인 사법적 심사가능성에 관한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무튼 컴퓨터가 가져다 준 놀랍고도 경이로운 정보의 시장터(computer-mediated information marketplace)가 인간에게 존엄과 자율, 책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열린 광장(information agora)⁶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속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한 무궁무진한 정보의 보고가 쓰레기 같은 싸구려 언론(cheap speech)⁶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55) U.S. v. LaMacchia, No. 94-10092 U.S. Dist. LEXIS 18602.;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1991).

56)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p.1656-1664.

57) 이에 관하여는 임준호, 「인터넷과 재판관할」, 『법률신문』, 1998. 6. 29, p.14; 조부영, 앞의 논문, pp.43-83 참조.

58) 미국의 CompuServe라는 유수한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제공한 화면이 독일의 반 포르노법(anti-pornography laws)에 위반되었다며 독일이 사이트개설자와 스텝들에 대하여 독일법을 적용한 사건이 있었다. N.Y. Times D4(1996, 1, 15.)

59) 자세한 논의는 Jack L.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First Amendment Law Handbook(James L. Swanson ed.), West Group, 1999, St. Paul, MN, p.1046 참조.

60) Anne Wells Branscomb, 앞의 논문, p.1639.

61) Eugene Volokh, *Cheap Speech and What It Will Do*, 104 the yale L. J., p.1805.

독일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1. 근거법률

1997년 8월 1일,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에 관한 주들간의 계약 (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 과 '통신을 사용한 제공자법 (Teledienstegesetz: TDG)' 이 나란히 효력을 발생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법률근거가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된 이유는 인터넷의 성격규정에 대한 연방과 주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독일 기본법상 인터넷의 성격이 개인통신이라면 그에 대한 입법권한은 연방에 있게 되고, 만약 전기대중매체라면 입법권한은 각 주에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한 외에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전기대중매체는 사회 공공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개인통신은 개인의 비밀보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후자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법률상의 규정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적 지위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여부 정도이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인 통신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을 사용한 제공자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에 대한 주들간의 계약에서만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일반공공을 향해 있다면 전자출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게시는 '출판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물질적 형태

(stoffliche Verkörperung)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언론법상의 출판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관례이다.¹⁾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대해 기존 언론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6년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게 되었다.

2. 전자출판자의 법적지위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에 관한 주들간의 계약(MDStV)' 제2조에 이 계약이 적용받는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가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형태로 전기나 전자장 등을 이용하여 일반 공공에게 그림, 소리 그리고 문자를 제공하는 정보 및 통신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홈쇼핑, 문자방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일반공공을 향해 있다면 '전자출판 (elektronische Presse)'이라 할 수 있는데, MDStV 제2조 2항 4호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일반공공을 향해 있다는 의미는 인터넷사용자가 언제든지 그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²⁾, 언제든지 인터넷사용자가 볼 수 있게 게시된 홈페이지상의 정보 내용이 일반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를 들면 개별적인 위탁에 의한 특정 자료 등의 조사, 일기예보, 주식정보 등), 자사를 소개하거나 자사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라면 통신을 사용한 제공자라 할 수 있다(TDG 제2조 2항 2호의 예).

이와 대조적으로 홈페이지가 일반공공을 향해 의사 전달이라는 본질을 가지는 정보서비스를 한다면 이는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전자출판). 따라서 한 홈페이지가 일반공공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라도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인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1)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현재 알려진 관례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결정 1건이다. (LG Düsseldorf: Beschl. vom 29.04.98 - AZ 12 O 132/98 = NJW-RR 1998, 1633 f.)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Stefan Ory, AfP 1998, 465 ff; Roger Mann, AfP 1998, 129 ff. 참조.

2) world wide web(www)를 통해 게시된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모든 홈페이지는 일반공공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으나(Kröger/Moos, AfP 1997, 675, 679) 이는 TDG 제2조 2항 2호에서 개인의 통신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규정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 홈페이지가 일반공공성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가의 여부이다.³⁾

하지만 양자의 구별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어렵고 그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홈페이지는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많다. 양자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홈페이지의 부분들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다면 각 부분별로 전기대중매체인가 아니면 개인통신인가 여부의 구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일반공공의 의사형성을 의도로 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반적으로 MDSstV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제공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제6조 1항). 특히 정기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상에 그대로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문자의 형태로 언론편집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그 책임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는 각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별도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2항).

3.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전자출판 중 반론보도의무를 지는 전자출판은 MDSstV 제6조2항에 해당되는 경우이다(제10조 제1항). 즉 정기적으로 편집물을 게시하는 전자출판인 경우에 만 반론보도의무를 진다. 판례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게시되는 편집물로 반론보도의무를 제한한 것은 홈페이지의 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의 정기성 때문에 가지는 공공의 의사형성에의 영향력이 커서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즉 게시의 연속성을 통해 지속적인 효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는 MDSstV 제6조 2항에서 의미하는 정기적으로 게시되는 대중매체로서의 정보제공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홈페이지는 언제든지 새롭게 갱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기성

을 가진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매체를 사용한 제공자 중 특별히 제6조 2항에 해당되는 제공자에 한해 반론보도청구의무를 제한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의 홈페이지가 정기적으로 새롭게 바뀌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은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한번 홈페이지가 새롭게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기적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⁴⁾

반론보도는 사실주장에 한해서 인정되며, 가감없이 게시된 내용과 동일한 비중으로 제공자가 주장한 사실과 연계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반론보도는 제공자가 사실주장을 게재하는 동안 계속 게시되며, 만약 제공자의 사실주장이 더 이상 게시되지 않거나 또는 반론을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인이 요구하는 기간 만큼 사실주장이 된 장소와 상응하는 장소에 반론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한 달을 넘지 못한다. 제공자의 반론에 대한 역반론은 주장한 사실에 관한 사항만 가능하고 직접 반론과 연관시킬 수 없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청구인이 반론보도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반론이 제공자가 주장한 사실보다 부당하게 초과하는 경우, 반론의 내용이 사실주장에 한정되지 않거나 형사상 처벌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0조 2항).

또한 반론보도청구는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가 끝난 후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론보도는 내용의 게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는 해당자 또는 해당자의 대리인의 서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반론청구가 전자출판의 제공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분절차에 대한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되며 본안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0조 4항). □

박종호 원천대학 공법연구소

3) MDSstV 제2조에 대한 입법취지설명, Bauer/Ory, Recht in Hörfunk und Fernsehen, Neuwied/Kriftel, Loesblattsammlung, Nr. 5,2, S. 3 f.

4) LG Düsseldorf, NJW-RR 1998, 1633 f.

선거보도의 법적 · 제도적 고찰

- 선거기사심의를 중심으로 -

I. 머리말

2000년 2월 16일 시행·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고 한다)에는 언론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규정이 신설 또는 전문개정되었다.

즉 선거법 제8조의3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사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의하여 기각·각하 또는 인용결정을 하여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제8조의4 조항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신설 및 개정조항에 따라 역시 추가된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벌칙조항 2항 3호 안에도 "가목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목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목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등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신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야바위 언론규제 선거법"¹⁾, "시대 거스른 언론 재갈 위헌소지"²⁾, "반언론적 처벌 조항 적용 말아야"³⁾ 등 언론계로부터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이번 언론관련 선거법 개정 작업을 두고서 지난 1999. 12.경의

박 형 상 변 호 사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 한국기자협회 법률고문
-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현행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다수

1) 중앙일보, 2000. 3. 1.자 사설
 2) 동아일보, 2000. 3. 2.자 A1면.
 3) 문화일보, 2000. 2. 29.자 사설.

개정논란 초기시점부터 언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비판⁴⁾하여 왔는데, 그러한 주류적 흐름과는 이례적인 소수 견해도 있었다.

즉 김학수 교수는 선거기사심의제도 신설에 관한 찬반론을 소개한 다음 “그런 법의 등장은 진정 한국언론의 업보임에 틀림없다”라는 일면적 지지를 표하면서 ‘총선보도 공공저널리즘’을 주장하거나⁵⁾, 또는 “우선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 심각한 한국적 현실에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떤 규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⁶⁾. (김학수 교수의 견해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정작 이번 선거법이 통과된 직후에 보여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선거기사심의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논란하기보다는 “사죄문명령제도의 위헌성과 언론인에 대한 2년 이하 징역형 차별조항의 과도함”에만 그 논란의 초점이 집중되는 듯하다.

이에 필자는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도 신설 조항의 법문상의 문제점을 우선 살펴보고, 그 불이행죄 처벌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 언론법제에서 논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건의 지역신문사의 선거기사에 대하여 4개 기사 모두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난 3. 1.경에 판단하여 2건에 대하여는 ‘주의 결정’, 2건에

대하여는 ‘경고결정’을 내렸으며, 사과문 게재 명령의 경우는 위헌시비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⁷⁾

그런데 필자로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제반 하부규칙 자체를 아직 검토하지 못한 처지인 바, 본인의 천학비재함에 덧붙여 이점에 이 글의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II. 신설 법문 검토

위 신설 법조문에 대한 법조계의 구체적 검토작업은 아직 없어 보인다. 이번 개정 선거법 직후 간행된 선거법 책자⁸⁾에서도 이번의 제8조의 3항, 제8조의 4항, 제256조 2항 3호 불이행죄에 대한 법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지적은 전혀 없다.

1. 제8조의 3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조항 법문검토

우선 제8조의 3조가 논하는 “공정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 불확정 개념인데서 생길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공정성 개념을 해석상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기준도 전혀 예시되지 아니한 채 그 규제 대상을 ‘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내용을 포함한 선거기사’라고만 하여 법문에 비록 사실보

4) 유재천, “지금도 언론 압박음할 때인가”, 동아일보, 1999년 12월 17일자 : 임상원, “국회의 언론제재 해프닝”, 문화일보, 1999년 12월 17일자 : 김서중, “정도 벗어난 선거법 협상”, 중앙일보, 1999년 12월 16일자.

5) 문화일보, 2000년 2월 28일자.

6) 문화일보, 2000년 1월 8일자.

7) 동아일보, 2000년 3월 9일자.

8) 정병욱, 『선거법』, 박영사, 2000. 3. 5. 초판.

도는 예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보도는 물론이고 사실·논평 등 의견 기사까지 그 규제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는 점은 따로 따져볼만한 문제점이다.

특히 이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특정 후보를 자발적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편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견적지지 표명까지 포함한 언론의 일거수 일투족을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⁹⁾ 다음 제2항의 위원회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과연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논할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위원들의 자격 자체부터 의심스럽다. 각 추천 단체의 대표성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는 더할나위없이 불공정하다. 무소속후보자나 교섭단체를 구성 못한 소수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한편 위 조문의 제3항에는 공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능’을 전제하고 있는데, 조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반 증거수집 방법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제반 절차조항이 전혀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능의 선행 없이는 그 어떤 공정성을 따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순한 절차적 반론차원이 아니라 보도의 진위를 내용적으로 따지게 되는 정정보도청구 절차의 경우는 그 절박성이 더욱 그렇다.

사과문 제도의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1. 4. 1. 선고 89헌마 160호 결정’을 통하여 그 위헌성을 이미 확인하였기에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은 피한다.

그런데 정정보도결정 절차의 경우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임의적 관할 사항일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그 위법성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재판절차도 아니고 중재절차도 아닌 특별위원회의 수준에서 1회적 단심절차에 의거하여 종국적으로 내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정정보도문 직권 결정형식 자체는 법리적으로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치라 하겠다.

또한 위와 같이 법률적 실체가 모호한 심의위원회가 자체 결정으로서(그 의결 방법과 기준도 법률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재판받을 기본권을 제한하는 셈이 된다.

재판절차 아닌 중재절차(사실상 조정절차)를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마저도 그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체 위원의 2/5이상은 법관자격자를 요구하고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심의위원회의 권한행사의 문제점은 심각하다(또한 위3항에 의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면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재의결 절차 또는 거부절차 여지 없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행하도록만 되어있는 바, 이 부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이 점은 제5항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9) 2000. 3. 6.자 국내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NYT가 고이, 맥케인을 지지하는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지지후보 편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하부기관인 듯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마저도 “그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 구성방법, 관할, 사무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 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정간법 제18조 제9항), ‘대외적 구속력 있는 독자적인 규칙제정권한’도 없으며 재위임의 수권조항도 전혀 가지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사과문 결정 및 정정보도문 결정 등 국민의 권리에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 제5항 부분 역시 그 위헌성이 분명하다 하겠다.

이번 신설조항에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사과문 명령을 받거나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받게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한자-위 선거법에서는 다시금 ‘언론사’라고 지칭하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과연 누구인가이다. 우리 정간법의 경우는 “발행인”개념과 “편집인”개념, “언론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개념을 구별한 후 편집인에 대하여는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정간법 제2조 11호)

그렇다면 이번 선거법 제256조 2항 제3호에서 말하는 “통보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발행인인가 편집인인가, 아니면 둘다인가, 발행인들이 기사의 작성, 편집에 관여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다 하여도 발행인이 구체적

으로 기사의 작성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별론으로 하되, 그 형사책임까지 함께 져야 하는가.¹⁰⁾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제8조의 2조 내용 중 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4항, 제6항”의 경우는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잉 준용이라 할 것이다.

특히 방송화면과 방송시간에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정치적 형평성이나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를 위한 방송심의의 엄격한 기술적 기준을 그 영향력이 방송처럼 직접적이지 못하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문 같은 활자매체에까지 그대로 원용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요구하게 되는 시정요구 사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조항도 없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그대로 따르게 한점 역시 잘못된 일이다.

2. 제8조의 4조(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조항 법문검토

우선 피해자 개념상의 법리적 혼선이 눈에 띈다. 위 제1항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간법 제16조 제1항상의 피해자, 즉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기준에 비추어 크게 확장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언론관련법제(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언론관계법의 반론청구제도)는 “사실과

10) 비록 이번 선거법 쟁점사안에 직접 관련되지는 아니하나 일본판례에서의 발행인과 편집인과의 책임논의를 소개한 문헌.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p.276, p.306 이하.

의견의 구별론"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만을 처벌하고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그 반론청구를 허용해 주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의 선거법은 "인신공격, 왜곡선전" 등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일응 의견에 대한 반론도 가능한 듯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에만 한정되는지 의견에도 확장되는지 그 기준자체가 아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법상의 후보자등"만을 "정간법상의 일반 국민"에 비추어 더 특별하게 보호한 불공평한 조항이다. 정치권이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즉 그간의 언론의 횡포에 맞서 이번 선거기사 심의제도를 굳이 제도화한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차원에서 신속구제 효과에 한정될 일이지 내용상의 특권적 취급까지 배려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욱이 선거법의 별도 조항으로서 제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에 '후보자 비방죄', 제252조에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에 '성명 등 허위표시죄'가 이미 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의 선거법상 인신공격, 왜곡선전에 관한 반론보도 규정은 비효율적 중복요소마저 농후하다.

특히 "인신공격이나 왜곡선전 요건"은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비방"과 일맥상통할 터인데 다음과 같은 '후보자 비방죄 폐지론' 근거는 경청할만하다.¹¹⁾

그런데 "후보자 비방죄" 역시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사실의 적시'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여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에 서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이르지 못한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도 꽤 누적되어 있다.¹²⁾

한편 251조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는 그 단서에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부가하고 있는 바, 위 위법성 조각사유가 선거법 제8조의 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 개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애매한 것이다.

선거과정이라 함은 주권재민의 원칙 및 참정권에 의거하여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감시하는 기회이고 언론의 보도 비판 작업은 '진리의 자유시장론', '의견의 경쟁관계' 속에서 그 다양성을 구현하는 작업인 만큼, 설령 선거법이라는 특별법에 의지하여 선거보도기사의 특질인 시간적 시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 언론관계법보다 더 특별한 절차적 신속조치를 배려한다한들 그렇다고 하여 언론보도의 본질적 사명까지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즉

11) 황정근, 「선거법의 개정방향(하)」, 『법률신문』, 1999. 12. 20. 그 논거를 보면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비방죄를 처벌하는 것은 외국에도 입법례가 없다는 것이고, 재판상의 입증과정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의 한계가 애매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죄 쪽으로 포괄시키되 후보자 비방죄는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12) 대법원 1997. 4. 25.선고 96도 2910판결, 1999. 12. 10.선고 99도 3030판결, 1993. 1. 26.선고 92도 1693판결 등

범죄수준에 이르지 않는 비난의견 및 표현영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신중 엄격해야 하며 결코 일반법인 정간법에서 논하는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법에 절차적 차원에서 특별 규정을 따로 두려 한다면 선거법상의 반론보도 예외사유 범위 역시 그 규제사유를 따로 덧붙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넓혀주어야 하며 그 정도는 정간법상의 반론보도 예외 사유보다 더욱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게 균형론의 입장에서 본 필자의 논지이다.¹³⁾

한편 위 반론보도의 시간적 신청기한 요건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의 언론의 보도 동향은 다른 누구보다도 후보자측이 예민하게 알 수 있는 후보자간의 초미의 관심사인 데다가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본연의 연속적 보도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 그 시의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보도가 있는 후 10일 이내”라고 하는 쪽이 합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일이다.

특히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번의 국회의원 선거기간도 불과 17일간이다) 선거운동이 끝난 후에도 후보자가 보복적 차원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제도를 남용행사할 우려가 다분한 것이다.

한편, 반론보도이행 시점에 대하여 “방송사는 이를 청구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라고 그 반론이행 시점의 한계를 규정하고는 있으

나, 이는 프랑스의 입법례에 비교하여 그 구체적 절차가 크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평상시 시점”과 “선거기간 시점”을 나누어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신문의 경우 1919년법에 의하면 “24시간 이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신문사가 반론문 게재로 인하여 생기는 지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6시간 전’에 해당 언론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제3자가 신문인쇄 시간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그 시간을 검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체적 절차 조항을 우리의 경우도 유념할만하다.

한편 위 제2항을 보면 유발 기사를 실은 정기간행물의 다음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 배부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발 기사를 실었던 정기간행물 매체가 아닌 다른 “일반 일간신문”에 반론문을 게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점 역시 “유발매체와 반론매체, 유발기사와 반론기사 사이의 동일한 조건과 효과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에 어긋난 불평등한 규정이라 하겠다.

제3항에서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의 회부, 48시간 이내 ‘심의’, 지체없이 ‘통지’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부, 심의, 통지’ 등에 관련한 부분 역시 구체적 절차규정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컨대, 위와 같은 절차진행 중에 이해당사자간의 신청취하나 회부취하(철회)가 있게 되면 그 효과는 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13) 프랑스의 경우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방송활동에 의하여 인신공격, 비난, 허위보도 등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에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한다. - 이하, 프랑스 관련 입법례는 박운희, 「프랑스에서의 반론권」, 『언론중재』, 1995년 봄호에서 재인용

또한 정간법 제16조 5항에서는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유발기사와 반론기사 사이의 동일한 효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선거법 제8조의 4조 제5항에는 위와 같은 원칙기준이 무시된 채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인용)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는 바, 이 부분 역시 심히 불평등한 것이다.

3. 제256조 제2항 3호 (불이행죄) 법문검토

우선 위와 같은 형사처벌조항에 있어서조차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지체없이”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¹⁴⁾도 있으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의할 때 “지체없이”라는 부분은 그 기간의 상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처벌조항에 있어서는 “제재조치 등 불이행”,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불이행” 사유를 “반론보도 결정의 불이행” 사유와 동렬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본래적인 사과문 제도, 정정보도문 제도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하여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이번과 같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의 특별결정에 터잡아 곧바로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 2년형 체벌형까지 처할 수 있도

록 하게 한 점 역시 그 위헌성이 농후한 것이다(또한 위 규정의 형량과 방송법 제106조(벌칙)의 제재조치 불이행죄 사이의 형량의 경중문제도 따로 논해져야 한다).

다만, 반론보도결정의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 자체가 절차적 기회균등의 차원, 무기대등의 원칙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절차적 형식적 수단인 점, 프랑스의 경우도 반론문게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언론매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사과문제도, 정정보도결정제도와는 달리 일응 수긍할만 하다¹⁵⁾

그리고 정간법상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직권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마는 점과 대비해 볼 때 이번 선거법상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은 너무나 과도한 편법이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도 “발행인에게 벌금형 또는 6일 이상 3월까지의 금고형”을 처하는 프랑스 예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지나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¹⁶⁾도 있는데, 채택할만하다고 생각한다.

4. 사죄광고(사과문)제도 위헌성 논란에 덧붙여

이번 선거법 개정이후 언론이 보여준 비판태도 중 ‘사죄광고’ 부분에 관련하여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없이 그 위헌성 결말이 지어진 듯 단언하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사안

14) 정병욱, 앞의 책, p.607.

15)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도 당사자간 반론게재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우리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절차방식으로 관여하는 식이 아니다.

16) 양경승,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

은 아니다.

앞서 말한대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1989년경 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한 바는 있으나, 그 결정문 방론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손해 배상판결문, 명예훼손의 유죄판결문,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따로 세겨둘만하다.

또한 서울고법 1994. 9. 27. 선고 92나 35846 확정판결(한상진 교수와 KBS사건)은 ‘인격권 침해시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 원고가 이른바 만족청구권의 한 형태로서 피고 방송법인이 약정과 달리 원고의 강연 내용을 부당히 삭제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점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내용을 고지할 것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의 양심에 반하여 주관적 의사표명으로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위 고등법원 확정판결문 주문은 “(앞부분 인용생략)... 강좌에서 방송한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의 ‘중민화의 길’이라는 강

의 프로그램은 원래 60분간 방송할 예정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간의 강의 내용이 삭제된 채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방송사는 법원으로부터 위 20분간의 강의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한상진 교수의 중민이론 중 21세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민의 개념, 역할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위 강연내용에 대한 한상진 교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우 1956년경 대법정 판결의 다수견해에 의한 사죄광고 합헌설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법조실무계의 경우도 그 허부에 대한 찬반학설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다.¹⁷⁾

그러므로 우리 언론법제상의 사죄광고허부(위 제도는 민법 제764조 범문안에 직접규정되고 있지도 아니하며 사실상 판례법상 제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좀더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서양의 여러 입법례와는 다르게 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에서만 사죄광고 허부 문제가 심각히 거론되는지에 관한 동양적 정서적, 사회적 배경까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의 선거법 입안자들이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 규정에 대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과문 제도 말고 다른 여타 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¹⁸⁾

17) 사죄광고 찬반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글로서는, 박철우, 「허위비방광고와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방법」,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18) 양삼승,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3년 가을호, 참고.

III. 쟁점사안별 검토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관계

이번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방법과 해당절차에서 우려나는 '특별위원회의 전문성' 정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방법 절차에 따른 '전문성' 정도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차라리 '언론중재위원회의 특별중재부(선거사건 전담중재부)' 형식으로 설치하는 게 백 번 나올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간법 제18조 8항에도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강해 볼만했다.

2. 선거기사심의제도와 선거방송심의제도의 중복성 여부

이번 선거법은 방송과 신문에 따라 두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절차 규정도 '방송위원회 규칙',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비록 방송과 신문의 매체적 특수성이 차별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심의절차 안에서 그 매체적 특질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 족할 일이겠으므로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위 두 심의위원회제도의 일원화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수 신문, 방송사가 똑같은 분쟁사안 내용에 기초하여 침해행위를 했을 경우 각 개별적으로 그 절차를 따로 진행시켜야만 하는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3. 심의절차, 중재절차, 재판절차와의 상관관계

기왕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수차 지적하고 있듯이 장차에는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사이의 절차적 통합이 필요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선거기사 심의절차를 중재절차로부터 따로 분리 설치한 점은 절차상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자체를 더욱 위협하는 처사가 되었다.

특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나 불복절차의 규정이 전혀 없이 사실상 단심 처분 절차로서 종결되는 식의 종국적 결정에 의거하여 곧바로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게 한 점을 보건대 이점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다.

4. 선택적 청구제도 도입론

이번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법, 정간법, 민법' 사이의 특별법 우선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별도로 이중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이른바 피해자가 후보자 지위와 일반국민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정간법 제18조 2항처럼 "정간법상의 중재절차 규정은 민법 제764조 규정에 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그 중첩관계 여부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언론법제상의 반론 및 정정보도법제를 프랑스의 그것과 단일한 차원에서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정정보도의 게재를 요구한 공무원의 경우는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한 점", "일반 아닌 공무원에게만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하되 이것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만 허용하고 라디오 TV방송 등에는 허용치 아니한

점”, “방송에 의하여 명예나 명성이 훼손된 자는 반론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론권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소송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한 점”등 프랑스 입법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의 언론분쟁의 현실을 보건대 진보적 언론법제의 반동적 현상으로서 이제는 이른바 피해자측에 의한 반론권과 정정보도권의 남용이라는 역설적 현상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선거법상의 후보자와 정간법상의 피해자간의 평등권 침해문제

앞서 부분에서 누차 지적한 것처럼 선거기사의 시의성에 수반한 신속구제의 필요성 말고는 정치적 선거후보자라 하여 그 어떤 특권적 지위를 일반 국민보다 더 누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IV. 맺음말 - 대안

이번에 신설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도에 관한 관련규정은 그 신설배경에 있어서 그간 언론의 편향적이고 책략적인 선거기사나 정치가십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정치인들의 피해의식”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그렇더라도 법리적 견지에서 분석검토 해 볼 때 이는 “언론관계법에 무지몽매한 정치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하나의 입법적 해프닝”이라 할 만하다.

한국적 상황하의 고유제도인 우리의 언론중

재위원회를 보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다. 앞서 말한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선거관련 보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별중재부’를 둘 수도 있겠다. 또한 정간법 제17조 1항이 말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 등의 법률개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통합방송법 제89조 제2항에 등장하는 ‘시청자 평가원’ 제도를 이른바 미국식 사내옴부즈맨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는 바, 방송사안에 두게되는 시청자 평가원에 상응하는 신문사안의 사내옴부즈맨 제도를 채택 도입할만하다. 이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전제로 하는 사항인데, 언론사의 자율적 권한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선임되고 외부 간섭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되는 사내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이 우리 법제상 도입 못할 이유는 없다.

앞에서 인용된 글에서 양경승 판사가 제안하고 있는 사내옴부즈맨 제도 설치 의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형태를 띠는 신문매체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통한 이 제도의 시행은 무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비판¹⁹⁾도 있으나, 살피건대 이른바 사내옴부즈맨제도라 하여도 발행인이나 언론사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국가나 외부기관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헌법 제21조 3항이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만큼 즉 미국헌법체계와 그에 따른 미국적 언론풍조와 크게 구별되는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할만한 것이다.

부언컨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언론에

19) 김재홍, 「한국언론 옴부즈맨제도 운용실태와 전망」, 『언론중재』, 1999년 봄호, p.33.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도 허용치 아니하여 (Shall make no law) 우리 같은 정간법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 헌법의 경우는 정간법이라는 언론규제 특별법을 따로 허용하는 체제인 만큼 정간법을 통한 합리적 규제범위 안에서라면 사내옴부즈맨 제도를 능히 법적으로 유도할만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기존의 신문윤리위원회나 신문기자협회 등의 자율적 규제기구에 의한 자율적 방법은 비록 바람직하겠지만 그 실효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다만 우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희귀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고유제도가 기왕에 있는 만큼 만약 실효성 있는 자율적 제도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에 이른바 스웨덴식 언론평의회의 성격을 덧붙여 개편, 확대해 보는 방안을 강구할만하다.²⁰⁾

그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중적 성격을 전제하여 한편에서는 소송절차의 전심절차로서 중재(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신문평의회식 자율적 결정을 내리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김학수 교수가 제3의 길을 제시하듯 언론중재위원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법원절차에 상관없이 반론권, 정정보도권은 물론이고 소액단위의 손해배상까지 직접 해결해 주는 방법은, 누누히 주지되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법관자격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3심제까지 포함하여)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규제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불리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법적제도적 견지에서 볼 때 최종적 대안으로는 일반기사이든 선거기사이든 그 기사 및 분쟁사안의 개별적 특수성이 따로 배려된다 하더라도 “정간법, 방송법, 선거법, 민법의 관련조항 등을 총괄하는, 이른바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 체제아래에서 “전심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건 전문법원이나 전담재판부”가 순차적 절차로서 2단계적 유기적 연계성을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

20) 스웨덴 신문평의회에 관한 기본적 참고문헌으로는 한국언론연구원, 『외국의 언론감시기구』 및 『언론중재』, 1993년 겨울호의 「스웨덴 신문 평의회의 정관 및 프레스 옴부즈만의 업무규정」.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염규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언론법 교수

한 사회의 명예훼손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가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와의 상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상당히 짐작할 수 있다.¹⁾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적 인물의 명예권 보호에 대한 아주 대조적인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이다.

즉 영국법에서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의회입 후보자의 명예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²⁾ 그러나 선거후보자에 대한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미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비판 자유에 입각해서 후보자의 명예를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³⁾

사실 선거 후보자들을 포함한 공적 인물에 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⁴⁾ 즉

공직자(public official)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연관이 없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도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미 헌법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거증책임인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⁵⁾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 교수이자 명예훼손법에 관한 최고 지침서를 저술한 Rodney A. Smolla는 "현대 미국 명예훼손법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정부와 관련한 문제와 공직자 원고에 대한 논의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비정부적인 '공적인 인사'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⁶⁾

'현실적 악의'의 확대 적용은 어느 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지만, 지나친 '현실적 악의' 원리의 확대는 그 본래의 목적과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1) Frederick Schauer, "Social Foundations of the Law of Defam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in *Media Law* 263 (Eric Barendt ed., 1993).

2)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ch.2, §106 (Eng.).

3) See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2:58, at 2-81 to 2-82 (2d ed, 1999).

4)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법의 제한(특히 공직자에 관한)에 대한 필자의 논문, 「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9년 겨울호, pp.82-93을 참조.

5) '현실적 악의'와 공적 인물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주 13~24에 관련한 본문을 참조.

6) Smolla, *supra* note 3, §2:5, at 2-14.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것은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적용에 있어 불가피한 문제일 수 있다. 공적 인물의 범위 등과 관련해 뉴욕타임즈지의 칼럼니스트이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⁷⁾ 사건에 대한 저서를 낸 Anthony Lewis는 이렇게 피력했다. "한정된 영역의 보다 신빙성 있는 이익을 판사들은 보다 기꺼이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권이 정부 및 공공정책에 관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그 보호는 보다 굳건하고 보다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지도자들처럼 사회적·문화적인 대표인사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만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깡단과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 같은 제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은 자유롭게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는데 따른 명확성과 견고성을 제시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다."⁸⁾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 명예훼손법의 개혁을 제창하는 학자들 중에는 공적 인물에 '현실적 악의'를 적용하는 것, 특히 공직자와는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는 공적인 인사들에 대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⁹⁾

미국의 공적 인물 관련 명예훼손법의 혼돈과 무질서는 '공적 인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미 연방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공적 인물을 정의하는 것

은 붓으로 해파리를 벽에 박으려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언급했다.¹⁰⁾ 거의 25년 전의 이러한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법의 운용에 대한 솔직한 토로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이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공적 인물을 별 어려움 없이 '정의'할 수 있다고 해도 법의 예측성과 일관성 있는 적용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운 정도의 실패였다고 하겠다.¹¹⁾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원칙처럼 공적 인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가까운 장래에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념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공적 인사와 사적 인사의 구별 그리고 공직자와 공적 인물의 '현실적 악의'상의 동일성은 여전히 미국 명예훼손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남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점을 감안하면서 미국 언론법에서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소송상에서 관건이 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의 적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적인 이론을 점검하면서 자주 거론되는 공적 인물에게 '현실적 악의'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려 한다.

그럼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사건에서 유래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 어떻게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공적 인물에 적용됐는가를 살펴보고, 연방대법원의 제 원칙들이 연방고등법원 등 주요 하급법원에서 어떻게 해석 운용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7) 376 U.S. 254 (1964)

8) Anthony Lewis, *Make No Law: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198 (1991).

9) See David A. Anderson, "Is Libel Law Worth Reforming?" in *Reforming Libel Law* 54(John Soloski & Randall P. Bezanson eds., 1992) ; Cass R. Sunstein,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160-61 (1993)

10) *Rosanova v. Playboy Enterprises*, 411 F. Supp. 440, 443 (S.D. Ga, 1976), *aff'd*, 580 F.2d 859 (5th Cir, 1978).

11)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7.3.1, at 294 (2d ed. 2000).

I. '현실적 악의'와 공적 인물

공적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는 명예훼손소송에서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Sullivan 원칙이 1967년에 정부공무원이 아닌 공적 인물에 의한 소송사건에 처음 적용되었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미 국민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근본취지의 '현실적 악의'가 정치적 명예훼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적 악의'의 확대가 여러모로 미국 명예훼손법의 혼란과 소송사건의 증가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의 신장보다는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현실적 악의'를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소송사건에 적용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Curtis Publishing Co. v. Butts*¹²⁾에서 연방대법원장 Earl Warren을 포함한 5명의 판사들은 공적 인물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소송에서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Warren 대법원장은 공직자와 공적 인사를 구별해서 증거의 기준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논리적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에 입각한 정책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동의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미국에서 정부와 개인간의 영역은 그 구별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경제와 정치권력

의 급속한 융합과 기업과 정부의 통합, 지식인과 정부관료 그리고 기업인 사이의 고도의 상호관계가 형성됐다. 경제공황, 전쟁, 국제적인 긴장, 국내의 시장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국가차원 혹은 국제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권력의 응집화를 초래했지만 그 권력은 통상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곳에 더욱 조직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공식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던 정책 결정들이 이제 복잡다기한 위원회나 공사, 협회를 통해서 시작·집행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의 일부는 단지 미약하게 정부와 연관을 맺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지위와 권력의 혼합이 개인의 경우에도 일어나 현재 공직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공적인 문제의 해결에 깊숙이 관계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유명세로 사회적 이슈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록 정치적 과정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지만 '공적 인물'은 '공직자'처럼 사회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집단으로서 이들 '공적 인물'들은 '공직자'들 만큼이나 매스미디어를 손쉽게 이용하여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견해와 활동에 대한 비판을 반박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은 공적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적인 문제나 사건에 개입한 이들 인사들에 대해 제한없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공직자'의 경우처럼 지극히 중요하다. 더욱이 공적 인물들이 정치적인 과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일반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론이야말로

12) 본 장은 미국 언론법 교과서 *Communication and the Law* (2000 ed, 2000)에 쓴 필자의 "Libel : The Plaintiff's Case" (pp.83-101)에 상당히 근거한 것이다.

13) 388 U.S. 130 (1967). 이 사건은 *Associated Press v. Walker* 사건과 함께 "Companion case"로 나왔다.

사회가 이들 인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¹⁴⁾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공적 인물’에 확대 적용하자는 Warren대법원장과 다른 4명의 대법원판사들의 입장은 John Marshall Harlan판사의 의견과 대조를 이뤘다. Harlan 대법원판사는 ‘현실적 악의’ 기준에 공적 인물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다. 우선 그는 ‘현실적 악의’가 정부비판적인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미국법상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Butts*사건은 “정부·국가의 선동적인 모독비방으로 인한 기소사건과는 전혀 유사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원고들은 정부의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명예훼손면책특권도 없었음을 덧붙였다.¹⁵⁾ 그러나 Harlan판사는 문제된 기사에 대한 일반국민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원고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일반의 관심 대상이 되었음을 유의했다. 또한 그들의 지위와 “목적있는 행위”로 인해 중요한 공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연관되었고 명예훼손적인 언사에 대해 미디어를 통한 응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도 지적했다.¹⁶⁾

Harlan 판사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헌법적인 보호특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공적 인물이 관계된 명

예훼손소송을 극히 중요한 헌법적인 구제장치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주(state) 명예훼손법에 완전히 맡겨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New York Times*사건에서 설정한 엄격한 연방헌법상의 요건만이 상호 충돌하는 이익(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을 적절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공직자가 아닌 ‘공적 인물’은 책임 있는 언론발행인이 통상적으로 준수하는 사실조사과 취재의 관행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이탈할 정도의 매우 부당한 행위를 증명하면 그의 명예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분명한 허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¹⁷⁾

이른바 Harlan 대법원판사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¹⁸⁾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소송기준은¹⁹⁾ 지금까지 한 번도 미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바 없다. 사실 Warren 대법원장의 동의 의견(‘현실적 악의’가 ‘공적 인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이 수차례에 걸쳐서 미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판사들의 확립된 명예훼손기준으로 인정되었다.²⁰⁾가장 두드러진 예가 1974년의 *Gertz v. Robert Welch, Inc.*²¹⁾ 판결이다.

명예훼손법상 ‘공적 인물’ 이론을 처음으로 상세히 다룬 *Gertz*사건은 흥미롭게도 공적 인물이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미 연방대법원의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은 비록

14) *Id.* at 163-64 (Warren, C.J., concurring).

15) *Butts*는 문제된 기사가 나올 때 조지아대학교의 체육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주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인 조지아체육 위원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Walker는 AP기사가 배포되었을 때 예비역 미육군 장성으로서 수년동안에 걸쳐 정치활동에 관여했고 인종통합에 따른 미연방정부의 정책에 강한 반대입장을 폈다.

16) *Butts*, 388 U.S. at 155.

17) *Id.*

18) ‘gross negligence’의 번역은 이상도, 『법률영한사전』 253 (개정초판, 1998)에 따름.

19) Harry Kalven, Jr., *A Worthy Tradition: Freedom of Expression in America* 72 (Jamie Kalven ed., 1988).

20) See, e.g., *Bose Corp. v. Consumers Union of United States, Inc.*, 486 U.S. 485, 490 (198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36 n. 7 (1974).

21) 418 U.S. 323 (1974).

후에 *Gertz*사건의 '공적 인물'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이 "일반적인 정의"로 규정지어졌다 해도²²⁾ 그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어떻게 '공적 인물'의 특징을 구별짓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공적 인물'에 대한 *Gertz*판결의 표현들은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 한 개인이 공적 인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밝힌 것이다."²³⁾ 라고 연방대법원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²³⁾ 결국 공적 인물이 되는 과정이 공적 인물의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본다면 미국 명예훼손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공적 인물'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²⁴⁾

II. 공적 인물의 법적인 기준

*Gertz*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적 인물과 공적 인물을 구별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공적 인물은 공직자와 같이 사적 인물에 비해서 대개 효과적인 의사전달수단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하여 허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²⁵⁾ 둘째, 공적 인물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제 문제들에 특별히 현저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음으로써

공적인 인물의 지위를 갖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한 공적인 논쟁의 한 가운데에 뛰어들어서 그 논쟁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의 경우이다.²⁶⁾ 한편 연방대법원은 비자발적으로 공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비자발적인 공적 인물이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이라고 선언했다.²⁷⁾

연방대법원은 공적 인물을 다시 두 가지로 세분했다. 즉 '일반적인 공적 인물'과 '제한적인 공적 인물'이다. '일반적인 공적 인물'이 되려면 모든 목적과 상황에서 그의 명성이나 악명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의 경우라 할 것이다.²⁸⁾ '일반적인 공적 인물'에 속하는 사람들은 흔히 않으며 지극히 유명한 사회저명인사나 정치·경제의 활동가가 이 그룹에 속한다.

한 연방대법원판사는 '일반적인 공적 인물'의 정의를 "그의 이름을 관계된 사람들의 다수가 즉각 알 수 있으며 그의 활동을 그 집단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이러한 사실 등으로 그의 의견이나 행위가 집단의 사람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고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개념지었다.²⁹⁾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공적 인물'은 실제로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반드시 노력할 필요는 없다. 단지 "공적 인물의 신분은 그 사

22) See *Hutchinson v. Proxmire*, 443 U.S. 111, 134 (1979) ; *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453 (1976).

23) *Wolston v. Reader's Digest Ass'n, Inc.*, 443 U.S. 157, 164 (1979).

24) *Harris v. Tornczak*, 8 Media L. Rep. (BNA) 2145, 2152, 2153 (E.D. Cal. 1982). 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문이 *Gertz*사건을 "가장 주의깊게" 읽고 *Gertz*사건의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은 정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Robert D. Sack, 1 *Sack on Defamation : Libel, Slander, and Related Problems*, §5.3.1, at 5-15 n.123 (3d ed. 1999).

25) *Gertz*, 418 U.S. at 344.

26) *Id.*, at 345.

27) *Id.*

28) *Id.*

29) *Harris*, 8 Media L. Rep. (BNA) at 2155.

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면 족한 것이다.”³⁰⁾

‘일반적인 공적 인물’에 비해서 ‘제한적 공적 인물’은 훨씬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 특별한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을 하여 제한된 범위의 문제에서 공인이 되는 경우로 공공의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³¹⁾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자면, 제한적인 공적 인물은 “자발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로 특정의 논쟁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의도된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식되며 그 분쟁의 해결이 직접적인 참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타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공적 인물이 되려면 문제된 명예훼손 언사는 그 분쟁과 합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³²⁾

연방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미국법원들은 나름대로 복잡다기한 공적 인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연방대법원 역시 *Gertz* 판결의 일반적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지 않았다. *Gertz* 사건 후 3개의 연방대법원의 명예훼손판결을 보면 사건에 따른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Time, Inc. v. Firestone*³³⁾에서 부유한 기업가의 유명한 전처인 Mrs. Firestone을 공적 인물

이 아니라고 판시했다.³⁴⁾ 일반에 흥미거리가 되는 것이라면 ‘공적인 분쟁’에 해당된다. 언론사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소송의 초점이 된 *Time*지 기사 내용 즉, Mrs. Firestone의 이혼 소송은 *Gertz* 사건에서 염두에 둔 그런 종류의 분쟁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Mrs. Firestone의 이혼소송 문제는 그녀가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자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³⁵⁾

*Wolston v.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³⁶⁾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소련의 간첩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배심원 출석을 않아 모독 유죄를 인정받은 Wolston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유는 그가 간첩수사에 단지 미미한 역할을 했고 또한 그의 대배심원 출석 거부와 그에 따른 유죄인정은 자발적인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고자한 목적의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Wolston이 미국에 KGB가 암약한다는 논쟁에 끌어들여졌으며 이것은 “자발적으로 뛰어들었거나 공공의 관심의 최일선에 자신을 내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³⁷⁾ 또한 연방대법원은 *Hutchinson v. Proxmire*³⁸⁾에서 연방정부의 연구기금으로 연구를 해서 명예훼손의 표적이 된 Hutchinson을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적인 분쟁’은 공공의 논쟁(debate)의 주제가 되는 것에 국한되는데 Hutchinson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30) *Id.* 8 Media L. Rep. (BNA) at 2155 n. 28.

31) *Gertz*, 418 U.S. at 345.

32) *Harris*, 8 Media L. Rep. (BNA) at 2157.

33) 424 U.S. 148 (1976).

34) *Id.* at 453-55.

35) *Id.* at 454.

36) 443 U.S. 157 (1979).

37) *Id.* at 166.

38) 443 U.S. 111 (1979).

위해서 일반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³⁹⁾ 그리고 Hutchinson에 대한 언론의 관심어린 보도가 문제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후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의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원고를 공적인 인물로 만들어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실시했다.⁴⁰⁾

Gertz사건 후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공적 인물’의 개념, 특히 ‘제한적’ 공적 인물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공적’인 의미보다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다.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공적 인물’을 ‘사적 인물’과 구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로 하급법원의 과제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개념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결과적으로 하급법원들이 나름대로 ‘공적 인물’에 대한 Gertz판결을 분석, 해석, 적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아니 혼란스러운 정도의 기준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미 언론법변호사 Bruce W. Sanford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여된 사실을 최대한 잘 포장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는 광범위한 법칙은 하나의 축복이다. 그러나 정보에 근거한 분석보다는 통상적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 사전기사심의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훨씬 더 유용치 않다. 수정헌법 제1조는 가능하면 최대한 예측가능하고 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의 불확실성은 가장 노골적인 사전검열 만큼이나 효과

적으로 헌법상 보호를 받는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⁴¹⁾

Ⅲ. 공적 인물과 법원의 판례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로서의 ‘공적 인물’이란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좁다. 1993년 전문 직업인들이 관여된 명예훼손소송사건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법원은 대개 공적 인물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⁴²⁾ 또한 공적 인물을 구별하는 과정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방법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³⁾

Gertz판결 후 미 연방대법원의 공적 인물에 대한 사건별 접근에 비해서, 하급법원들의 판례는 공적 인물의 구별에 필요한 제 요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판결이 1980년에 나온 미 연방고등법원(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의 *Waldbaum v. Fairchild Publications, Inc.*⁴⁴⁾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3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제한적 목적의 공인’을 파악했다. 즉 공인이 되려면 첫째, 구체적인 공공의 논쟁 해결에 큰 영향을 주려고 기도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대될 수 있는 경우이며 둘째, 그 논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파급을 미치고, 이를 예견할

39) *Id.* at 135. 대법원은 공공기금의 지출 그 자체가 “특정한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40) *Id.*

41) Sanford, *supra* note 11, §7.4, at 314 (emphasis in original) (citation omitted).

42) Harry W. Stonecipher & Don Sneed, “A Survey of the Professional Person as Libel Plaintiff : Reexamination of the Public Figure Doctrine”, 46 *Arkansas Law Review* 303, 328 (1993).

43) *Id.* at 329.

44) 627 F.2d 1287 (D.C. Cir.), *cert. denied*, 449 U.S. 898 (1980).

수 있으며 셋째,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은 관계된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 근거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⁴⁵⁾

이 *Waldbaum*판결의 핵심은 공적 인물과 공적 분쟁의 관련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적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이슈를 전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연방고등법원은 공적인 분쟁이 존재하는가를 우선 규명해야 하며, 공적인 분쟁은 일반 사람들에게 단순한 흥미거리로서가 아니라 일반대중이나 일부의 대중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한 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사적인 이해다툼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⁴⁶⁾ 이 공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원고의 역할은 궁극적인 해결에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현저한 활동을 했는가에 좌우됐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의 행위, 언론보도의 정도와 그의 행위나 발표, 성명들에 대한 일반의 반응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⁴⁷⁾

그리고 공적 인물은 공공의 분쟁에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된 명예훼손적 표현이 그 분쟁에 대한 원고의 참여와 관련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연방고등법원은 밝혔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에는 일반 대중이 그 분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그 인물의 능력이나 교육, 경력 그리고 분쟁에 대한 참여동기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⁴⁸⁾

*Waldbaum*사건과 비슷하게 제2순회구역 연방고등법원은 *Lerman v. Flynt Distributing Co.*⁴⁹⁾에서 4가지 요건의 공인과 사인의 구별 방법을 제안했다. “(명예훼손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제한적인 공적 인물임을 증명하려면) 다음과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1)소송의 사유가 된 사건 이전에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원고가 자기의 견해에 일반인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다. (2)원고가 소송의 사유와 관련된 공적인 분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 (3)원고가 공적인 분쟁에 탁월한 위치를 점했다. (4)원고가 언론매체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졌다.”⁵⁰⁾

*Lerman*판결에서는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접근이 어느 정도 인지가 특히 공적 인물의 신분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Gertz*사건에서 확인되었고 미국 하급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사인과 공적 인물 결정에 효과적인 반박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느냐를 강조”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⁵¹⁾

물론 특기해야 할 것은 언론에 대한 접근권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연방대법원이나 하급법원의 판결은 미디어 접근보다는 공적 인물이 공적인 논쟁에 얼마큼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를 더욱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접근”이라는 개념이 대개 언론기관의 보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예훼손적인 사안이 광범위하게 보도가 되었고

45) *Id.* at 1292.

46) *Id.* at 1296.

47) *Id.* at 1298.

48) *Id.*

49) 745 F.2d 123 (2d Cir 1984), cert. denied, 471 U.S. 1054 (1985)

50) *Id.* at 136-37.

51) Smola, *supra* note 3, §2:37, at 2-55 (citations omitted).

다른 언론사로 하여금 더욱 보도를 하도록 자극시켰거나 혹은 명예훼손소송원고가 실제로 매우 관련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기사에 반박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언론 접근'을 갖고 있다고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하겠다.⁵²⁾ 공적 인물을 구별하는 다른 요인 중에 원고가 명예훼손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공공의 분쟁이 명예훼손 이전에 이미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다.⁵³⁾ 이러한 공적 인물의 기준을 실제 적용한 명예훼손판결인 *Faltas v. State Newspaper*⁵⁴⁾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공적 인물'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체를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원고 Marie-Therese Assa'ad Faltas는 문체의 보도 당시 이집트태생의 의사로 South Carolina대학교 의과대학의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 1993년 초 원고는 South Carolina 라디오 교육방송국의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피고의 신문사에 동성애 행위를 분석한 원고를 기고하겠다고 연락했다. 원고의 의견칼럼은 1993년 5월 12일 "성적 정상성, 과거의 연구에서 틀리게 해석된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신문의 사설면에 실렸다. 원고는 킨제이 보고서 등을 비판하면서 의사와 생물통계학자로서 교육을 받은 South Carolina의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만이 인간의 성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IDS로 사망한 동성애

남자들의 두뇌연구의 오류 등을 지적했다.⁵⁵⁾

한편 원고는 칼럼이 신문에 게재된 다음날 South Carolina 교육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신문독자들은 원고의 기사내용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일부가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한 편지는 원고의 칼럼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Marie Faltas)가 동성애 남자들이 에스트로젠을 섭취하는 것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어떠한 통계수치도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Faltas는 의사라는 신분을 거짓을 진실인 양 제시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⁵⁶⁾ 두 번째 편지는 "Dr. Faltas의 의견은 과학자의 논리라기 보다는 중동의 성직자의 장광설 같다."고 했고, 다른 편지들도 원고의 주장이 전혀 의학적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농담이나 거짓이며 이러한 조작적인 주장은 신문의 사설면에 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⁵⁷⁾

이러한 비난 편지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반박 편지를 즉시 게재해 줄 것을 피고 신문사에 서면으로 요구했다. 피고 신문사는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갖춘다면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개월 후에 원고는 한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이후 다시 출연해 달라는 섭외를 받았다.⁵⁸⁾ 의과대학의 레지던트에서 해고당한 원고는 해고의 부당함과 관련 "동성애

52) Sanford, *supra* note 11, §7.4.1, at 316 (citation omitted).

53) *Fitzgerald v. Penthouse Intern., Ltd.*, 691 F.2d 666, 668 (4th Cir. 1982), cert. denied, 460 U.S. 1024 (1983).

54) 24 Media L. Rep. (BNA) 2057 (D.S.C. 1996).

55) *Id.* at 2059.

56) *Id.* at 2060 (emphasis in original).

57) *Id.* (emphasis omitted).

58) *Id.* at 2060-61.

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하고 글을 기고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⁵⁹⁾

South Carolina주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예훼손소송사건의 출발점은 원고가 제한적 공적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다고 언명했다. 법원은 만일 원고가 관련 사안에 관계된 시점에서 공적 인물이면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통해서”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원고에 대한 허위적인 명예훼손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4순회 연방고등법원은 공적 인물 파악에 있어 (1)효과적인 언론채널 접근의 유무, (2)공공의 분쟁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3)분쟁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4)이미 전에 분쟁이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5)명예훼손 당시 이미 원고가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 등 5개 기준을 적용했다.⁶⁰⁾ 연방지방법원은 먼저 원고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편지들이 게재되기 전 그리고 후에도 원고는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바로 문제의 독자편지를 실은 신문에 의견칼럼을 기고했다. 더욱이 원고는 동 신문으로부터 명예훼손적인 편지에 대한 응답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⁶¹⁾

원고가 공공적인 분쟁에서 현저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는가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분명 애초의 의견기사로 인해 반박독자편지가 게재된 상황은 바로 원고가 스스로 취한

행동의 결과였다. 또한 여러 라디오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공적인 토론에 뛰어 들었다.”⁶²⁾라고 언급했다.

그 분쟁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의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글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고 지방법원은 판결하면서 “사회는 마치 흡연행위를 다루는 것처럼 동성에 행위도 다룰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원고의 분쟁 개입 행위는 이미 명예훼손적인 편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소송의 사유가 된 그 독자편지들은 원고가 기고한 글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며 “널리 알려진 격렬한 논쟁의 한 분야에 대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했다.⁶³⁾ 마지막으로 연방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당시 원고의 공적 인물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원고는 강연 등의 초청을 여전히 받고 있고 또한 문제의 편지들은 원고의 기사가 나온 바로 후에 나온 것임을 유념했다.

미국의 명예훼손사건에서 공적 인물의 신분을 결정하는데 시간과 공간(지역)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과거에 공적 인물이었던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와 비록 전국적으로는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해도 관련된 국한된 지역에서 공적 인물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연방대법원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서 공적 인물의 신분이 제거될 수 있는지에

59) *Id.* at 2061.

60) *Id.* at 2062 (quoting *Fitzgerald v. Penthouse Intern. Ltd.*, 691 F.2d 666, 668 (4th Cir. 1982)), cert. denied, 460 U.S. 1024 (1983).

61) *Id.* at 2063.

62) *Id.*

63) *Id.* at 2064.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몇몇 대법원판사들이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다. William J. Brennan 판사는 *Rosenblatt v. Baer*⁶⁴⁾ 사건에서 “한 개인이 과거의 권위있는 직책에서 지극히 유리된 경우 그의 책임 수행에 대한 비판 등이 *New York Times*(현실적 악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일반적인 이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⁶⁵⁾ 또한 Harry A. Blackmun 판사도 *Wolston* 사건에서 공적 인물이 감수해야 하는 일반의 감시와 언론기관에 대한 접근권의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시간의 경과를 공적 인물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개인이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관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쟁적인 사건과 명예훼손적인 표현 사이에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명예훼손을 당한 측이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으며, 추정적으로 사적인 사람이 각오하고 있는 ‘일반의 감시 위협’의 정도도 퇴색할 수 있다.”고 Blackmun 판사는 피력했다.⁶⁶⁾

일반적으로 Brennan 판사와 Blackmun 판사 등이 주장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적 인물의 신분변화는 대체로 실제 판례에 거의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공적 인물인 원고가 시간의 흐름을 이유로 ‘현실적 악의’ 책임을 피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제6순회

연방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일단 특별한 분쟁에 관련되어 공적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쟁에 대한 비평 등 이와 관련하여 공적 인물로 계속 남는다.”⁶⁷⁾

다시 말하면 사적 인물로의 회귀를 원한다면 과거의 공적 인물의 신분이 “국민의 영원한 역사의식의 일부가 된 사건이나 분쟁과 연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⁸⁾ 이 점에서 볼 때 1996년의 Atlanta 시의 올림픽촌 폭발물사건 관련 혐의자로 허위 지목 받았던 Richard Jewell은 앞으로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공적 인물로 남은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기사가 Atlanta 폭발사건에 관한 한 특히 그러하다.⁶⁹⁾

지역에 따른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을 유발한 기사나 방송이 전파된 지역의 범위가 지역, 전국, 국제적인가에 따른다. 이것은 명예훼손소송 원고의 신분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공적 인물의 ‘지역’ 요건은 사실 국제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의미의 “전반적인”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부류의 공적 인물이 드물고 또한 국가적인 국제적인 논쟁과 이슈에 비해서 흔히 인근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가 있다. Smolla 교수는 명쾌하게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 주민들이나 직장 그리고 매일 그들이 활

64) 383 U.S. 75 (1966).

65) *Id.* at 87 n. 14.

66) *Wolston*, 443 U.S. at 171 (Blackmun, J., concurring).

67) *Street v. National Broad. Co.*, 645 F.2d 1227, 1235 (6th Cir.), cert. granted, 454 U.S. 815, cert. denied, 454 U.S. 1095 (1981)

68) Smolla, *supra* note 3, §2:49, at 2-69.

69) Richard Jewell은 1999년 10월 5일의 명예훼손판결에서 “자발적인” 공적 인물로 판결을 받았다. 폭발사건 후에 수차례에 걸친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신뢰성과 새로운 각광을 이용해서 일반의 불안과 걱정을 덜으려 했으며 관련한 공공의 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See *Jewell v. Cox Enterprises, Inc.*, 27 Media L. Rep. (BNA) 2370 (Ga. State Ct. Fulton County 1999).

동하는 단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Washington Post지나 Harper's잡지 혹은 'CBS Evening News' 프로그램의 기사보다 중요하다. 요약컨대 전국적인 정보시장과 지역적인 정보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역 범주의 정보시장이 모든 면에서 전국적인 맥락의 기사만큼이나 중요하다."⁷⁰⁾

지역에 중심을 둔 국부적 공적 인물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로는 몬타나주의 대법원이 내린 *Williams v. Pasma*⁷¹⁾라고 하겠다. 이 사건의 원고는 미 연방상원의원 후보자였고 몬타나주의 공화당 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책을 저술한 경험이 있으며 Forbes잡지와 Wall Street Journal지에 실린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경제회의 등에 강연을 했던 경험도 있다.⁷²⁾ 몬타나주 대법원은 원고의 '공적 인물'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전반적인 공적 인물이 되려면 전국적인 유명인이어야 한다고 몇몇 법원들은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연방대법원이나 주대법원 어디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분명하게 내린 판결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라는 용어는 오직 관계된 그 지역에 국한된 지명도를 요구하는 것 같다. 원고는 지역사회(몬타나주)에서 일반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제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관여하여 법적으로 공적 인물임을 명백한 증거로써 보여주고 있다."⁷³⁾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적 인물을 파악하는 기준과 요건들이 지난 30년에 걸쳐서 제시되었고 수정, 적용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예측가능한 과학일 수는 없다.

한 명예훼손법 전문가는 이렇게 주의어린 충고를 주고 있다. "제한적인 공적 인물의 자격이 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잘못이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논쟁의 일선에 뛰어들어서 그 논쟁에 관련한 *New York Times*기준(현실적 악의)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⁷⁴⁾ 한편 미국 법원이 내린 명예훼손판결들의 공적 인물의 개념이나 기준 적용이 자주 불확실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적으로 '공적 인물'로 원고를 봄으로써 더욱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론적으로 미국 법원판결에 나타난 공적 인물을 개괄적으로 구별한다면 우선 공적 선거후보자는 언제나 공적 인물이다. 특히 주요한 국가적인 공적 예컨대 대통령, 부통령 등의 후보자는 100% 전반적 공적 인물이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도 마찬가지로 공적 인물로 보고 있다. 또한 종교지도자들이나 사회운동가(Jerry Falwell목사와 Ralph Nader 같은)들을 공적 인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사회적인 논쟁과 영향력 그리고 미디어의 끊임없는 접근 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회사의 중역들이나 기업의 소유자, 사업가들이 공적 인물이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물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라면 분명 공적 인물, 그것도 전반적인 공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업상 단지 이름이 있다고 해서, 또는 유명한 영향력 있는 회사의 간부라고 해서 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숫자를

70) Smolla, *supra* note 3, §2:51, at 2-72 to 2-73.

71) 9 Media L. Rep. (BNA) 1004 (Mont. 1982).

72) *Id.* at 1007.

73) *Id.* (emphasis added) (citation omitted).

74) Smolla, *supra* note 3, §2:56, at 2-78.

볼 때 사적 인물로 결정된 회사의 중역이나 기업체의 지도급인사들이 많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단순히 사업상의 거래 등에 관여하는 것 그 자체로는 공적 인물의 핵심요인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전문 직업인들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나 의사가 단지 직업상 하는 일 그것만으로는 공적 인물의 요건이 충족될 수 없음을 *Gertz* 등의 사건에서 볼 수 있다.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작가, 주요 언론사의 정기칼럼니스트, 영화나 TV 비평가 등도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언론사의 유명 앵커나 기자도 마찬가지다.

유명세(아니 악명)에 관련한 공적 인물론은 천인공로할 죄를 저지른 살인마나 암살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른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libel-proof)” 직업범죄자들은 대개 공적 인물로서 ‘현실적 악의’ 증명을 저야 한다.⁷⁵⁾

미국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법원리는 미국 법상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Bryant v. Associated Press*⁷⁶⁾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St. Kitts와 Nevis 섬의 영국으로부터 독립에 반대하는 운동의 주요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논쟁의 소용돌이에 자발적으로 개입했음을 논하면서 원고의 지역에 근거한 공인개념을 일축했다. 원고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St. Kitts에서는 공적 인물이라고 해도 자

신에 대한 명예훼손기사가 보도된 미국령 Virgin Islands에서는 결코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법상 특정 지역에서는 공인이나 다른 곳에서는 공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특이하고 흥미롭다. 그러나 이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 그 주장은 카리브지역의 상호긴밀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카리브섬들 사이의 상호교류는 기록에 잘 나와 있다. 인근 섬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은 이주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⁷⁷⁾

공적 인물 기준의 국제적인 확장 적용은 어느 면에서 *Butts* 판결에서 Warren 연방대법원장이 언급한 20세기 들어 급속히 세계화하는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공·사인간의 구별은 어느 선에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에 근거한 공인의 개념을 단지 독특하고 재미난 것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Bryant* 법원의 태도는 명예훼손법의 현실적 적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면 과거의 지침적인 판결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목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이른바 공인이라는 외국인의 활동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분쟁에 국한된 것이라면 공적 인물의 합리성은 의문시된다.

75) For a discussion of the “libel-proof” doctrine in American law, see Kyu Ho Youm, “The ‘Libel-Proof’ Doctrine as a Libel Defence”, 12 *Newspaper Research Journal* 46 (Winter 1991).

76) 11 Media L. Rep. (BNA) 1090 (D.V.I. 1984).

77) *Id.* at 1092. For a discussion of other U.S. court decisions, in which foreigners were held or presumed to be “public figures” in American libel law, see Kyu Ho Youm, “The Interaction Between American and Foreign Libel Law : U.S. Courts Refuse to Enforce English Libel Judgments”, 49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31 (2000) : “American Libel Law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Is It Privileged to Report on Foreign Governments?” (paper accept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in Acapulco, Mexico, on June 1-5, 2000).

자연인과 달리 단체나 회사 등에 대한 공적 인물의 자격이 명예훼손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나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제반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발적인 논쟁의 참여와 그 논쟁의 해결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디어의 접근 기회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며, 이 점에서 예외 없이 언론사는 한결 같이 명예훼손상 공인취급을 받는다. 이는 공적 인물로 보호를 받는 언론에 대한 형평의 원리에서 의당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나 보다 직접적인 것은 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과 해결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와 달리 일반 회사의 경우 공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대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나 상장된 주식 회사의 경우 공인의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등을 받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한편 자발적인 토론의 장에 뛰어드는 논쟁적인 광고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공인의 책임부담이 따르는 것은 일반적이다.

언론사와 관련한 회사의 명예훼손소송 사건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전제로 원고회사에 차별적인 '현실적 악의'를 부과하는 예도 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1985년 미디어를 상대로 개인 회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미디어가 미치는 지역에서 일반대중이 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도가 그 소송의 근거가 됐다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일반인에게 기업의 귀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에게 기업에 대한 탐사취재를

자극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⁷⁸⁾

IV. 공적 인물과 '현실적 악의': 문제점과 개선책

'현실적 악의'와 공적 인물의 관계를 냉정히 분석할 때, '현실적 악의'의 공적 인물로의 확대 적용으로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균형이 원래의 의도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주 제기된다. 이 문제는 결국 수정헌법 제1조에 입각한 정치철학의 이념에서부터 공적 인물의 정의와 한계 등에 대한 끊임없는 쟁점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이유와 동기가 어떠한 현재의 공적 인물과 관련한 '현실적 악의'론에 대해서 현상 유지의 고수론보다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 악의' 그 자체에 대한 이의에서 왜 공적 인물이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공적 인물 요건의 비현실성과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법기준으로서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난한다.

반면에 공인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공인과 '현실적 악의'를 요약한다면 미국 명예훼손법의 문제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보기라고 할 것이다. 왜 그러할까?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러한 문제들을 이 장에서 심도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론자인 Hugo

78) *Jadwin v. Minneapolis Star*, 11 Media L. Rep. (BNA) 1905, 1913-14 (Minn. 1985). For a discussion of *Jadwin*, see Douglas E. Lee, Note, "Public Interest, Public Figures, and the Corporate Defamation Plaintiff: *Jadwin v. Minneapolis Star & Tribune*", 81 *Northwestern Law Review* 318 (1987).

Black과 William O. Douglas대법원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최소한 미 국민과 언론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공직자를 비판하고 공적인 문제를 처벌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고 설파했다.⁷⁹⁾ 이 때문에 ‘현실적 악의’는 결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으며, 감지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증명하기도 혹은 반증하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⁸⁰⁾ Sullivan판결 30년 후 1995년 뉴욕주 일심법원판사 Charles E. Ramos는 Black 대법원판사는 ‘현실적 악의’ 원칙이 국민의 비판의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물거품같은 것이라는 예견에 동의하면서, Sullivan판결의 ‘현실적 악의’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⁸¹⁾ Ramos판사는 ‘현실적 악의’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치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그 기준의 적용결과, 명예훼손법이 수렁속에 빠졌다고 규정하고 이렇게 실시했다. “현실적 악의 기준에 대한 혼란으로 사적인 시민과 공직자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인사가 Times기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의 주요 초점이 되었다. 그 와중에서 대법원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인 연방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⁸²⁾ Ramos판사

의 절대적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단호했다. “언론의 자유는 명예훼손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명예훼손적이고 악의적인 언론의 보도라고 해도 특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⁸³⁾

Ramos판사의 공인과 관련한 ‘현실적 악의’ 요건의 위헌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결코 최근의 일은 아니다. 예일법대 교수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향력 있는 많은 저서를 냈던 Thomas I. Emerson은 Sullivan사건에서 시작된 미 연방대법원의 명예훼손법 판결들은 여전히 헌법적인 기본이념에서 볼 때 허점을 갖고 있다고 1970년에 지적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다른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전제를 연방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⁸⁴⁾

둘째, ‘의도적인 허위’는 “사상을 표현하는데 전혀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Sullivan판결은 과거의 의심스러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과 받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2등급 이론으로의 복귀라고 했다.⁸⁵⁾ “(Sullivan판결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허위적인 언사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함을 주장하고 다시 생각케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체

79) *Sullivan*, 376 U.S. at 296 (Black, J. concurring) (joined by Douglas, J.). See also *id.* at 297-305 (Goldberg, J., concurring in result).

80) *Id.* at 293.

81) *Doe v. Daily News, L.P.*, 632 N.Y.S.2d 750, 755 (Sup. ct, 1995) (Ramos, J.).

82) *Id.* at 755-56.

83) *Id.*

84) Thomas I.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529 (1970).

85) 수정헌법 제1조의 “2단계 이론(two-tier theory)”에 의하면 표현 중에서 “잘 규정되고 협소하게 제한되는 범주는 사상의 표현에 공헌도 하지 않고 진리탐구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 없으므로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들 보호받지 않는 표현가운데는 외설, 음란, 불경적인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싸움질적인 말 등이 포함된다. See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71-72 (1942).”

제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Emerson교수는 기술했다.⁸⁶⁾ 그는 덧붙여서 “의사표현에 있어서 무엇이 사회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 비판자(citizen-critic)를 위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또 다른 면”을 Sullivan판결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⁸⁷⁾

마지막으로 Emerson교수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연방대법원의 나름대로의 규정은 “그다지 마음내키지 않는” 소산이라고 특징지우면서, 대법원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반 규칙을 제시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통박했다.⁸⁸⁾ Emerson교수의 Sullivan판결에 대한 비판은 국민이 통치자라는 민주정치에 이념구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정부와 공직자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기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의 논조는 Sullivan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Alexander Meiklejohn의 공공에 관한 정치적인 표현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이론과 일맥상통한다.⁸⁹⁾ 물론 Emerson교수는 Meiklejohn의 “공적인 표현”에 대한 정의의 한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⁹⁰⁾ 어쨌든 ‘현실적 악의’의 공적 인물에 대한 적용은 Meiklejohn의 포괄적인 수정헌법 제1조이론을 연방대법원이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ullivan사건 직후에 이 사건의 장래를 통찰

력있게 분석하면서 시카고대학교 법대교수 Harry Kalven은 ‘현실적 악의’ 기준이 공직자에서 정부정책 그리고 일반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로 점차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⁹¹⁾ 한편 논쟁의 초점은 ‘현실적 악의’ 적용을 헌법 이론상 표현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폐기하자는 Ramos판사의 입장보다는 절대다수가 ‘현실적 악의’를 계속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공직자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 점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원고의 지위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명예훼손소송에 ‘자동적으로’ 적용하자는 Ronald Dworkin교수의 제안은 비록 그 원칙의 복잡한 세척에 따른 어려움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 해도⁹²⁾ 소수의 견해라고 하겠다.

분명 *Butts*사건에서 공직자로부터 공적 인물로 ‘현실적 악의’ 기준을 확대한 것은 정부 비판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적 의미를 깊이 생각지 아니하여 그 결과로 공직자와 공적 인물의 상식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성급한 아니 ‘놀라운’ 것이었다고 하겠다. *Butts*사건에서 나타난 Warren 연방대법원장의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가장 체계적으로 비판한 당시 미시간법대교수 Frederick Schauer는 이렇게 기고했다. “(Warren)대법원장이 묘사한 대표적인 (공적 인물의) 예가 ‘공적인물’이란 용어로 일컬어

86) Emerson, *supra* note 84, at 530.

87) *Id.*

88) *Id.*

89) See Alexander Meiklejohn, “The First Amendment Is an Absolute”, 1961 *Supreme Court Review* 259.

90) Emerson, *supra* note 84, at 541.

91) Harry Kalven, Jr., “The New York Times Case : A Note on The Central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1964 *Supreme Court Review* 191, 221.

92) Ronald Dworkin, *Freedom’s Law : The Moral Readings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209-211 (1996).

지는 분야 *New York Times* 원칙의 특별한 책임을 부과받은 분야-를 점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정확히 특징짓고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같은 예에 속하는 사람은 공적 인물이라는 부류에 단지 일부 아니 아마도 비교적 소수에 속하는 부분일 뿐이다. 공적 인물이라는 집단에는 공공정책문제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거나 혹은 존재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⁹³⁾ 바로 그 한 예로 단지 일반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정책문제 등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인사들이 '현실적 악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적 인물'이 되고 있다.⁹⁴⁾ 이는 관련된 공공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유명도에 주안점을 둬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용이하게 하는 맥락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평가했던 Columbia 대학교 Vincent Blasi 법대교수는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를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 정부 공직자에 대한 것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⁹⁵⁾ 그러나 Blasi 교수는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사적 인물과는 구별해서 보다 많은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의 수정헌법 제1조 이론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절대적인 면책이 되며 공적 인물은 '현실적 악의' 책임을 그리고 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과실을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대체안으로는 *Butts*판결에서 Harlan 대법원판사가 주장한 것처럼 '현실적 악의'를 공직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공적 인물에게 그리고 사인에게는 단순 과실을 부과할 것을 그는 제안했다.⁹⁶⁾

민주적인 자치를 위한 토론 정치의 구현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언론표현의 이론을 제시한 시카고법대의 Cass R. Sunstein교수는 헌법적인 의미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호와 별개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특별한 문제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에 의하면 유명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정치적인 것이 아니면 단순한 과실이나 혹은 *Sullivan*사건 이전의 "엄격한 책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⁹⁷⁾ Sunstein교수의 "정치적 표현"에 중점을 둔 특별보호는 개인의 지명도가 관건이 아니라 그 표현이 특정의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심의과정에 기여"하는 성격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Meiklejohn의 불명확한 정치적 표현의 정의를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규정지으려는 그는 "표현이 정치적인 것으로 처리되려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의 심의에 기여할 것으로 의도되었고 또 동시에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일 때다."라고 제한하고 있다.⁹⁸⁾

93) Frederick Schauer, "Public Figures", 25 *William and Mary Law Review* 905, 917 (1984).

94) Anthony Lewis는 이렇게 반분하고 있다. "영화계 스타들은 가장 유명한 미국인들에 속하고 그래서 법상 공적 인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내게 그들은 공공적인 정책 논쟁의 초점에 관여하는 경우는 없다. 왜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부정확한 가십거리가 특히 고도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가?" Lewis, *supra* note 8, at. 197.

95) Vincent Blasi, "The Checking Value in First Amendment Theory", 1977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521, 578-82.

96) *Id.* at 582 (citations omitted).

97) Sunstein, *supra* note 9, at 161.

98) *Id.* at 130 (emphasis in original).

Sunstein교수의 '현실적 악의' 상의 공적 인물의 수정제안은 공적 인물이 유명인이 됨으로써 명예훼손의 위협성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과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이 높다는 연방대법원 주장의 취약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진실이 거짓을 잡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상기했다.⁹⁹⁾

Sunstein교수와는 대조적으로 미네소타대학교의 Donald M. Gillmor 언론법교수는 그의 명예훼손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안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공직자와 "전반적인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와 유명인사인 전반적 공적 인물은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다."고 했다.¹⁰⁰⁾ 한편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대한 법적 소송의 기회는 여전히 현재대로 인정하고 있다.

Gillmor교수의 개혁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공인에 의한 수많은 소송의 문제를 최대한 극소화하려는 현재의 명예훼손법의 고육지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예훼손법률의 개정애 아직까지 이렇다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이 '현실적 악의' 원칙에 놀라울 정도의 충실함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Gillmor 등이 제안한 변화를 수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V. 요약 및 결론

'현실적 악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소송은 한마디로 혼돈의 늪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우선 그 출발에서부터 헌법적인 철학과 이념에 대한 깊은 사고와 분석 없이 '현실적 악의'를 확대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 성급하고 졸속한 Butts판결에서 보여준 연방대법원의 '공적 인물'의 개념이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방향 모색의 부담을 미국 하급법원들에게 안겨 주었다. 더욱이 연방대법원은 공적 인물의 포괄적인 정의를 과감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수차례 판결을 통해서 공적 인물이 왜 사적 인물과 다른가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공적 인물의 범위나 그에 부수되는 여건에 대한 협의적인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적용에도 불구하고 연방하급법원이나 주법원들은 소송사건의 사실에 맞는 공적 인물의 요건들을 다양하게 때로는 너무 창조적이다 싶을 정도로 파악하면서 Gertz 판결의 한계를 읽으려고 노력했다.

몇몇 주요 연방고등법원의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 책임 공식은 높과 같은 상황의 공적 인물에 관한 명예훼손법에 방향타를 제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었다. 예컨대 Walbaum과 Lerman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세분화된 공적 인물의 충족요건은 "제한적 공적 인물"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공공의 분쟁에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 그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것이 공통적인 관건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당할 "위험을 진다 (assumption of risk)"는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 요건의 정당성이 예외 없이 인용된다. 그렇다면 진정 이 정당성은 특히 사상정보의 공개시장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헌법적

99) *Id.* at 160.

100) Donald M. Gillmor, *Power, Publicity, and the Abuse of Libel Law* 165 (1992).

인 공약에 항상 일치할까?

“공적인 토론장에 참여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법상의 자기의 권리를 잃어야 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주장은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깊이 되새겨 볼만한 것이다.¹⁰¹⁾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 원칙이 미국의 언론자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현실적 악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에서 그리고 공적 인물의 개념 분석에서 이미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⁰²⁾ 즉 지나친 공적 인물의 확대에서 오는 과도한 언론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의미의 공적 인물에 대한 불충분한 언론의 자유보호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현실에서 이 문제들을 더욱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인물의 신분에 따른, 다시 말하면 문제된 기사의 성격에 중점을 두지 않는 공인과 사인의 구별원칙의 바탕인 ‘현실적 악의’ 론으로 인해 진지한 탐색 취재 저널리즘과 격조 높은 언론 취재관행과는 거리가 먼, 별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 없는 이른바 피상적인 유명인사 중심의 저널리즘이 전보다 더 활발하게 된 것은 지난 30여 년에 걸친 ‘현실적 악의’의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¹⁰³⁾

공인에 대한 보도가 그들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에 때문에 추정적으로 질적인 저널리즘에 적절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현실적 악의’를 공적 인물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물의 신분에 따라 ‘현실적 악의’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가 등한히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사회에 중요치 않으나 단지 유명한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재 보도의 대상이 되는 뉴스거리들이 드물지 않다. 따라서 공적 인물에 대한 추문적인 기사보도가 보호받을 확률이 사적 인물이 관계된 공공의 관심에 대한 보도보다 법적으로 높은 관계로, 본래 뜻했던 ‘현실적 악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저널리즘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¹⁰⁴⁾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적용과 관련해서 복잡다기한 명예훼손법은 소송에 따른 절차와 비용 등으로 언론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에 수반해서 소위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이 최근 미국 언론의 관례가 되고 있다.¹⁰⁵⁾ 즉 기사나 방송이 나가기 전에 변호사가 사전에 심사하는 방어 저널리즘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비용과 상당한 배상금 지불의 가능성을 막음으로써 언론사를 보호하는데 있다.¹⁰⁶⁾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예방적 관여는 판사들로 하여금 미국언론의 “최후의 편집인” 역할을 하게 한 ‘현실적 악의’의 아

101) Daniel A. Farber, *The First Amendment* 89 (1998).

102) 본 논문의 주 79-100에 관련한 본문 참조

103) William P. Marshall and Susan Gilles, "The Supreme Court, the First Amendment, and Bad Journalism", 1994 *Supreme Court Review* 169, 170 (citations omitted).

104) *Id.* at 181-83.

105) Paul D. Driscoll et al., "Legal Concerns in TV Newsrooms : A National Survey of Local Television News Directors" (1998) (unpublished manuscript, on file with the author).

106) Lois G. Forer, *A Chilling Effect : The Mounting Threat of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Actions to the First Amendment* 31 (1987).

이러니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판사가 만든 (언론법에 의한) 언론 보도의 관행을 편집국에 전달하고 기자들에게 그 관행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한 충고를 하기 때문이다.”¹⁰⁷⁾

공적 인물과 ‘현실적 악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개혁안 등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대체로 보다 명확하고 실제로 유용한 공적 인물의 한계를 ‘현실적 악의’의 근본 취지에 맞게 설정할 것과 공공적인 분쟁의 개념이 지엽적인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주요한 공적인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개혁적인 제안들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현실적 악의’ 하의 공적 인물론을 바꾸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중국적으로 미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들은 현재의 이론과 범주를 점진적으로 조율하면서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공적자 지위 범위가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점에 비추어 불명확한 공적 인물의 개념을 좁혀나가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영역에 국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전 맥락에서 정치 사회적인 공적인 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유명 인사들을 ‘현실적 악의’의 공적 인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면서 Harlan 대법원 판사, Blasi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중대한 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절대론적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현실적 악의’를 폐기함으로써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명예훼손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문명이 덜 발전한 세상이며 명예훼손의 피해자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며 진실과 이성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기 어려운 세상일 것이다. 명예훼손법이 가지는 문명적인 영향은 언론의 자유로부터 요구되는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값진 것이다”고 한 David A. Anderson 교수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명예훼손법의 현실적 가치를 간단 명하게 표현하고 있다.¹⁰⁸⁾ □

필자 약력

-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교(Ph.D),
에일법과대학(M.S.L.)
- 미국신문학회(AEJMC) 및
국제언론학회(ICA) 언론법 회장
- The Interaction Between American and
Foreign Libel Law 외 논문 다수
- 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윌터크롱카이트 언론대학 언론법 주임교수

고 칙

지난 호(1999년 겨울호)

- 83면 각주 5)의 Builders를 Builders로.
- 84면 각주 10)의 Burger, C.J. & Renquist, J.를
Burger, C.J. & Renquist, J.으로,
각주 11)의 John Soloski를 John Sososki로,
23)의 Alan M. Dersnowing를 Alan M. Dershowitz로.
- 89면 각주 43)의 note 40을 note 39로 바로잡습니다.

107) Brian C. Murchison et al., “Sullivan’s Paradox : The Emergence of Judicial Standards of Journalism”, 73 *North Carolina Law Review* 7, 100 (1994). 이 논문이 명예훼손법 특히 Sullivan의 ‘현실적 악의’가 미국 법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언론의 뉴스취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장 심층적으로 다룬 포괄적인 연구라고 하겠다.

108) Anderson, *supra* note 8, at 44.

언론과의 질긴(?) 인연

신 영 철

진 중재위원 ·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법계의 판사는 얼굴 없는 존재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할 뿐 언론에 자기 판결을 설명하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다. 어느 판사에게 재판받든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면 판사는 불개성적 존재여야 한다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설도 있는 모양이나 과분한 탓인지 정확한 이유나 유래는 잘 모르겠다. 직무상 요구되는 대인기피증이랄까.

20년 넘는 법관생활 끝에, 판사가 뭐 힘이라도 있는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부탁해 왔던 친구들은 실망한 나머지 다 떠나고, 의정부사태 후 변호사와의 접촉기회도 거의 없어져 그나마 있던 직분상의 친구들도 모두 소원해져 마누라 정도가 거의 유일한 친구로 남아 판사실은 절간 그 자체이다. 정작 재미있는 것은 이런 환경이 전혀 불편하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단히 길들여진 결과일까?

이런 보통 판사인 필자에게 언론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시작되었다. 93년인가 어느 지방도시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관내 형사합의사건과 형사항소사건 전부를 맡게 되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대권을 잡게 되었다고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일년간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인고의 세월로 회상된다.

첫번째 걸린 문제가 언론사 사장 두 명에 대한 형사합의 재판이었다. 그 지역에는 세 개의 일간 신문사가 있었는데, 문민정부 초기의 이른바 '토착비리척결' 캠페인에 그 중 전통 깊은 C일보 사장이 거액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곧이어 신흥 D일보 사장이 사옥으로 쓸 빌딩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경쟁자를 몰리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필자가 재판을 맡았을 때에는 두 사건 모두 구속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급히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 재판부에서 살인 사건에 사형 선고 한 것도 세 번 있었고, P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이라는 조직 폭력배들끼리의 전쟁도 발생하여 30여 명의 한다하는 건달들을 앞에 놓고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을 과하며 꾸짖은 적도 있지만, 지역언론사 사장들에 대한 재판만큼 곤혹스럽지는 않았다.

피고로서 만난 언론사 사장과
중재위 간담회에서 재회하여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느라 곤혹

우선 검찰은 중앙에 설치된 무슨무슨 수사본부인가 하는 조직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지역 여론까지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한 상태이고, 두 피고인은 언론사 사장이라고 얼마나 으시대고 다녔는지(우스개 표현에 불과하다)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반면 그들이 범한 죄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닌 정도의 사안이었다. C일보 사장의 경우 비자금 조성이 결국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D일보 사장의 경우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점에 대한 정황은 충분하였으나 결정적 증거도 다소 약하고, 피해자라는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모두 당초의 진술을 바꾼 상태였다.

결국은 고심 끝에 한 명은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하고, 다른 한 명은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바로 보석결정을 받았다. 그 후로도 지방지 기자들에 대한 재판은 많이 있었다. 모두 광고 수주가 원만치 않은데서 오는 공갈사건이었고,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였다.

어쨌든 일년 후 필자는 그 지방법원의 수석부장이 되어 지역 언론중재부장이 되었다. 언론과의 좋은 인연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이 역시 악연인가. 웃기는 것은 직무에 충실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언론사 사장들과 중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하고 보니 재판 받은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모임 내내 부단히 노력하였던 기억이 난다.

'95년 서울에 올라와 3년간은 사법연수원의 기획교수 등으로서, 문민정권 후기의 이른바 '사법개혁'의 광풍에서 우리 사법연수제도를 지켜내는 공보관 역할(엄밀히 말해 사법연수원장이 지켜내고 필자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사법연수제도가 직업교육으로서 비용을 적게 들고도 그런대로 제 역할을 다해왔음에도 언론으로부터 부단히 공격당하는 것은, 이런 저런 사건으로 점수를 잃은 법원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것은 참신하지 못하고 미국적인 것이 무조건 좋다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한다.

'98년 초 의정부사태의 와중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고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이 되었다. 필자의 언론과의 인연은 참 끈질긴 셈이다. 고명한 중재위원들과 함께 중재부를 운영하는 것에는, 어찌 보면 스님이 수행 중 산문을 잠시 벗어나 세상 구경을 하는 것



과 같은 청량감과 신선한 문화충격을 받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도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전담 재판부로 사무 분담이 변경되어, 언론관련 가처분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주로 정치인 등이 신청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이었는데, 중재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대부분 화해나 취하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신청한 모 월간지 반포금지 가처분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미 오래 전에 종료된 사건이고 관련 사건도 모두 끝나 객관적 사실만을 가볍게 언급해도 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유럽에서 '제3의 길'의 바람이 불고 우리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후여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세 대결 양상이 엿보이는 등 사상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시험적 소송이 아닌가 보였다. 처음에는 해당 언론사에서 최 교수에게 충분한 반론기회를 주고, 최교수는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를 모두 취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해안을 만들어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듯 보였고, 쌍방이 모두 거부간 빨리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결국 '사실과 진실'의 문제였다.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최교수가 문제의 저서에서 '민족해방전쟁' 등의 금기시 되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문맥 등을 볼 때 이른바 수정주의자들이 쓰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른바 사상검증은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저서에 나오는 용어하나를 말꼬리 불잡듯이 붙잡고 늘어져 성과를 거두려 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로 좀더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신중한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문이었던 것이다.

결정에 대한 해당언론의 보도 태도는 실로 예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사태'였다. 결정문을 집행관을 통하여 즉일 송달하여 입을 막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편에 의한 송달을 택한 것이 잘못일까? 결정문 도착시까지 연 이삼일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재판부를 공격하는데, 예의 그 말꼬리 붙잡기를 적극 활용하여 결정이유 중의 어떤 표현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하는 판사들로 물고 가는 거다. 너무 답답

법원이나 법관을 취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좀 더 품위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한 나머지 주심 판사는, 동료 판사들에게만은 해명을 해야 되겠다면서 결정에 대한 설명문을 만들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그런데 내부 직원만 볼 수 있었고 단 2-3시간 후에 스스로 삭제한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그 언론사에서는 다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여야 하는' 계율을 어겼다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나타나는 사회저명인사라는 사람들의 비판적 언급까지 곁들여 또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제 2년간의 중재부장 역할도 끝나 간다. 대전사건의 후유증으로 현직 판사가 신청한 중재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합의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질긴 인연이랄까. 이제는 좀 언론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 있으려나.

중재부장을 떠나면서 주제넘게 언론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법원이나 법관을 보도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품위 있는 자세(decency)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의정부사태를 다루면서, "'돈' 판사 전원 징계"와 같은 제목을 달거나, 남부지원에서 있었던 것처럼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다고 보도하기 위하여 TV카메라를 들고 불문곡직 판사실에 밀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태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것은 판사가 개인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법관은 그 상징이기 때문이다. 법관에게 권위가 없는 사회는 법과 질서가 담보되지 않는 사회이고 그것은 제아무리 경제적 성과가 대단해도 선진 사회일 수 없지 않은가.

수년 전의 사법개혁 파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의정부와 대전사건 등 부끄러운 사태를 겪으면서 판사들의 언론관도 많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최근 검사들이 언론의 개별적 보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가 심심찮게 있고, 판사는 그러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어서 심리적 장애가 되기는 하나, 장차 그야말로 목숨걸고 언론비판에 나서는 판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다.

법관 관련기사를 다룸에 있어서는 특히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호사 개업비용을 빌린 것을 '거액 받아' 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1999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1999년 한해동안 전년도보다 6.5% 증가한 총 641건의 중재신청 사건을 접수 처리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이래 가장 많은 중재신청건수로, 설립연도인 1981년의 44건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기각된 24건과 각하된 5건을 제외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244건 외에도 121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구제율은 59.6%로 나타났다.

1999년도는 중재처리결과, 역대 가장 높은 합의율과 가장 낮은 중재불성립결정율을 기록한 해이다. 총 중재신청건수 641건 가운데 244건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율은 38.1%를 기록했다. 93년(31.2%)을 제외하고 1990년대 들어 줄곧 20%대에 머물던 합의율은 97년 32.9%, 98년 37.5%로 30%대에 진입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재불성립결정율은 15.9%를 기록했는데, 불성립도 결정으로 하도록 한 개정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10%대의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986년 이후 40~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던 취하율은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여 중재처리결과 구성비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율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비율은 최근 3년간 3.1%~4.5%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1999년도의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율은 전년도에 비해 20.4%나 증가한 62.1%를 기록했으며, 1997년도 33.3%, 1998년도 41.7%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향후 법개정 등을 통한 중재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심의한 결과 8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40건의 언론침해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31.0% 감소한 수치이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I. 중재처리결과현황

중재처리결과는 합의가 244건(38.1%), 취하 237건(37.0%), 중재불성립결정 102건(15.9%), 중재결정 29건(4.5%), 기각 24건(3.7%), 각하 5건(0.8%)으로 나타났다.

1986년 이후 줄곧 합의율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던 취하율이 전년대비 4.5% 감소하며 합의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기각과 각하율은 다소 증가를 보였다. 중재결정된 사건의 경우는 11건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져 중재결정동의율은 37.9%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재결정권이 도입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총 중재신청 641건 가운데 합의 244건 중 227건, 취하 237건 중 92건, 중재불성립 결정 102건 중 16건, 중재결정 29건 중 10건, 기각 24건 중 3건 등 348건에 대해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져 피해구제보도율은 54.3%를 나타냈다. 합의된 사건의 경우 93.0%, 취하한 경우는 38.8%의 피해구제보도율을 나타내며 전년대비 각 4% 정도씩 감소하였고, 중재불성립결정된 경우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15.7%의 피해구제보도율을 보였다.

피해구제보도문의 내용은 반론보도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가 92건, 정정 및 사과보도가 18건, 정정 및 반론보도가 16건, 추후보도가 15건, PR보도가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사건 청구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정보도청구 사건(363건)이 반론보도청구 사건(261건)에 비해 많이 나타나 신청인은 여전히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피해구제보도문의 내용은 반론보도가 정정보도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나 언론사에서는 반론보도 게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는 363건 중 185건에 대해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져 51.0%의 피해구제보도율을 기록했고, 반론보도청구는 261건 중 148건이 피해구제보도되어 56.7%를 기록했다. 추후보도청구는 총 17건이 중재

신청되어 그 중 15건에 대해 추후보도가 나가, 88.2%의 피해구제보도율을 기록했다.

한편, 중재신청사건 청구별 합의율은 추후보도청구가 8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47.1%의 합의율을 보였고, 정정보도청구가 139건 합의되어 38.3%, 반론보도청구가 97건 합의되어 37.2%의 합의율을 보였다.

II. 중재신청인 유형

중재신청인은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전년대비 약 5% 증가를 보이며 54.6%(350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기업체 12.2%(78건), 조합 및 협회 11.4%(73건), 종교단체 5.8%(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단체가 신청한 경우가 전년대비 4.3% 증가하여 개인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 이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종교단체의 이단성 및 비리 관련 보도로 인한 종교단체의 중재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종교단체의 경우가 총 37건 중 30건에 대해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25.5% 증가한 81.1%로 가장 높은 피해구제보도율을 나타냈다. 피해구제보도된 30건 중 15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도한 것이다. 이어 일반 단체의 경우가 63.6%, 국가기관 58.3%, 조합 및 협회 57.5%,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55.6%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개인의 경우에는 53.4%의 피해구제보도율을 보였으며, 전년도에 80.0%로 높은 피해구제보도율을 기록했던 언론사의 경우 피해구제보도율이 45.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사업가가 신청한 경우가 94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자(26건, 7.4%), 공무원(23건, 18.3%), 회사원(22건,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가 전년대비 9.9%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청인이 주장한 언론침해의 유형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13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용훼손이 9건(1.4%), 기타 19건(3.0%)이었다.

III.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중재대상매체는 중앙일간지 184건(28.7%), 방송 171건(26.7%), 지방일간지 142건(22.2%), 주간신문 95건(14.8%), 잡지 27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전년 대비 9.3%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방송 매체의 경우도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방송매체 중 TV를 상대로 신청한 비율은 97년 17.1%, 98년 2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중재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방일간지는 3.9% 감소를 보였다.

각 매체별 합의율을 살펴보면 특수일간지 등 기타로 분류한 신문이 66.7%(6건)로 가장 높았으며, 잡지가 63.0%(17건), 주간신문이 51.6%(49건), 통신 50.0%(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중재신청건수는 증가한 반면, 합의율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24.6%로 중재대상매체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재불성립결정율은 29.2%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재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38.6%의 합의율을

보였다.

IV. 중재대상 기사 현황

중재대상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641건 중 372건(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관련 기사가 62건(9.7%), 경제기사가 52건(8.1%), 종교기사가 45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대상기사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274건(79.4%), 심층조사기사 23건(6.7%), 논단 및 칼럼 14건(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9.5% 감소한 반면 심층조사기사는 5.7% 증가하였다. 방송의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스·해설(137건, 80.1%)과 시사고발 프로그램(26건, 15.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의 취재원을 보면 직접 인지 취재한 경우가 266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및 제보가 155건(24.2%)이었다. 이외에 민·형사 사건 기록에 따른 기사가 101건(15.8%),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가 77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 중재부별 처리 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641건 중 402건을 접수 처리하여 전체 중재신청 중 가장 많은 62.7%를 차지했고, 경기중재부 62건(9.7%), 광주중재부 43건(6.7%), 전북중재부 28건(4.4%), 부산중

재부 27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중재부의 경우 전년대비 47.4%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광주중재부와 충북중재부는 30%씩 감소했다.

서울중재부와 지방중재부로 대별해 보면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를 보이던 지방중재부의 중재신청건수 구성비율이 전년대비 7.1% 낮아지며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다.

중재부별 합의율은 대전중재부가 13건 중 9건이 합의되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중재부 68.8%(11건), 부산중재부 51.9%(14건) 등이 50%를 상회하는 합의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중재신청 사건을 접수 처리한 서울중재부의 경우 36.8%(148건)의 합의율을 보였고, 대구중재부의 경우 중재신청된 18건 중 2건만이 합의되어 11.1%의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다.

VI. 법원제소 현황

중재신청처리결과 중재불성립결정된 102건 중 21건과 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중 4건, 기각된 사건 중 5건이 법원에 제소되어 법원제소건수는 총 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교단체와 언론사간의 소송이 17건으로, 종교단체의 방송사 점거로 인한 방송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논

란을 빚었던 만민중앙교회와 MBC와의 소송은 법원이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MBC가 총 14회에 걸쳐 각 프로그램별로 반론보도를 한 바 있으며, 총재의 성추문과 신도 납치와 관련된 보도로 SBS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소송 3건은 MBC의 경우 소송이 취하되었으나 SBS와의 소송 2건은 국제크리스천연합이 법원의 인용판결을 받아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

전체 30건의 제소사건 중 17건이 인용, 2건이 취하되었으며, 9건이 계류 중이다.

◇ 시정권고현황 ◇

1999년에는 일간신문 68종, 주간신문 2종, 주간지 9종, 월간지 8종, 통신 1종 등 총 88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전년대비 31.0% 감소한 총 240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공개가 126건(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의 용량과 용법을 공개한 경우가 66건(27.5%),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의 신원공개가 20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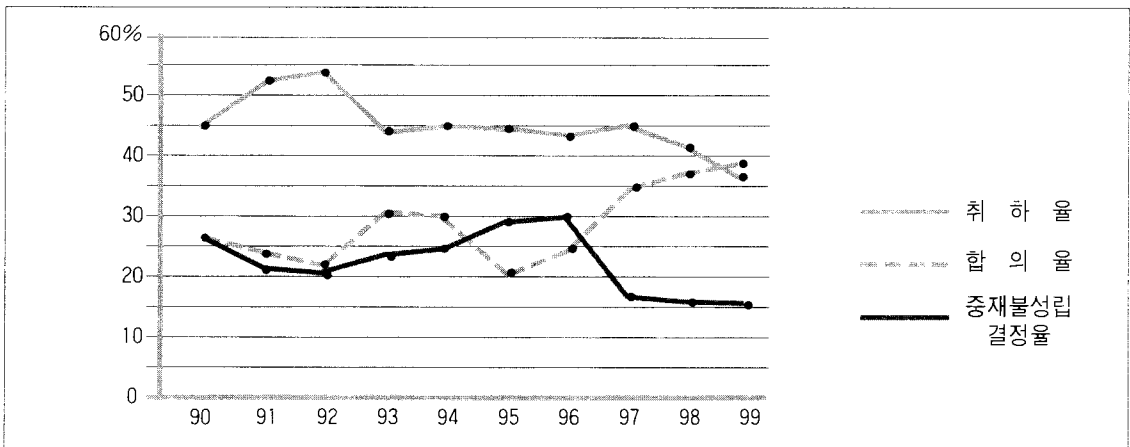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의 처리결과

()안은 %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641 (100)	244 (38.1)	29 (4.5)	102 (15.9)	24 (3.7)	5 (0.8)	237 (37.0)

1990년 이후 합의율·취하율·중재불성립결정율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처리결과	총 건수	피해 구제 보도 건수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피해 구제 보도율 (%)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정정, 반론, 사과보도		
합의	244	227	130	2	1	57	14				12	8	1	2	93.0
중재결정	29	10	7		1	1	1								34.5
중재불성립 결정	102	16	13			1	2								15.7
기각	24	3	3												12.5
각하	5														0.0
취하	237	92	36			33	1	1	4	7	9	1		38.8	
계	641	348	189	2	2	92	18	1	16	15	10	3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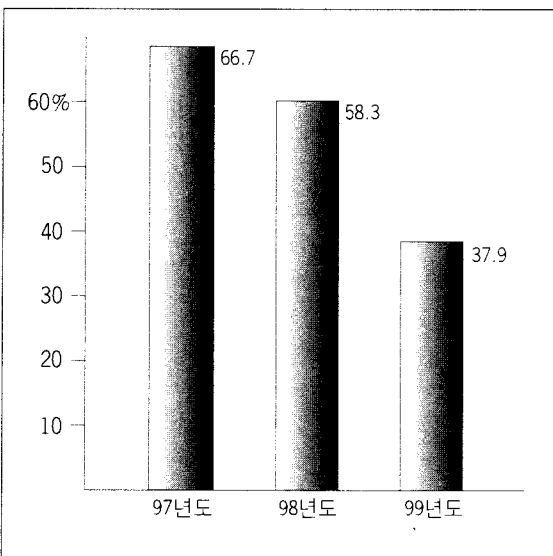
중재신청사건청구별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반론보도청구	97	37.2	13	5.0	47	18.0	15	5.7	3	1.1	86	33.0	261	100
정정보도청구	139	38.3	15	4.1	55	15.2	9	2.5	2	0.6	143	39.4	363	100
추후보도청구	8	47.1	1	5.9							8	47.1	17	100
계	244	38.1	29	4.5	102	15.9	24	3.7	5	0.8	237	37.0	6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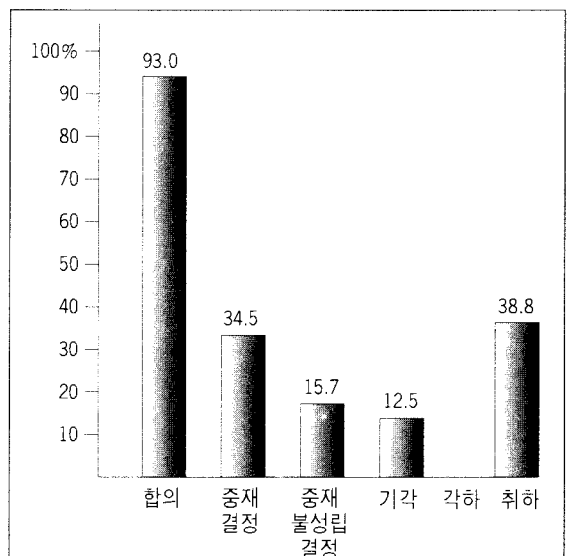
중재신청사건청구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청구명	총건수	피해구제수	피해구제보도내용									피해구제보도율(%)	
			반론보도	반론및사과보도	반론및PR보도	정정보도	정정및사과보도	정정및PR보도	정정및반론보도	추후보도	PR보도		정정·반론·사과보도
반론보도청구	261	148	114	1	1	18	3		2		8	1	56.7
정정보도청구	363	185	75	1	1	74	15	1	14		2	2	51.0
추후보도청구	17	15									15		88.2
계	641	348	189	2	2	92	18	1	16	15	10	3	54.3

중재결정 동의율 추이



중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신청인 유형 \ 침해유형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개 인	338	4	8	140	14	48	7		141	350 (54.6)
국가기관	12			3	1				8	12 (1.9)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18			6	2	1			9	18 (2.8)
정 당	8			1	1	1			5	8 (1.2)
조합 및 협회	67		6	30	2	7	9	1	24	73 (11.4)
공공단체	11			4	1	3			3	11 (1.7)
일반단체	31		2	16		2	2		13	33 (5.1)
종교단체	37			12	2	17	3		3	37 (5.8)
기업체	70	5	3	27	6	16	3	3	23	78 (12.2)
언론사	11			4		5			2	11 (1.7)
금융기관	2							1	1	2 (0.3)
교육기관	6			1		2			3	6 (0.9)
의료기관	2								2	2 (0.3)
계	613 (95.6)	9 (1.4)	19 (3.0)	244 (38.1)	29 (4.5)	102 (15.9)	24 (3.7)	5 (0.8)	237 (37.0)	641 (100)

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신청인 유형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정정·반론·사과보도	보도율 (%)
개 인	350	187	97	1	1	53	8		7	15	3	2	53.4
국가기관	12	7	6				1						58.3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18	10	4			4			2				55.6
정 당	8	2					1				1		25.0
조합 및 협회	73	42	19		1	14	3		2		2	1	57.5
공공단체	11	6	4						1		1		54.5
일반단체	33	21	10			8	2		1				63.6
종교단체	37	30	26	1		3							81.1
기업체	78	35	21			8	1	1	1		3		44.9
언론사	11	5	1				2		2				45.5
금융기관	2												0.0
교육기관	6	2	1			1							33.3
의료기관	2	1				1							50.0
계	641	348	189	2	2	92	18	1	16	15	10	3	54.3

신청인(개인의 경우) 직업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개인의 직업 \ 침해유형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회사원	19	1	2	9	1	1			11	22 (6.3)
공무원	64			21	5	8	1		29	23 (18.3)
국회의원	9			4	1	2			2	9 (2.6)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10			3	2				5	10 (2.9)
정당/정치인	4			2		1			1	4 (1.1)
공공기관장	3			2					1	3 (0.9)
교육자	26			12	1	6			7	26 (7.4)
종교인	4			2					2	4 (1.1)
언론인	9			7		1			1	9 (2.6)
문화예술인	18			6		2			10	18 (5.1)
사업가	92	2		37	1	11	3		42	94 (26.9)
제1차산업 종사자	8			4			1		3	8 (2.3)
연예인	7			3					4	7 (2.0)
법조인	7			3		4				7 (2.0)
군인	18			5	1	4			8	18 (5.1)
의료인	3					1			2	3 (0.9)
학생	5								5	5 (1.4)
사회운동가	5			2		3				5 (1.4)
주부	5			3		2				5 (1.4)
무직	5					1	1		3	5 (1.4)
기타	17	1	6	15	2	1	1		5	21 (6.9)
계	338 (96.6)	4 (1.1)	8 (2.3)	140 (40.0)	14 (4.0)	48 (13.7)	7 (2.0)	0 (0.0)	141 (40.3)	3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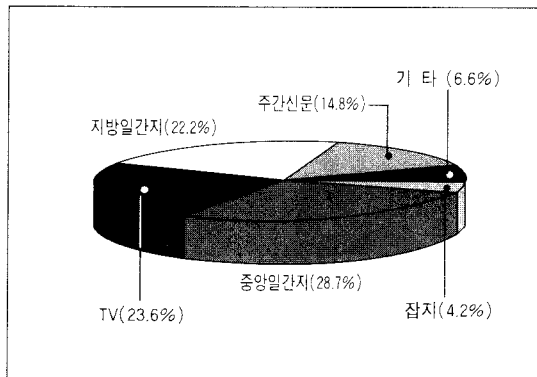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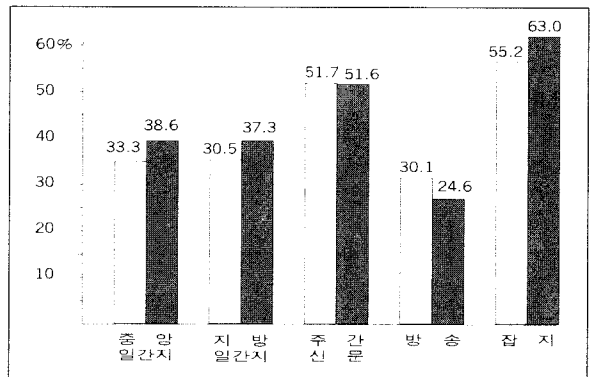
()안은 %

매체유형		처리결과		중재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합 의	중재 결정					
신 문	중 앙 일 간 지	71 (38.6)	8 (4.3)	18 (9.8)	12 (6.5)		75 (40.8)	184 (100)
	지 방 일 간 지	53 (37.3)	1 (0.7)	14 (9.9)	2 (1.4)		72 (50.7)	142 (100)
	주 간 신 문	49 (51.6)	7 (7.4)	18 (18.9)	1 (1.1)	1 (1.1)	19 (20.0)	95 (100)
	기 타 신 문	6 (66.7)					3 (33.3)	9 (100)
방 송	T V	33 (21.9)	13 (8.6)	45 (29.8)	8 (5.3)	2 (1.3)	50 (33.1)	151 (100)
	라 디 오	6 (40.0)		5 (33.3)			4 (26.7)	15 (100)
	C A T V	3 (60.0)					2 (40.0)	5 (100)
잡 지		17 (63.0)		2 (7.4)	1 (3.7)		7 (25.9)	27 (100)
통 신		5 (50.0)					5 (50.0)	10 (100)
기 타		1 (33.3)				2 (66.7)		3 (100)
계		244 (38.1)	29 (4.5)	102 (15.9)	24 (3.7)	5 (0.8)	237 (37.0)	641 (100)

매체별 중재신청건수비율



매체별 합의율비교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 유형	매체명	침해유형				처리결과					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1		1	3					6	12
	국민일보	11			7	1	1	1		3	11
	노동일보	1			1		1				1
	대한매일	8			4					2	8
	동아일보	9		3	5		2			3	12
	문화일보	12			2		2	2		9	12
	세계일보	10			6			1		2	10
	조선일보	15		2	9	1	1			3	17
	중앙일보	33		1	11	1	1	3		15	34
	통일남북일보	1			1		5	3			1
	한겨레	19			7					7	19
	한국일보	15		1	5	3	2			9	16
	소계	145	0	8	61	1	1			59	153
지방일간지	부산국제신문	3	1		3	7	16	10	0	1	4
	부산일보	6			1					5	6
	경북매일	1			1						1
	대구일일신문	1								1	1
	매일신문	3								2	3
	영남일보	3			1			1		1	3
	일간경북	2						1		2	2
	광주매일	1								1	1
	광주일보	3			3						3
	광주타임스	2			1					1	2
	무등일보	1			1						1
	전광일보	3			2					1	3
	전남매일	8			1					4	8
전남일보	5			3		3			2	5	
호남신문	4			2					2	4	
지방주간지	대전매일	1								1	1
	대전일보	1			1						1
	충도일보	1			1						1
	충남일보	2			2						2
	경기도민일보	3			1					2	3
	경기일보	4			1					3	4
	경인매일	1			1						1
	경인일보	8			3					5	8
	기호일보	4								4	4
	수도권일보	5			2					3	5
인천일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침해유형			처리결과						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방언	인천·경기강원	전국매일	1				1				1
		중부일보	10			5	2			3	10
		현대일보	1			1					1
	충북	강원도민일보	2							2	2
		강원일보	4		1	1	1			3	5
	충청	대청일보	1			1					1
		동양일보	6			1	2			3	6
	전북	중부매일	1			1					1
		충청일보	1							1	1
		전라매일	3			1				2	3
전북도민일보		3			2				1	3	
전북매일		1				1				1	
전북일보		9			1	3			5	9	
전북제일신문		1				1				1	
울산·경남	전주일보	2							2	2	
	경남도민일보	2			2					2	
	경남신문	4			3				1	4	
	경상일보	1							1	1	
	신경남일보	1							1	1	
	영남투데이	1							1	1	
제주	울산매일	1							1	1	
	울산일보	1			1					1	
	제민일보	3			2				1	3	
경제	제주일보	2							2	2	
	한라일보	1					1			1	
	소계	140	1	1	53	1	14	2	0	72	142
	내외경제	3	1	1	3					2	5
	매일경제	8		1	1		1	1		6	9
	서울경제	1								1	1
	제일경제	1				1					1
	한국경제	5		2	2					5	7
	소계	18	1	4	6	1	1	1	0	14	23
	스포츠	스포츠서울	3					1	1		1
스포츠투데이		1			1						1
일간스포츠		4			3					1	4
소계		8	0	0	4	0	1	1	0	2	8
특수일간지	금융보협통신	1			1						1
	농민신문	3			2					1	3
	민주경찰일보	1			1						1
	전자신문	2			1					1	2
	한겨레리빙	2			1					1	2
소계	9	0	0	6	0	0	0	0	3	9	

1999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매체 유형	매체명	침해유형			처리결과						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통신	연합뉴스	10			5					5	10
	소계	10	0	0	5	0	0	0	0	5	10
중앙방송	EBS-TV	1		1			1			1	2
	KBS-1TV	33	2	1	5	3	11	3		14	36
	KBS-2TV	6			1	2	1			2	6
	MBC-TV	37	1	1	4	1	14	4		16	39
	SBS-TV	26	1		13	3	9	1		1	27
	CBS-R	4			3					1	4
	KBS-R	1					1				1
	MBC-R	7					4			3	7
소계	115	4	3	26	9	41	8	0	38	122	
지역방송	광주KBS-1TV	1					1				1
	대전KBS-1TV	2			1		1				2
	부산KBS-1TV	1	1							2	2
	전주KBS-1TV	3			1					2	3
	창원KBS-1TV	1			1						1
	대구MBC-TV	4					2			2	4
	대전MBC-TV	1								1	1
	목포MBC-TV	1				1					1
	안동MBC-TV	1								1	1
	여수MBC-TV	2					1			1	2
	울산MBC-TV	2			1					1	2
	전주MBC-TV	2			1					1	2
	청주MBC-TV	4			1	2	1				4
	부산CBS-R	2			2						2
	전주CBS-R	1			1						1
	소계	28	1	0	9	3	6	0	0	11	29
지역민방	CJB-TV	1	1	1			1			2	3
	KBC-TV	1								1	1
	PSB-TV	4		1	2	1			1	1	5
	TBC-TV	1					1				1
	UBC-TV			1						1	1
	iTV	1			1						1
	JTV	1	1		1		1				2
	소계	9	2	3	4	1	3	0	1	5	14
기타방송	AFKN	1							1		1
	소계	1	0	0	0	0	0	0	1	0	1
케이블TV	한국케이블TV성남방송	2			2						2
	MBN	1			1						1
	YTN	2								2	2
소계	5	0	0	3	0	0	0	0	2	5	

매체 유형	매체명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시사주간신문	내일신문	4			3			1			4
	사건뉴스	2			2						2
	시사건국	1			1						1
	일요서울	3			2					1	3
	일요신문	1								1	1
	주간현대	2			1					1	2
	소계	13	0	0	9	0	0	1	0	3	13
지역	주간강남신문	1				1					1
	강진신문	1					1				1
	거제시민신문	2			2						2
	경기자유신문	1								1	1
	고양파주자치신문	1								1	1
	광산신문	1			1						1
	광주자치신문	1			1						1
	교차로신문	1					1				1
	금산저널	2			1		1				2
	나주신문	1			1						1
	남농신문	1					1				1
	동두천신문	1					1				1
	만연신문	2					1			1	2
	보령신문	1			1						1
	부천시민신문	1			1						1
	새거제	1			1						1
	서울송파신문	1				1					1
	수원신문	1			1						1
	시사주간강원리뷰	3			2					1	3
양주신문	1					1				1	
여수교차로	1								1	1	
여수비록시장포커스	1					1				1	
신문	연천복지신문	1			1						1
	예향진도신문	1			1						1
	용인시민시대	1			1						1
	용인연합신문	1			1						1
	울산연합신문	1			1						1
	울산종합신문	1			1						1
	주간원주내일신문	1			1						1
	의정부시민신문	1					1				1
	차치안성신문	1					1				1
	전남동부신문	1								1	1
	전북일요시사	1			1						1

1999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매체 유형	매체명	침해유형				처리결과					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주간신문	주간연수신문	2			1		1				2
	토요시사	2			2						2
	하농성론	1			1						1
	한북신문	2			1					1	2
	해진신문	1								1	1
	주간항공신문	1							1		1
	홍안신문	5			2	1	2				5
	소 계	52	0	0	27	3	13	0	1	8	52
	건강조선	1			1						1
	경찰신문	1				1					1
	교회복음신문	1								1	1
	특수	기독교신문	1								1
기독교신보		1								1	1
기자협회보		1								1	1
대학동선		1								1	1
동아환경신문		1			1						1
미디어오늘		4			1		3				4
주간변론과사회		1			1						1
법률지안신문		1			1						1
부산울산경남아파트신문		1			1						1
새누리신문		1			1						1
세계섬유신문		1				1					1
수산경제		1								1	1
주간선	씨네21	2			1		1				2
	장애인복지신문	1					1				1
	전국부동산뉴스	1				1					1
	주간교육신문	1			1						1
	주간여행신문	1								1	1
	주일신문	1				1					1
	치과기보	1			1						1
	환경자동차신문	1			1						1
	한국성결신문	1			1						1
	한국전파신문	2			1					1	2
	소 계	30	0	0	13	4	5	0	0	8	30
	주간지	뉴스피플	1								1
시사저널		1			1						1
한겨레21		7			6					1	7
NEWS+		2			1					1	2
소 계		11	0	0	8	0	0	0	0	3	11
월간지	가야신문	1			1						1
	관악21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계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월간지	월간교회와신앙	1			1						1
	기술사	1						1			1
	뉴스출주	1			1						1
	소비자시대	1			1						1
	신동아	1								1	1
	월간말	2								2	2
	웨딩21	1			1						1
	월간인물과사상	1			1						1
	일요뉴스	1			1						1
	피가로	1								1	1
	FEEL	1			1						1
	PC POWER ZINE	2			1		1				2
소계	16	0	0	9	0	2	1	0	4	16	
기타	인물과사상	1			1						1
	STARS & STRIPES-PACIFIC	2						2			2
	소계	3	0	0	1	0	0	0	2	0	3
총계	613	9	19	244	29	102	24	5	237	641	

IV. 중재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

매체	기사종류	빈도	백분율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기사	274	79.4
	해설기사	10	2.9
	사설	7	2.0
	논단 및 칼럼	14	4.1
	가십기사	6	1.7
	인물·동정	7	2.0
	인터뷰	2	0.6
	심층조사기사	23	6.7
	기타	2	0.6
	계	345	100
방송	뉴스·해설	137	80.1
	시사고발	26	15.2
	교양·정보	2	1.2
	드라마	1	0.6
송	다큐멘터리	5	2.9
	계	171	10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안은 %

매체유형	취재원							계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민·형사 사건 기록	보도 자료 발표	통신· 타언론 매체	기타		
일간신문·통신	131	77	61	52	11	13	345	
방송	67	46	32	16	5	5	171	
주간신문	51	28	8	5	1	2	95	
잡지	14	4		4	1	4	27	
기타	3						3	
계	266 (41.5)	155 (24.2)	101 (15.8)	77 (12.0)	18 (2.8)	24 (3.7)	641 (100)	

매체유형별 중재대상기사 내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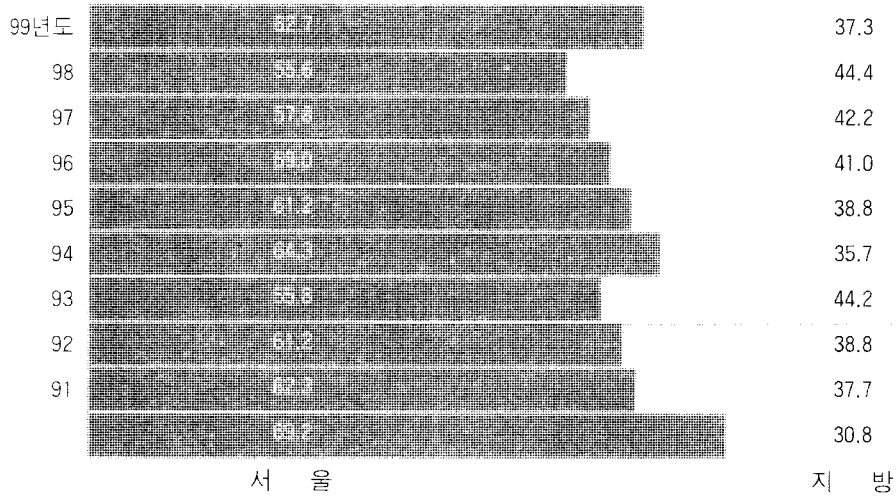
매체유형	구분	기사내용	기사내용											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환경	문화	생활 정보	종교	의료 건강	스포츠 연예	부고 인물동정	교육		기타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26	19	83	2	3	1	7	4	1	5	2		153
	지방지		15	3	102	6	4			4	2		5	1	142
	경제지			10	5			2		3		3			23
	스포츠지				2					1	5				8
	기타일간			5	2	1		1							9
방송	통신		2		5		1			2					10
	소계		43	37	199	9	10	2	7	14	8	8	7	1	345
	전국방송		4	5	74	2	4		25	5			3	1	122
	지역방송		1		35	2			1	2	1		1		43
	CATV				1	4									5
주간신문	기타				1										1
	소계		5	6	114	4	4	1	27	6			4		171
	시사종합지		2		7				2				2		13
	지역생활정보지		5	1	30	5	7		1				2	1	52
	종교지								5				1		6
	문화/교육관련지				1			1			1				3
	경제/산업관련지		1	3	1										5
	언론관련지				5										5
	의약/환경관련지			1	2										3
	기타				7									1	8
잡지	소계		8	5	53	5	8		8		1		6	1	95
	시사종합지		5		1			2		4					14
	지역생활정보지		1		1										2
	여성지				1						1			1	3
	종교지								1						1
	문화/교육관련지				1						2				3
	경제/산업관련지			4											4
	소계		6	4	4		2		3		7			1	27
	기타				2										3
	총계		62	52	372	18	24	3	45	20	16	8	17	4	641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안은 %

중재부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비고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의	이의					
서울중재부	402 (100)	148 (36.8)	11 (2.7)	12 (3.0)	66 (16.4)	22 (5.5)	3 (0.7)	140 (34.8)	
부산중재부	27 (100)	14 (51.9)		1 (3.7)			1 (3.7)	11 (40.7)	
대구중재부	18 (100)	2 (11.1)			4 (22.2)	1 (5.6)	1 (5.6)	10 (55.6)	
광주중재부	43 (100)	16 (37.2)		1 (2.3)	9 (20.9)			17 (39.5)	
대전중재부	13 (100)	9 (69.2)			2 (15.4)			2 (15.4)	
경기중재부	62 (100)	26 (41.9)		1 (1.6)	11 (17.7)			24 (38.7)	
강원중재부	10 (100)	3 (30.0)			1 (10.0)			6 (60.0)	
충북중재부	16 (100)	4 (25.0)		2 (12.5)	4 (25.0)			6 (37.5)	
전북중재부	28 (100)	9 (32.1)		1 (3.6)	5 (17.9)			13 (46.4)	
경남중재부	16 (100)	11 (68.8)						5 (31.3)	
제주중재부	6 (100)	2 (33.3)				1 (16.7)		3 (50.0)	
계	641 (100)	244 (38.1)	11 (1.7)	18 (2.8)	102 (15.9)	24 (3.7)	5 (0.8)	237 (37.0)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V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현황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안은 법원제소 후 보도

매체명	제소건수	1심결과					계속
		인용	가각	각하	화해	취하	
조선일보	1						1
중앙일보	3					1	2
한겨레	1	1(1)					
KBS-TV	2			2			
MBC-TV	15	14(14)				1	
여수MBC-TV	1						1
청주MBC-TV	2						2
SBS-TV	5	2(2)					3
계	30	17(17)	0	2	0	2	9

◇ 1999년도 매체별 시정권고현황 ◇

(대상기간:1999. 1. 1.~1999. 12. 31)

매체유형	매체명	시정권고건수	참해유형					기타	사회질서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중	경향신문	4				2			2		
	국민일보	1				1					
	대한매일	3				2		1			
	동아일보	5		1		2		2			
	문화일보	3			1	2					
양	세계일보	4				3		1			
	조선일보	4				2		2			
	중앙일보	2				1		1			
	한겨레	1				3		1			
지	한국일보	6		1	1	2		2			
	스포츠서울	2	1			1					
	스포츠투데이	1				1					
지	한국경제	1				1					
	소계	40	1	2	2	23	0	0	12	0	
	가야일보	1						1			
	강원도민일보	1				1					
	강원일보	4			1	3					
	경기도민일보	15	1		3	1		10			
	경기일보	4			1	3					
	경남신문	8	1	1		4		2			
	경도일보	2	1			1					
	경북매일	7	3			3		1			
방	경상일보	1				1					
	경인매일	5				3		2			
	경인일보	9				7		2			
	광주매일	2						2			
지	광주타임즈	3			1			2			
	국도일보	1				1					
	국제신문	4		1		2		1			
	기호일보	3				3					
	대구일보	2				2					
	광역일보	11	1		2	6		2			

매체 유형	매체명	시정 권고 전수	침해 유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타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향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타	
지	대전매일	2				2					
	대전일보	4				3			1		
	동양일보	3			1	2					
	매일신문	3				3					
	무등일보	2				2					
	부산일보	1							1		
	수도권일보	1							1		
	신경남일보	8	1	1		2			4		
	신경북일보	3	1		1	1					
	영남일보	12	2	1	1	7			1		
	울산매일	3	2			1					
	인천일보	3		1	1	1					
	일간경북	1							1		
	전국매일	3				1			2		
방	전남매일	3				1			2		
	전남일보	3							3		
	전라매일	6				4			2		
	전북도민일보	8	3		1	4					
	전북매일	1			1						
	전북일보	2				2					
	전주일보	6			1	4			1		
	제민일보	1							1		
	제주일보	1				1					
	중도일보	2		1		1					
지	중부매일	1				1					
	중부일보	9			1	5			3		
	충남일보	2				1			1		
	충청일보	10		2	2	5			1		
	한울신문	4				2			2		
	현대일보	2				2					
	호남신문	1							1		
	소계	194	16	8	18	99	0	0	53	0	
통신	연합뉴스	6		1		4			1		
	소계	6	0	1	0	4	0	0	1	0	
	총계	240	17	11	20	126	0	0	66	0	

* 심의대상매체:일간신문 68종, 주간신문 2종, 주간지 9종, 월간지 8종, 통신 1종

◇ 연도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현황 ◇

1. 언론중재신청현황

처리결과

() 안은 %

연도	신청건수	처리결과							비고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	1	2	20	
1982	50	19			19		2	10	
1983	71	21			22	1	1	26	
1984	54	12			29	3		10	
1985	59	12			28	4		15	
1986	49	14			10	1		24	
1987	47	10			9	1		27	
1988	55	16			12		1	26	
1989	121	29			35		6	51	
1990	159	42			43	1	2	71	
1991	220	52			48	3	1	116	
1992	381	81			79	19		202	
1993	423	132			96	8	2	185	
1994	541	162			127	7		245	
1995	528	111			150	26	3	238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1998	602	226	14	10	97	5		250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계	5,091 (100)	1,482 (29.1)	37 (0.7)	40 (0.8)	1,166 (22.9)	121 (2.4)	30 (0.6)	2,215 (43.5)	

* 중재결정권은 개정 법률에 의해 1996년 7월 1일부터 행사되었다.

연도별 실제 피해구제율

연도	신청건수	중재건수	피해구제건수				소계	피해구제율 (%)
			합의	취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1981	44	41	9	2		5	16	39.0
1982	50	48	19	4		5	28	58.3
1983	71	69	21	8		7	36	52.2
1984	54	51	12	5		8	25	49.0
1985	59	55	12	7		5	24	43.6
1986	49	48	14	11		2	27	56.3
1987	47	46	10	2		4	16	34.8
1988	55	54	16	13		5	34	63.0
1989	121	115	29	21		10	60	52.2
1990	159	156	42	40		10	92	59.0
1991	220	216	52	43		9	104	48.1
1992	381	362	81	107		12	200	55.2
1993	423	413	132	84		16	232	56.2
1994	541	534	162	128		10	300	56.2
1995	528	499	111	124		25	260	52.1
1996	556	546	129	137	3	21	290	53.1
1997	490	478	161	108	11	13	293	61.3
1998	602	597	226	106	14	8	354	59.3
1999	641	612	244	92	13	16	365	59.6
계	5,091	4,940	1,482	1,042	41	191	2,756	55.8

중재부별 신청건수

()안은 %

연도	중재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1981		37	5	1					1				44
1982		44	3		1		1	1					50
1983		61	8		1		1						71
1984		46	3		1	2	1	1					54
1985		48	3	2		1	1	1			2		59
1986		38	3				1	3			2		49
1987		42	1	1	1		1						47
1988		41	2	1	3	1		2	3	1	1		55
1989		79	14	2	8	1	6		3	2	3	3	121
1990		110	12	3	7	3	10	1	5	2	4	2	159
1991		137	20	7	9	5	10	3	3	10	12	4	220
1992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381
199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423
1994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541
1995		323	27	9	25	23	55	14	16	25	13	8	528
199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556
1997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490
1998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602
1999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641
계		3,170 (62.3)	282 (5.5)	154 (3.0)	269 (5.3)	152 (3.0)	447 (8.8)	92 (1.8)	150 (2.9)	163 (3.2)	167 (3.3)	45 (0.9)	5,091 (100)

I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안은 %

연도	제소건수	1 심 결 과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속
1981	4		2		2		
1982	3	2	1				
1983	7	4	2			1	
1984	8		4			4	
1985	12		2		1	9	
1986	2	1				1	
1987	4	1				3	
1988	7	3	1			3	
1989	10	7	1			2	
1990	12	3	2	2	1	4	
1991	6	3	1			2	
1992	33	4	11		3	15	
1993	20	9	2	3	1	5	
1994	30	14	1		2	13	
1995	53	20	14	1	4	13	1
1996	30	9	1			20	
1997	10	5	3			2	
1998	22	12	1			5	4
1999	30	17		2		2	9
계	303 (100)	114 (37.6)	49 (16.2)	8 (2.6)	14 (4.6)	104 (34.3)	14 (4.6)

Ⅲ. 시정권고 현황

()안은 %

연 도	시정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간 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주간지 /주간 신문	월 간지	통 신
		성폭행 당한자 신원 공표	정신 질환자 신원 공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일간지			
1981	0												
1982	0												
1983	3								3	1	2		
1984	0												
1985	0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계	3,391 (100)	592 (17.5)	111 (3.3)	1,369 (40.4)	512 (15.1)	224 (6.6)	1 (0.03)	558 (16.5)	24 (0.7)	3,270 (96.4)	22 (0.6)	12 (0.4)	87 (2.6)

PCC, 범죄사건에 연루된 아동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도실천강령 개정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위원장 Wakeham 경은 어린이 관련 보도와 관계된 보도실천강령의 개정은 바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PCC 보도실천강령위원회 위원장인 Les Hinton 씨는 이러한 개정은 법률의 변화에 상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1999년 청소년처벌과범죄증거법(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의 어린이 증인의 신원공표 금지 조항이 언론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정부와의 타협으로 그 법은 지금 단지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한하여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실천강령은 어린이 증인이나 희생자에 대한 언론인들의 임무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도실천강령의 주요 변화는 제10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범죄사건의 희생자나 증인이 아이들인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Wakeham 위원장은 “보도실천강령의 특징들 중 하나는 특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보호이다. 희생자건 증인이건 간에 범죄에 개입되는 불운을 겪은 아이들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공익(public-interest)의 범주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도가 공중에게 유용한 것인가 또는 유용할 것이냐의 정도를 고려하여 PCC가 판단하도록 한 보도실천강령의 변화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관계를 처음으로 보도실천강령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도실천강령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제10조는 “범죄보도(Reporting of Crime)”로 바뀌었다. 하지만 동의없이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의 친척과 친구들의 신원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있으며, “범죄의 증인이나 희생자가 잠재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인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보도실천강령에서는 또한 이러한 규정이 재판과정에 관한 보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부언하고 있다.

- 보도실천강령에 ‘공익’ 개념의 변화를 명기하였다. 표현의 자유에는 공익성이 존재하며, 보도가 어느 정도 공중에게 유용할 것인가를 고려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제12조에 있는 “공중의 범위(the public domain)”를 반영한 것이다.

- 제7조(성범죄사건과 관련된 아이들)에 해당되는 공익옹호(public-interest defence)와 관련하여 미미한 변화가 있다. 위원회는 아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경우라도 그 신원을 밝히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제7조의 예외사항을 바로 잡았다. (Press Gazette, 2000. 1. 21) □

일본의 신문, 선정적인 잡지광고 게재가 문제되자 기준 강화

일본 신문사들은 신문에 게재되는 잡지광

고의 성적 표현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광고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게재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사는 2000년 1월 1일 광고게재기준을 개정. '성적 희롱(sexual harassment)의 우려가 있는 것', '성기, 성행위, 성기구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사도 4일 "노골적인 성 표현이 대단히 많으며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간 현대(講談社)'와 '주간 아사히예능(徳間書店)'의 광고게재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잡지광고의 표현을 둘러싸고 아동 교육과 성적 희롱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음란한 광고가 게재되어있는 신문은 수업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문협회 광고위원회는 1999년 11월, 일본잡지협회 선전위원회와 의 협의 자리에서 "원고 단계에서 지면 게재가 가능한 표현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잡지협회는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이 신문사에 따라 달라 혼란스럽다. 게재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사히신문사는 출판광고로 게재할 수 없는 성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요미우리신문사는 타사에 앞서 1999년 10월 하순부터 광고심사업무의 강화를 표방하고 타지에 비해 성 표현이 노골적인 '주간 현대'와 '주간 아사히 예능'의 광고 게재를 보류하였다. 특히 '주간 현대'의 경우 표현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한 경우도 있다.

'요미우리'는 4일자 조간을 통해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에 '성의 상품화'라고 할 수 있는

성적 표현 광고가 게재되어 어린이들의 눈에 띄게 하는 현상은 도저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기사와 광고를 불문하고 높은 윤리를 지킬 책무가 있다고 광고게재를 보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마이니찌신문사와 산케이 신문사는 출판사에 문서를 보내, 성행위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삼가하도록 요청했다.

(『新聞協會報』, 2000. 1. 11.) □

타사의 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 예비결정-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1999년 11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타지의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프레즈노에 있는 '프리리퍼블릭'사가 LA 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지의 웹사이트 기사를 허락없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여 두 신문사가 지난 해 제소한 이 소송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 미디어와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내려질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률학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판사는 예비결정에서, 기사가 비평이나 해설의 대상이 되어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리퍼블릭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두 신문사는 "리퍼블릭사의 사이트가 무료

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사 사이트의 액세스가 감소하여 광고수입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 또 리퍼블릭사의 사이트의 상업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동사는 "이용자의 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영리사업으로 판단했다.

판결은 2000년 6월에 있을 예정이나 쌍방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新聞協會報』, 1999. 12. 14.) □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해도서 지정은 합헌

-일본 최고재판소 소법정 판결-

미야자키현이 '퍼스컴소프트'라는 서적을 청소년보호조례의 유해도서로 지정한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퍼스컴소프트 제작사인 가이낙스사가 미야자키현 지사를 상대로 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1999년 12월 14일 "미야자키현이 청소년보호조례에 근거하여 퍼스컴소프트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한 1. 2심 판결을 지지, 가이낙스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야자키현은 1992년 7월 17일 가이낙스사가 제조·판매한 퍼스컴게임소프트 '電腦學園시나리오 I'을 현의 청소년보호조례로 정한 유해도서에 해당한다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했다. 게임소프트는 퀴즈형

식으로 정답을 맞추면 화면상의 여고생 옷이 벗겨지게 되어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 헌법21조와의 관련에 대해 "북방저널 소송 등의 최고재판소 대법정판결과 같은 취지로 미야자키현이 퍼스컴소프트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라고 전제한 다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복지의 제한아래 있다"는 대법정 판결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퍼스컴소프트 서적의 애니메이션 화상은 상당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정한 '현저하게 청소년의 성적감정을 자극하여 그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新聞協會報』, 2000. 1. 1.) □

영국 법원,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언론의 면책을 인정한 획기적인 법정 판결이 있었다. 영국고등법원 Oliver Popplewell 판사는 GKR Karate가 Leeds Weekly News와 그 주간지의 소유자인 Yorkshire Post Newspaper(YPN)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defence)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지

난해의 Reynolds v Times Newspapers 판례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인 이번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제기사는 1997년 8월에 보도되었는데, "스포츠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으며, 영국 Karate 이사회의 멤버도 아닌 GKR Karate의 임의적인 방문 판매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사에는 GKR사가 소비자의 돈을 빼앗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GKR사는 기사에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게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GKR사의 대변인인 유명한 명예훼손 변호사 George Carman QC 씨는 이와 같은 경우는 특권이 요구되어질 수 없는데, 이는 담당 기자인 Sheila Holmes가 정보의 출처와 그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Oliver판사는 재판에서, "비록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의 내용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사가 특별한 이익(the spec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어떠한 평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 있다면 특권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중이 특별한 정보에 대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면 다시 말해 특별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언론인들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라면, 특권은 존재한다."고 하면서 언론은 감시견(watchdog)뿐만 아니라 경찰견(bloodhound)으로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Reynolds의 Lord Nicholls 씨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YPN의 변호사 Damian Cross 씨는 "언론이

공익의 차원에서 취재하고, 공중이 알아야 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한 출처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보도하였다면, 언론인은 명예훼손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Yorkshire Evening Post와 Leeds Weekly News 편집장은 "이 판결은 '한 개인이나 조직의 평판에 불리한 정보'와 '언론자유'의 의무와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중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보도대상자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언론인들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유례없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승리다."라고 이 판결에 대해 평했다. (Press Gazette, 2000. 1. 28) □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기구 설립 움직임에 일본 언론 크게 반발

일본에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도에 의한 인권·프라이버시 침해 구제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어 언론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99년 8월, 자민당이 법에 의한 보도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0월에는 일본 변호사연맹이 인권옹호대회에서 자율적인 보도평의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2월에는 법무성 인권옹호심의회가 공

청회를 열어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언론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일본신문협회는 12월 14일 법무성 인권옹호심의회에 공청회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발표, 법에 의한 취재·보도규제나 피해구제기관의 설치 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신문협회는 인권옹호, 차별철폐 등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신문·통신사가 행한 역할과 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통신 각사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취재·보도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면심사기구, 독자대응시스템 등의 정비, 기자연수의 실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앞으로 대응을 독자적 혹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자주적 노력을 한층 더 철저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구제를 이유로, 법에 의한 취재·보도규제나 피해구제기관의 설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 그것은 보도의 자유를 근거로부터 위협하는 것이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신문·통신사는 프레스옴부즈맨이나 보도평의회 등에 대해 실효성 여부, 보도기관의 독립성 침해 여부, 취재·보도의 자유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보도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없는지 종합적인 견지에서 검토하여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新聞研究』, 2000, 2월호 : 『新聞協會報』, 1999, 12, 14, 2000, 1, 1.) □

의문의 범죄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데 대해 미국 법원 반발

유명 방송인이 한 살인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재판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 판사들이 이를 문제 삼고 비난한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범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킨 후, 재판장은 방송인 John Kidney 씨가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상상과 허구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idney 씨는 이 판결은 “의문의 사건을 조사하는 모든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어떤 것도 창조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으며, 법정에서 나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도에 살인을 저질러 수감 중인 피고는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Carlton TV에 근무하는 Kidney 씨는 3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idney 씨는 항소심에서 피고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었는데, 최근의 항소는 범죄사건 재심위원회(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가 햄프셔(Hampshire) 경찰국이 제시한 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나서 Devon and Cornwall 경찰국에

게 그 관련조사를 다루게 한 다음 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들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으며,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Kiddey 씨를 비난했다.

판사들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Kiddey 씨는 항소심판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다른 PD들이나 변호사를 배제한 채 자신만을 비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한 진술들이 햄프셔 경찰국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자신이 만든 주장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Press Gazette, 2000. 1. 7.) □

영국, 언론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컴퓨터상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요건 완화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정보보호법 입법에 있어서 언론인들을 위한 중요한 특권(concessions)이 받아들여졌다.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은 컴퓨터상의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a)” 공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감한 정보”에 대한 언론인의 접근을 금지할 것으로 염려되었다. “민감한 정보”는 형사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인종이나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성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의 합법적인 공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제시하는 많은 조건들 중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한가지는 정보의 대상주체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정보의 이용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이다.

Newspaper Society(NS)의 법률담당자인 Santha Rasaiah 씨는 “우리는 컴퓨터상의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련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내용에 대해 개인이나 공공단체, 사기업 등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NS는 언론인들은 계속해서 판결기록과 재판목록에 접근할 수 있고, 법원관계자나 경찰로부터 피고의 신원과 재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많은 논의가 진행된 후, 정보보호기록과(Data Protection Registrar's Office)는 언론은 앞으로도 판결기록과 재판목록과 같은 공개재판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재판에 필요하다는 조건하에 관련 자료의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무성은 언론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수정한 두 번째 입법 초안을 공표하였다. Santha Rasaiah 씨는 “이러한 초안이 수용된다면 누구든지 불법행위나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 올바르지 않은 경영 등을 포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언론보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Press Gazette, 2000. 1. 7.)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공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라며,
만약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규정된 진료비 외에 웃돈을 받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5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엄 기 일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1.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2000년 1월 6일 21:00)

내 용 : ▷앵커 : 대형병원의 저명한 의사가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아기들을 치료하면서 규정된 진료비 외에 웃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엄모 교수,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장애아들을 치료하는 데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교수는 입천장을 모아주는 “라쌘”이라

는 특수치료를 통해 장애를 겪고 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때마다 규정된 치료비 외에 별도로 40~70만원의 웃돈을 아기들의 부모들에게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엄교수는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지난 4년간 제자를 통해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웃돈을 요구받은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낮게 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순순히 돈을 내줬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중략)

▷기자 : 엄교수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장애아 모임인 민들레회의 경비로 쓰기 위해 성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엄모 교수 : 민들레회 활동에서 돈이 너무나 부족했다. 할 수 없이 (부모들에게) 돈을 조금 더 내시라고 말했다.

▷기자 : 하지만 경찰에 출두한 부모들의 말은 다릅니다. 성금 형식이 아니라 보험이 안 되는 치료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환자부모 : 자기네가 직접 재료상에 가서 사와야 한다고 하고,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 엄교수에게 앞으로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며, 지난 2000. 1. 6. 21:20경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하의 뉴스에서 웃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칭된 보도의 당사자로서 위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94년까지는 대부분 돈을 받지 않고 구강 내 장치를 무료로 해 주었으며 95년경 이후부터 30~80만원의 돈을 구강 내 장치를 한 부모에게서 성금조로 받아 민들레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돈은 신청인이 받지 않고, 한양대 전공의들이 받았으며 전공의 명의통장에 민들레기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웃돈 3,000만원'이라고 하여 신청인이 큰 돈을 받아 착복한 것같이 보도했고, "웃돈을 요구받은 부모들은 ...순순히 돈을 내줬다고 말합니다."라고 하여 강압적으로 돈을 뺏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말을 편집 방송하여 언뜻 들으면 부정한 돈을 강압적으로 받은 것처럼 들린다.

이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 아울러 민들레회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신청인의 위상 저하 및 건강악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중재신청을 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MBC 문화방송이 지난 1월 6일자 MBC 9시 뉴스에 '웃돈 3,000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엄모 교수는 지난 4년간 제자를 통해 웃돈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엄모 교수는 이와 관련 웃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일년에 약 700~800만원의 성금을

받아 민들레회의 활동기금으로 써온 것입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지난 1월 6일 저녁 9시 뉴스에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엄모 교수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웃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교수는 웃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와 부모들의 모임인 민들레회의 활동기금으로 쓰기 위해 보호자들로부터 성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 2. 14.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18:30 「뉴스」 프로그램 끝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 프로그램(2000년 2월 14일 1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자사의 전기압력밥솥 폭발로 인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륙전자

(대표이사 이동길)

피신청인 : KBS-1TV

중재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00. 1. 2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KBS-1TV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2000년 1월 7일 18:55)

내용 : (전략)

▷아나운서 : 혼자 생활하는 함명준 씨. 어느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다 하마터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최근에 사온 압력밥솥이 밥을 하는 도중 갑자기 터진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중략)

▷아나운서 : 제조회사에 연락을 하니 며칠 후에 밥솥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산자 배상책임 보험에 들었다는 선전문구만 요란할 뿐 온몸 곳곳에 입은 화상의 치료비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진 함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함명준 : 9월 4일날 그런건데 지금 벌써 언제요?

▷대륙전자 여직원 : 지금 저희가 전화드릴게요. 저희가 연락통해서요.

▷함명준 : 아니 자꾸 연락만 하면 뭐합니까?

▷여직원 : 그러니까 담당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담당자분이 연락드리게 할게요. (중략)

▷아나운서 : 이렇게 책임회피하기도 벌써 몇 개월 째.

제조회사의 무책임함에 분노한 함씨는 YMCA 시민중계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함씨는 자신과 같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주요 대기업 부품납품 및 전기압력밥솥 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KBS-1TV의 2000년 1월 7일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제목의 방송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위 보도에서 피신청인은 소비자 함명준 씨의 말만 듣고 신청인 회사의 밥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하여 제조회사인 대륙전자의 책임 회피 등 제품의 결함을 강조하며 '99년 12월 28일 치료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몇 개월째 보상도 안해주고 있다고 2000년 1월 7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1999년 10월 4일자로 사고가 났었고 동년 10월 13일 10시 소비자로부터 사고 접수되었던 내용으로 접수이후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수시로 접촉하였으며, 회수 제품에 대한 시험 TEST 등 제품의 안정성은 이미 입증된 제품이다.

신청인 회사는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책임감을 갖고 치료비 보상을 해줄려고 면담하였으나 보상금 상향요청 등 막무가내로 당사 면담자를 상대 안해주려고 하다보니 보상금 지급시간이 지체되었다.

상기와 같은 이러한 사실을 한번도 확인절차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당사 대리점주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기피로 매출은 최악으로 줄어들어 생산라인가동이 중단되고 재고는 늘어나 경영

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인력을 내보내야 할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KBS-1TV 방송이 지난 2000년 1월 7일 18:55~19:00에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의 프로그램 보도기사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소비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하였다. 이를 (주)대륙전자 제품인 전기압력밥솥의 제품결함 및 소비자 보상책임 회피 등을 주제로 확대 보도를 하였다. 즉,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을 (주)대륙전자 제품인 전기압력밥솥 제품에 비유하여 시청자에게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소비자 함명준 씨가 주장한 전기압력밥솥에 의하여 온몸 곳곳에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륙전자 책임회피 등은 소비자 함명준 씨가 치료비를 과다 보상목적으로 지연함으로 합의가 지연되었다. 또한 치료비 보상은 '99년 12월 28일 합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2000년 1월 7일 TV방송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다.

KBS-1TV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하여 (주)대륙전자 및 판매대리점의 판매에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 앞으로 KBS-1TV는 중용의 입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만을 보도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 중소기업을 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바란다.

반론보도신청인 (주)대륙전자 이동길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2000년 1월 7일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서 방송된 '압력밥솥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법적권리' 방송분에서 시청자 재연시 사용한 밥솥은 소비자가 피해본 밥솥이 아니며, 방송전 1999년 12월 28일 제조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2000년 2월 13일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프로그램에 자막과 함께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 프로그램(2000년 2월 13일 1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쓰레기매립장에 조성한 자동차 종합시장이 가스분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중부자동차종합시장(주)
(대표이사 강형빈)

피신청인 : 교통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0. 1.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교통신문 : 『중부자동차 종합시장 ‘도마위’』
제하의 기사(1999년 12월 27일자 9
면)

내 용 : 지난해 완공된 대전중부자동차종합
시장(대전 대덕구 신대동)이 단지의 안전문제
와 당초 조성과정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법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진정서가 감사원에
제출됐다. (중략)

지난 1일 대전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병의로
감사원과 청와대에 접수된 진정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단지가 92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매
립지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종료 시점 이후 20년간 토지사용이 극히 제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여 밖에 경과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에 하루 수
천명이 왕래하는 대규모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을 허가한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
다.

또 쓰레기 매립지의 특성상 상당량의 가스가
생성될 것이 뻔한데도 마땅한 안전시설 하나
없이 복토처리만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주장과
함께 지금도 조립식 건물내에서 가스냄새가
나는가 하면 건물외벽의 분출구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 육안으로도 관찰될 정도로 위
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단지 허가면적외에 동일
한 매립지 약 1만2천평에 불법으로 전시장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않고 있다면서 수차례에 거친 항의에도
형식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관할 관청의 묵인
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
구했다.

더욱이 그동안 환경청 등에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매립지 토지사용 용도제한에 대한 질의

와 대전시와 대덕구청에 건축허가에 대한 적
법성과 불법토지 사용에 대한 항의 및 질의를
수차례에 걸쳐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의 진정에도 불구하
고 용역까지 주면서 실시된 전문기관의 안전진
단 결과조차 그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
는 등 폐쇄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확하
고 공정한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직접
적인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
동 소재 중부자동차종합시장 대표로서 교통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중부자동차 종합시장
‘도마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쓰레기 매립지의 특성상 상당량
의 가스가 생성될 것이 뻔한데도 마땅한 안전
시설 하나 없이 복토처리만 형식적으로 마쳤
다.”고 보도했으나 중부자동차종합시장은 개발
당시 가스 문제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고 대
전광역시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건물내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것은 전
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건물 외벽의 분출구
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라는 것도 전혀 사실무근인 악의적인 주
장으로서 피신청인이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교통신문의 기자가 중부자동차종합
시장과 관련한 기사를 취재, 보도하면서 취재
대상인 신청인 회사측에 문의 및 확인 기회를
전혀 갖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대전 중부자
동차매매사업자의 주장만을 사실 확인없이 일
방적이고 반복적으로 왜곡 보도한 것은 중립

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언론의 기본자세에 반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은 교통신문측의 일방적인 왜곡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막심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999년 12월 27일자 『중부자동차 종합시장 ‘도마위’』 제하의 기사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특성상 상당량의 가스가 생성될 것이 뻔한데도 마땅한 안전시설 하나 없이 복토처리만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주장과 함께 지금도 조립식 건물내에서 가스냄새가 나는가 하면 건물외벽의 분출구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중부자동차종합시장이 허가당국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가스포집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대전 광역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교통신문에 4단 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 제목 : 중부자동차종합시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는 지난 1999년 12월 27일자 『중부자동차 종합시장 ‘도마위’』 제하의 기사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특성상 상당량의 가스가 생성될 것이 뻔한데도 마땅한 안전시설 하나 없이 복토처리만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주장과 함께 지금도 조립식 건물내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가 하면 건물외벽의 분출구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중부자동차종합시장이 허가당국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가스포집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대전 광역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통신문 2000년 2월 17일자 9면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단지조성 관련...)과 같게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교통신문 : 『중부자동차종합시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2000년 2월 17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중앙회통합 참여를 거부해 일선 축협의 예금인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5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신규범)

피신청인 : 농수축산신문
종 재 부 : 서울제4종재부
접 수 일 : 2000. 2. 16.
처 리 결 과 : 함 의

보도내용

농수축산 : 『농촌금융 혼란 부른다』 제하의 기사(2000년 2월 14일자 1면)

내 용 : 축협중앙회의 중앙회통합 참여거부가 계속될 경우 일선조합의 예금인출 사태가 이어지는 등 농촌금융에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일 양재동 농협중앙회설립위 실무작업단에서 열린 협개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축협의 전산센터 진입저지 등 축협의 통합거부 움직임이 언론에 비쳐지면서 축협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수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만약 축협의 통합참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축협은 물론 농협에까지 인출사태가 이어져 농촌금융이 뿌리채 흔들리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제1금융권인 축협중앙회 예금은 3조8,000억원 규모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12조원 규모의 회원축협에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면 통합중앙회가 출범하는 7월 이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당국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량 인출로 지역축협이 부실해지면 중앙회통합후 그에 대한 부담은 통합중앙회에서 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농촌금융 부실에 따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과 양축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981년 창립된 순수민간단체로서 농수축산신문 2000년 2월 14일자에 보도된 『축협중앙회 통합참여 계속 거부, 농촌금융 혼란 부른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위 보도에서 지적한 '축협 전산센터 진입저지 일자인 2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축협의 신용사업은 상기 기사에서 표현한 '예수금 인출 사태'는 없었으며, 예수금 규모도 통상적인 증감폭 수준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본 보도는 축협 고객의 불안심리를 조장, 예금 인출사태를 유발하여 금융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신청인은 농수축산신문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 추측 보도로, 축협의 명예와 공신력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음은 물론, 금융권의 2차 구조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금융업무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보도로 판단,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농수축산신문은 2000년 2월 14일자 『축협중앙회 통합참여 계속 거부, 농촌금융 혼란 부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축협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축협의 예수금 인출사태가 이어진 사실이 없음에 따라 바로 잡으며, 본신문의 허위, 추측 보도로 축협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바로잡습니다
- 내용 : 본지는 지난 2월 14일자 『농촌금융 혼란 부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축협중앙회의 중앙회 통합 참여거부 움직임이 언론에 비쳐지면서 축협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수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농민단체 대표들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축협의 예수금 인출 사태는 없었으며, 예수금 규모도 통상적인 증감폭 수준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농수축산신문 2000년 2월 24일자 1면에 2단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일선축협도 예금 인출 사태 우려)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농수축산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0년 1월 24일자 1면)

내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광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TV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5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서 범 석

피신청인 : 한겨레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0. 2.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TV 중간광고 전령사 나선 교수들』 제하의 기사(2000년 2월 17일자 9면)

내용 : 일부 광고학자들이 광고업계와 광고업계의 이익을 드러내 놓고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상파 텔레비전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은 광고업체 자문을 맡았거나 광고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자주 받았던 인사들이다. 한양대 조병량 교수는 광고업계 출신인데다 제일기획·오리콤 등 유명한 광고업체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세명대 스교수도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프로젝트를 심심찮게 받았던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광고업계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교수들을 통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문화관광부 주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중에는 광고업계 인사가 없었다. 방송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식석상에 광고업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양대 조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세명대학교 광고·관광학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서 한겨레신문 2000년 2월 17일(목) 사회면(인터넷신문 포함)의 기

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최근 중간광고 논쟁에 대해 언론매체에 신청인의 의견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최근 중간광고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었던 문화관광부주최 “방송법시행령(안) 쟁점과 토론” (2000년 2월 14일)공청회에 주제발표, 토론에 참여한 적도 없다.

또한 한국광고단체연합회주최 “중간광고에 대한 토론회” (2000년 2월 10일)에도 주제발표, 토론에 참여한 적도 없고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다.

신청인은 중간광고논쟁에 대해 학술토론회가 아닌 언론매체 및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 어떠한 토론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공청회 등서 업계 시각 대변”이라고 게재했다.

또한 기자가 제시한 “한국광고주협회 프로젝트를 심심찮게 받아왔던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단 2회(인쇄매체수용자 조사97, 98)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광고학자, 언론학자 17명의 공동연구로서 이번 중간광고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광고학계, 광고업계, 주변사람들로부터 학자로서의 양심을 파는 몰지각한 교수로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실제적으로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겨레신문(인터넷포함)이 지난 2000년 2월 17일 사회면 『TV 중간광고 전령사 나선 교수들 공청회 등서 업계 시각 대변』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광고학자들이 광고업계와 광고업계의 이익을 드러내 놓고 대변하는 게 아니냐

는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상파 텔레비전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은 광고업체 자문을 맡았거나 광고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자주 받았던 인사들이다.”, “세명대학교 사교수도(인터넷에서는 서범석 교수로 명시되어 있음)…”, “광고업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교수를 통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 및 반론문
- 내용 : 2월 17일자 9면 『TV 중간광고 전령사 나선 교수들 공청회 등서 업계 시각 대변』이란 기사 제목은 세명대 사교수와 관련이 없으며, 한국광고주협회 프로젝트를 받은 것도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한양대 조병량 교수가 2월 14일 문화관광부 주최 방송법시행령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광고업계와는 관련이 없으며, ‘광고업계이익 대변’이란 기사 표현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0년 3월 2일자 9면에 1단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공청회 등서…)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정정 및 반론문』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일삼다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국회 속기록
에서 의혹 대상자 이름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6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신 범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0. 2.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2000년 2월 12일 21:00)

내 용 : ▷앵커 : 김홍걸 씨 호화주택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기사의 보도입니다.

▷기자 : 이신범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걸 씨의 호화주택 거주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략)

이 의원은 LA교포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폭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며칠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작년 11월에는 국정원 신축사업에

김종필 당시 총리가 압력을 넣어서 자격도 없는 총남의 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종리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속기록에서 김종필 총리라는 말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 의원은 언론문건 파동 때도 당시에 중국에 체류 중이던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여권 핵심부와 수시로 통화한 것 같다고 하며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으나 대부분 동료기자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폭로의 득을 보자는 폭로정치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권의 각성보다는 유권자의 엄정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강서구을)으로서 2000년 2월 12일 9시에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의 “침묵의관”이란 자막의 보도내용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동 보도내용은 신청인의 2000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의 전체 내용 중 특정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이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같이 보도한 것은 신청인을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가 사실보도는 소홀히 한 채 신청인을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맞지 않는 내용을 방송하고, 또 유권자들로 하여금 낙선운동을 유도하는 보도를 한 데 대해 신청인은 우려와 함께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피신청인은 첫째, 신청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과 함께 '침묵일관'이라는 자막표현을 사용했고, 둘째, "폭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며칠 더 확인해 봐야겠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셋째, "이 의원은 김총리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속기록에서 김종필 총리라는 말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신청인은 국정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신동아 2월호 웹사이트에 게재된 독자투고 내용과 재미동포들의 제보 등에 근거해 대통령 가족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조풍언 씨와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세가지 질문을 하였던 바, 그중 하나가 대통령 3남이 호화주택에 거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나고 질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과정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주택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피신청인은 전후사정을 모두 보도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만을 편집해서 폭로로 단정하여 방송하였는 바, 이는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사실과 다르고, 이를 '폭로'라고 표현하여 방송한 것은 신청인의 반론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

또 작년 11월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405호 사업과 관련 김종필 총리의 역할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던 발언과 12월 3일 언론문건사건 당시의 기자회견내용도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채, 일부내용을 교묘히 편집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모든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케 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2000년 2월 9일 본회의 발언 이후 2월 11일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일가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지 '폭로의 신빙성이 제기'되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폭로의 득을 보자는 폭로정치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권의 각성보다는 유권자의 엄정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보도했는데, 실체를 밝히지 않은(방송에는 시민단체의 멘트나 화면도 없었음)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어 피신청인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방송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집권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보도가 국회의원으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였음은 물론, 16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대 후보가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사는 지난 2000년 2월 12일 오후 9시 30분 MBC뉴스데스크에서 "침묵일관"이란 자막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신범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3남의 주택소유 의혹과 관련 "폭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며칠 더 확인해 봐야겠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나 사실은 관련사실을 추가 확인하라는 한나라당 '대통령일가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여 접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사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신범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부외연수원 건설공사인 405호사업과 관련하여 김종필 총리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본사는 "이 의원은 김종리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속기록에서 김종필 총리라는 말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자민련 총무의 요청에 의해 이 의원이 총리라는 말은 그대로 두고 '김종필' 석자만 빼도록 한 것으로서 '김종필 총리'를 빼도록 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언론조작문건사건과 관련 작년 12월 3일 이신범 의원이 문일현 기자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본사는 "공개했으나 대부분 동료기자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 SK텔레콤 관계자, 그리고 취재기자가 아닌 다른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기자신분의 동문 등의 전화번호도 있는 등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져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폭로의 득을 보자는 폭로정치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권의 각성보다는 유권자의 엄정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신범 의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자의적 보도를 본사가 했음을 인정하며 본 방송사로 인해 이신범 의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정정보도신청인 국회의원 이신범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지난 2월 12일 뉴스데스크에서 "침묵일관"이란 제하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작년 11월 22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가정보원의 신축사업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속기록 수정에 동의한 부분은 '김종필 총리'가 아니라 '김종필'이란 이름석자뿐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년 3월 11일 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21:0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끝 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2000년 3월 11일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선거기사심의사례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3월 15일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을 위반한 일간지 및 통신, 시사주간지에 대해 주의 16건, 경고 4건을 의결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되며,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사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 제8조의4에 따라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의한다.

언론사가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의 게재를 통보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3월 15일까지 의결한 '선거기사심의사례'와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선거기사심의의결현황

언론사	제재내용				계
	주의	경고	정정보도문게재	사과문게재	
중앙일간지	4	•	•	•	4
지방일간지	9	4	•	•	13
통신	1	•	•	•	1
시사주간지	2	•	•	•	2
계	16	4	•	•	20

경고

사례1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 『“고비용 정치구조 이제 바꾸자”』(2000년 2월 28일자 9면)

내용 : 한창희 한나라총주시지부당 위원장을 인터뷰한 내용과 선거운동방법, 공약 등을 악력, 사진과 함께 한 면을 할애하여 보도.

“돈 없으면 정치판에 발 들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오랜 구태를 개선해 돈이 없어도 능력을 갖춘 신인이면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자”는 후보자의 주장과 함께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생활정치운동은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 식상한 주민들에게 매우 신선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호응을 얻

고 있다”고 보도.

이 유

특정 후보의 정치적 소신, 선거 운동방법, 공약 등의 내용을 ‘개면에 전면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위반에 해당

이 유

특정 후보의 출마동기, 향후 정치포부, 정치소신 등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면 전체에 걸쳐 게재한 것은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조치함.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작업에 자민련 예산팀장 자격으로 참여해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북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도.

이 유

특정 후보의 과거 의정활동과 장래 정치포부 등의 내용을 ‘개면에 전면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제6조(사실 보도) 위반에 해당.

사례 2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 『“부패정치 청산 선봉에 서겠다”』제하의 기사(2000년 3월 8일자 14면)

내 용 : 새천년민주당 진천, 음성, 괴산 지구당 김진선 위원장의 정치포부, 공약 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약력, 사진과 함께 한 면에 걸쳐 보도.

“37년간의 공직 생활동안 명예를 생명으로 알고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후회 없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길이기예 여당의 영입을 수락했다”는 후보자의 견해를 인용보도하고 “자난해 문단에 추천을 완료해 사성장군 출신 수필가가 탄생했다는 화제를 장안에 뿌리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인터뷰하여 보도.

사례 3

심의대상기사

한빛일보 : 『“충북도약 위해 3선의 힘찬 도전”』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6일자 3면)

내 용 : 자민련 청주상당지구당 구천서 의원을 인터뷰하여 정치포부, 공약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약력, 의정활동 사진과 함께 한 면을 할애하여 보도.

“자민련 구천서 의원은 … 국회에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차세대 지도자로서 급부상한 정치인이다. …자민련의 수석부총무로서 협상력을 인정받았고 또 후반기에는 추진력과 인화력을 겸비한 원내 사랑함을 맡아 숭한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보도.

“당초 총남으로 결정됐던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총남·북 공동유치로 바뀐 것은 구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내

사례 4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 『“고향키우는 ‘힘 있는’ 일꾼 되겠다”』(2000년 3월 13일자 12면)

내 용 : 새천년민주당청원지구당 정종택 위원장의 출마동기와 당적 변경 이유, 선거운동방법 등을 인터뷰한 기사를 약력, 사진과 함께 한 면을 할애하여 보도.

“청원군에 대형 사회간접 시설이 선정만 되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게 마음 아팠다. … 할 일이 산적한 데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유로 인하여 인맥과 경륜을 갖춘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후보자의

주장과 함께 후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 위원장은 지역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천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꼽는다면”, “소탈한 성품과 투지런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소개한다면” 등의 질문과 답변을 게재.

이 유

특정 후보의 약력과 출마동기, 선거운동방법 등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면 전체에 걸쳐 게재한 것은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위반에 해당.

주 의

사례 1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 『역량있는 지역 중진 기자』(2000년 2월 24일자 1면) 및 『정치신의 저버린 행태』 공문』(2000년 2월 24일자 3면)제하의 기사

내 용 : 특정 후보들의 공천탈락 가능성에 대해 지역 푸대접으

로 보도하면서 “김종호, 박준병 부총재 등 지역버팀목 꼭 필요”라는 소제목과 함께 공천탈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게재

“가뜩이나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인사들의 빈곤으로 항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무대점, 푸대접에 가슴앓이를 해오던 지역주민들은 정치적 거목으로 성장, 지역에 크게 보탬이 될 역량 있는 정치인의 공천 탈락설에 허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특정후보의 공천배제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비중을 감안하면 공천탈락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대부분 도민들은 ‘자민련이 위급할 때 영입을 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정치적인 배신이다면서 ‘이제는 총복을 자민련의 뒷발로 여기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일반시민의 인터뷰를 인용보도.

이 유

충북 출신 자민련 특정 의원에 대한 당내 공천 배제 움직임에 대해 지역정서를 무시했다며 지역 정가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1면 머릿기사 등으로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은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당소속 공천 경험자들이나 타 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위반에

해당.

사례 2

심의대상기사

국도일보 : 『자민련 김학원 의원 부녀 총선승리 다짐-JP아성 업고 승승장구』제하의 기사(2000년 3월 3일자 3면)

내 용 : 특정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전문을 보도하고 기사제목을 과장하여 게재.

“부여의 초반 판세는 이 지역이 김 명예총재의 아성임을 입증하듯 일단 자민련 공천자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명예총재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 의원이 김 명예총재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재선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보도.

이 유

특정 후보가 타당 후보들에 비해 “김 명예총재의 아성임을 입증하듯 일단...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막연히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하면서, 제목으로 자민련 후보의 ‘승승장구’를 보도한 것은 타 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제14조(기사제목)

위반에 해당.

사례 3

심의대상기사

제주일보 : 『4·13 총선 초반 판세 분석』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3일자 3면 및 3월 7일자 2면)

내 용 : 선거의 초반 판세를 점검해 본다며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오차한계,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당초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의 판세가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을 계기로 민주당 우세 쪽으로 기울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게재하였고 “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율이 민주당 26.2%, 한나라당 22.5%, 민주국민당(가칭) 4.8%, 자민련 2.5%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30.4%, 한나라당 20.3%, 자민련 5.6%, 민국당 3.8%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10% 포인트나 벌어졌다”고 보도.

이 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 4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 『쉽지않은 DJ저격수 저격』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7일자 2면)

내 용 : DJ저격수들의 국회입성을 저지하기 위해 포진한 민주당 후보들이 기대만큼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오차한계,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김성호 전 한겨레신문 차장을 내세웠으나 2월말 현재 10% 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버티고 있는 은평을에 배치된 이석형 변호사도 15%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부영 총무의 강동갑에 투입된 노관규 변호사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10%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5

심의대상기사

경도일보 : 『어·야 이모저모』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7일자 2면)

내 용 : 경기도 부천원미울지역의 선거판세를 전망하면서 특정후보가 여론조사결과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주장을 인용 보도.

“부천 토박이인 한나라당 이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한나라당 대변인을 만날 정도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다…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배 전 의원을 10% 전후로 앞서고 있다

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6

심의대상기사

대전매일 : 『“씩쓸어·경합” 우원·경정 치열』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8일자 3면)

내 용 : 대전·충남지역과 충북지역의 선거판세를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였고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오차한계,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대전·충남,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도는 대전에선 자민련이 38%, 민주당 27.5%, 한나라당 23.9% 순으로, 충남의 경우 자민련 44.4%, 민주당 27.3%, 한나라당 17.4%로 조사됐다.” “(충북)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련 36.6%, 한나라당 27.8%, 민주당 22.7% 등으로 자민련이 수위를 지키고 있다”고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7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 『386세대 대 3선 중진 한판 대결』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8일자 4면)

내 용 : 동두천·양주지역의 선거판세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

“지난 달 중순께 한 여론조사기관이 동두천·양주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요상 후보가 18.3%의 지지도를 나타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정성호 후보가 10.1%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20.1%, 한나라당이 11.3%, 자민련이 36% 순으로 나타나 현재까지의 총선정국은 인물론과 정당선호도가 혼재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8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 『제1당 승부처' 막상막하 혼전』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8일자 4면)

및 『한나라 독주...민국 '아직은 미풍』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9일자 4면)

내 용 : 권역별 선거판세를 여야4당의 자체여론조사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기사화하면서 조사기관,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Pk지역, 특히 부산선거는...여야의 자체 분석결과와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초반판세는 여전히 한나라당의 절대적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는 부산 5곳, 경남 9곳, 울산 1곳 등 모두 15곳에서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으며 17곳이 백중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북·강서울의 경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고 있지만 한나라당 허태열·민국당 문정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등의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9

심의대상기사

전남매일 : 『6선고지' 무소속 거센 도전·16대총선 격전자를 가다』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9일자 4면)

내 용 : 전남 해남·진도 지역

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약력과 선거운동전략을 소개하면서 특정후보가 자체여론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주장한 바를 인용 보도.

“이 전 회장측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 73의 비율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인지도의 상승이 곧 지지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내용.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10

심의대상기사

뉴스피플 : 『서울 민주 '상승' 한나라 '주춤'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16일자 18~20면)

내 용 :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지역 선거판세를 분석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각 정당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상승 기류, 한나라당 주춤'으로 요약된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판세는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을 계기로 민주당 우세쪽으로 기우는 듯한 기류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10% 포인트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 현재 자체 분석으로도 절대 우세 10 여곳, 우세 15곳, 경합 10 여곳, 열세 7~8곳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11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 『4·13 총선 초반 판세』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0일~13일자 각 4면)

내 용 : 여러 여론조사결과와 여야 4당의 자체분석을 근거로 선거판세를 분석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 8일 현재 총정권 24개 지역구에서 ... 특정후보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당별로 보면 자민련이 15곳, 민주당 3곳, 한나라당 1곳이다. 분명한 우세를 보이는 곳(우세지역)은 모두 8군데로 자민련 6곳과 민주당 2곳이다”고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12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 『수도권 민주·한나라 2파전』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1일자 1면) 및 『2위는 없다 숨가쁜 총선 경주』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1일자 3면)

내 용 : 전국의 관심 지역구 10곳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는 밝혔으나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국민일보가 지난 9일 밤 여론조사 전문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용산, 성동, 동대문울과 경기 분당을, 부천 원미울, 안양 동안 등 6곳의 정당 및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용산과 성동은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 울은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이 민주당 허인회 위원장을 2%정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해남-진도는 무소속 이정일 전 전남일보 회장이 민주당 김병호 국회부위원장을 0.8%차로 앞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을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13

심의대상기사

연합뉴스 : 『4·13 총선 초반 판세 점검』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4일~8일자 및 10일자)

내 용 :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선거판세를 분석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보도.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초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의 판세가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을 계기로 민주당 우세쪽으로 기울어 가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율이 민주당 26.2%, 한나라당 22.5%, 민국당 4.8%, 자민련 2.5%로 나타났고 또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30.4%, 한나라당 20.3%, 자민련 5.6%, 민국당 3.8%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10% 포인트나 벌어졌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인천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혼전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결 구도속에 자민련 현역의원 지역의 경우 3파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강원과 제주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민

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후보들이 맹추격을 펴고 있어 선거전 막판에 가서나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간지들의 여론조사결과에서 호남 지역구 29곳 가운데 1~3곳이 ‘이번’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일간지들의 여론조사에서 전남 고흥의 민주당 박상천 원내총무는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 선정에도 아랑곳 없이 9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보도.

이 유

〈주의 사례 3의 이유 참조〉

사례 14

심의대상기사

일요시사 : 『박주선 ‘텃밭’에 무소속 깃발』 제하의 기사(2000년 2월 27일자 3면) 및 『역사에 남는 대통령 위해 못다한 개혁에 앞장』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7일자 3면)

내 용 : 전남 보성·화순지역구에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으며, 여론조사결과 압

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박주선 후보의 경력을 2월 27일자에 보도한데 이어 3월 7일자에는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게재.

“지난해 중순 이후 4·13 총선을 향한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면서 지역구 출마자들이 자전 타전으로 거론돼 왔다. … 특이한 점은 박 비서관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민들의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 보성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 “청와대와 일부 정보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월 27일자 3면에 보도.

3월 7일자 3면에는 “이번 총선에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 의지로 나서는 데 반해 박 전 비서관의 경우는 본인의 거둬들인 고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의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점이다.”라는 내용과 인터뷰기사에는 “내 출마는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박 후보의 주장 등을 보도.

이 유

특정 후보에 대해 “지역민들이 인물론을 앞세워 총선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보가

관의 여론조사를 인용. “박 전 비서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거의 전면에 게재하였다. 또한 지령을 달리하여 박씨가 “지역민들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의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인터뷰 기사로 재차 보도한 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위반에 해당.

도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급선무라고 보고 9일 이원화 전북경찰총장을 만나 논의했다. 김의원은 … 이 경찰청장으로부터 금년도에 72억 원을 투자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 김 의원은 또한 이 경찰청장과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배 가량 많은 200억 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임실군민의 민원사업의 하나로 이 구간에 내년까지 교차로 신호기, 속도감시기,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민주 장성원 의원의 의정보고회』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0일자 1면)

내 용 : 민주당 장성호 의원의 의정보고회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1면에 박스기사로 게재. “의정보고회에서 장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려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나열하며 의정보고회를 주도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히고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역설했다”고 보도.

사례 15

심의대상기사

전북도민일보 : 『“안전시설 확충 위해 예산확보 전력”』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0일자 3면)

내 용 : 민주당 김태식 의원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평균치보다 매우 높아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전주~남원간 국도의 교통안전시설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의원 사진과 함께 박스기사로 게재.

“김 의원은 최근 전주~남원간 국도가 ‘마의 도로’로 전락,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언론의 보

이 유

특정 후보의 지역구 현안 해결 노력을 3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한 것은 해당 지역구 타 출마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위반에 해당.

이 유

특정 후보의 의정보고회 소식을 1면에 사진과 함께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구 타 출마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위반에 해당. □

사례 16

심의대상기사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 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한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독자투고) 언론사는 독자투고란에 선거에 관련된 독자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 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

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4장 광고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 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진 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시 가능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선거기사심의와 제재에 대해 네티즌의 70%가 찬성

네티즌의 대다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반론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채널이이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정성을 잃은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다고 합니다. 선거기사의 제재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내용으로 PC통신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찬·반 투표 결과가 이 조사에 참여한 3,696명 가운데 2,575명이 찬성하여 70%의 찬성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73%의 찬성율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도 70~71%의 찬성의사를 표명한 반면 40~50대 연령층은 젊은 층보다 다소 낮은 67~68% 찬성율을 보여 나이가 젊을 수록 선거기사제재에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사에는 20대가 1,340명 참여하여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173명, 10대 560명, 40대 431명, 50대는 101명이 참여하였다.

판결 1

공인인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명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성룡)는 2000년 2월 2일 유명 방송인 백지연 씨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한 스포츠투데이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은 원고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소문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원고는 일간지 등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가 속한 신문사를 통하여 소문을 보도한 것은 명백히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한 허위사실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소문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

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이른바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은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할 절차는 모두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거절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보도로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을 때에는 언제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할 뿐더러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보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 결 문

사 건 : 99가합64112 손해배상(기)
 원 고 : 백 지 연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
 현대아파트 103동 2206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배숙, 최승수
 피 고 : 최 윤 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CCMM
 빌딩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5층 편집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은 창 용,
 서 정 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변론종결 : 2000. 1. 26.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1999. 8. 6.부터 2000. 2. 2.까지
 연 5%,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보도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기자 및
 앵커우먼(anchorwoman)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프리랜서(자유 계약직)로 방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는 연예, 스포츠 기사를 주로
 다루는 일간지 '스포츠 투데이' 신문을 발행
 하는 스포츠투데이 신문 주식회사(이하 스포
 츠투데이라 함)의 연예부 소속 기자이다.

(2) 1999. 7. 10. 국내 PC통신업체와 '미주통
 일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ty.co.kr>)에 '여성 앵커를 울
 린 남자는...', '모 여성 앵커 이혼 사유가...?'
 등의 제목으로 '근래 이혼한 유명 여성 앵커
 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
 로 판명되었다.', '그 상대는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라는 내용의 글이 오르면서 주로 국
 내 PC통신업체를 통하여 사용자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여성 앵커가 원
 고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회에 떠도는
 소문을 과장, 윤색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포시
 키는 배부전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나
 확인 절차 없이 국내 PC통신업체와 위 홈페
 이지 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원고
 의 고소로 개시된 배부전에 대한 명예훼손 사
 건에서 원고가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가

.....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소문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배부전은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되어 그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한편, 피고는 1999. 3.경 원고가 소속 방송사에 사표를 낼 무렵부터 주로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소문이 PC 통신에 게시되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는 1999. 7.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위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 배부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에게 배부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통화 내용을 기사화로 만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1999. 7. 15. 10: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동안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인터뷰한 것으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뷰도 없이 무슨 기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위 소문을 기사로 쓰지 말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1999. 7. 16.자 ‘스포츠 투데이’ 신문 제1판의 1면에, 우측에는 원고의 얼굴 사진을 싣고, 좌측에는 큰 글씨로 “사이버 테러, 백지연 모함”, 중간 글씨로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라고 제목을,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인터넷 신문 보도”라고 기재하고 그 옆과 위 사진 사이에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기제가 있는 배부전의 홈페이지의 사진 영상을,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백야)’ ... 백지연 본보에 최초 고백”이라고 부제목을 각 붙이고 그 아래에 별지 ‘제1판(초판) 신문’ 기재 신문 기사를 실었고, 스포츠투데이는 위 신문

(이하 초판 신문이라 함)을 인쇄되어 전국으로 발행, 배포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14:00~15:00경 초판 신문이 발행, 배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1999. 7. 16. 아침에 배포될 신문에는 위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원고를 찾아온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발행된 신문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날 아침판에 서라도 원고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얼굴 사진 크기를 약간 줄이고 위 홈페이지의 영상 부분을 삭제하고 전체 지면 할당량을 1/5 정도 줄인 후 제목 다음의 부제목과 기사 내용을 수정하여 그 아래 별지 ‘제6판(수정판) 신문 기사’ 기재 신문 기사를 다시 작성하였고(밑줄친 부분은 초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수정한 부분임), 스포츠투데이는 1999. 7. 16. 아침에 위 수정된 내용의 신문(이하 수정판 신문이라 함)을 발행, 배포하였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신문 보도 전에 수 차례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보도 시점까지 논의했으며 보도 후에는 직접 만나 문구 수정 부탁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진이 마음에 든다는 말까지 하며 위 기사 작성에 적극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만들어 스포츠투데이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나 기자회견보지에 배포하였고, 1999. 7. 22.에는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 : 갑 1~3, 5~7, 10호증, 을 1, 10, 11호증의 기재, 증인 김승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PC통신에 오른 헛소문을 소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간지에 그대로 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위 PC통신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신문 독자들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으로 미루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의 비밀 영역 또는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함부로 보도하여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위 기사가 나간 후에도 원고가 마치 위 기사 게재에 동의하여 그 작성에 협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까지 꾸며내 이를 언론 기관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원고 인격에 대한 평가까지 저하시켰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간 연예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의 전화를 거절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전화 내용을 기사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가 있거나 인터뷰에 응한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보도에 원고의 승낙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위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원고와 같이 널리 알려진 공인에 대한 소문은 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공인의 부정 행위나 도덕성,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므로 일반인들이 그 사람의 사회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로 삼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도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생활에 관한 자유의 침해

개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이른바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 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은 받아야 한다. 나아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더더욱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확인 절차는 모두 거쳤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오랜 동안의 방송 활동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원고의 경력이나 방송 활동 사항은 일반에 공개된 영역 혹은 원고의 사회 활동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보도에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은 원고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배부전이 퍼뜨린 원고에 대한 소문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원고는 위 소문이 일간지 등 언론 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속한 신문사를 통하여 위 소문을 보도한 것은 명백히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고의 보도에 따른 원고의 명예훼손 통신 시설과 개인 전산 장비가 발달하기 전

.....

에는 개인은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신과 개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그 저변이 확대되어 누구라도 쉽게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능동적인 정보의 공급자가 될 수 있게 된 오늘날, 개인은 각자가 생산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정보와 지식의 교환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보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확산되어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 또한 많아졌다.

한편, 일반인들은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정부 기관이나 공인된 언론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검증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 오류가 적다고 믿게 되고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보다 쉽게 그 정보를 신뢰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더욱이 독자층을 두루 갖추어 판매망이 전국에 이르는 일간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비하여 그 속도와 범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보통의 경우 개인이 홈페이지나 PC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른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머지않아 이용자들의 관심은 식어 버리고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사라져버려 공인되지 않은 '소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생명을 다한다. 그러나 만일 그 '소문'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 기관에 의하여, 그것도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가진 일간지에 그 내용이 게재되어 퍼진다면, 그 '소문'의 피해는 PC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초판과 수정판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이미 배부전이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한 허위 사실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언론이 기사를 게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통상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기사의 배치, 기사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 인상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가 작성하여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면 배부전이 퍼뜨린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우선 초판 신문 기사를 보면, 1면에 원고의 얼굴 사진이 크게 실리고, 제목으로 "사이버 테러, 백지연 모함", 부제목로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옆과 위 사진 사이에는 "미주 통일 신문사 (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제목이 붙은 배부전의 홈페이지 사진이 들어가고, 그 아래 "고통의 '白夜(백야)' . . . 백지연 본보에 최초 고백"이라는 또 다른 부제목이 붙어 있는바, 기사의 제목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미주 통일 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신문사가 원고에 대한 폭로성 기사를 냈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 고백'을 하여 그동안 밝히지 않은 숨은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면서 기사 내용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임을 은연 중에 암시하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기사의 본문에는 "문제는 지난 10일 'BAEBUJUN'이란 통신 ID로

‘미주 통일 신문사’ 배부전 발행 겸 편집인인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 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낳은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지연’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미주 통일 신문사’가 실제로 있는지, 배부전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글을 다루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위 ‘미주 통일 신문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에게 ‘미주 통일 신문사’에 소속된 발행 겸 편집인인 배부전이 원고의 이혼 배경을 취재하여 알아낸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인상은 수정판 신문에서 1면 기사의 크기를 조절하고 위 홈페이지 그림을 빼고 부제목을 고쳐 어느 정도 약해지기는 했으나, ‘미주 통일 신문사’와 배부전에 대한 본문 기재 내용은 그대로여서 초판 신문의 전체 인상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PC 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한 ‘소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 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보도 후의 정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위 보도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했으면서도 원고의 동의나 인터뷰 없이 보도를 한 것처럼 피고와 소속 신문을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로 만들어 스포츠투데이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나

기자 협회보지에 배포하였고, 1999. 7. 22에는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보도 자료 배포와 방송 인터뷰 내용은 비록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 때문에 원고는 인격에 대한 사회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간 연예 신문 기자인 피고의 전화를 거절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위 보도로 원고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실시한 법리와 사실 인정에 반하고,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때에는 언제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할 뿐더러, 본인은 원하지도 않은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보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위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혼 배경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원고의 반응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는 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계몽의 효과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일간 연예 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피고가 소속된 신문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의 확인 노력의 정도, 위 기사의 내용, 기사가 신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보도 후 피고가 취한 태도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는 1억원이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의 스포츠투데이 신문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2.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별지〉

제1판(초판)신문
제목 부분 : 백지연 모함, 이혼 배경 관련 사

이버 테러, 인터넷에 헛소문에 운다, 인터넷 신문 보도(그림), 고통의 '白夜' 백지연 본보에 최초 고백

기사내용 : 고통의 '백야' 백지연 본보에 최초 고백

앵커우먼에서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지연(35)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BUJUN' 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배부전 발행 겸 편집인인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했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낡은 아이가 모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지연'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야'가 '어'로 와전되는 말로는 100% 진실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해온 그녀가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15일 새벽 전화통화로 이뤄진 백지연과의 일문일답이다.

-PC 통신에 오른 글을 보았는가.

▲ 통신에 오른 글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바로 알았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 데 너무 억울하다.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달라.

▲ 소문은 120% 조작된 것이다. 조금도 거리낄 이유는 없다. 나는 당당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이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 었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맞선다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게 없다고 여겨졌다. 주변에서도 소송을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 조배숙 변호사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 달리해 통신에 오른 글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아직도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문이지만 이같은 소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 글썸 아마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으로서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것만큼의 대우는 받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여자의 뒷 배경에는 꼭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류가 너무나 섭섭하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나겠지만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다. PC통신 게시판의 역기능이 극에 달한 지금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제6판(수정판)신문

제목 부분 : 백지연 모함, 이혼 배경 관련 사이버 테러, 인터넷에 헛소문 난무 "용서 못해," 고통의 '白夜' 백지

연 본보와 전화통화

기사내용 : 앵커우먼에서 지금은 MBC '백지연의 백야'를 진행하며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지연(35)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BUJUN'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배부전 발행·편집인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 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 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그녀의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소문의 주인공을 '백지연'이라고 지목. 연일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아'가 '어'로 와전되는 말로는 100%진실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해온 그녀가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평소의 그녀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였던 백자연과 15일 새벽 전화통화로 이뤄진 일문일답이다.

-PC 통신에 오른 글을 보았는가.

▲ 통신에 오른 글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바로 알았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말들어냈는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달라.'는 질문 내용 삭제함) 소문은 120% 조작된 것이다. 조금도 거러낄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도 통탄스럽다. 내 자신에 대한 예기라면 참고 넘기겠지만 아이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아이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렇다면 허위 조작에 대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소문에 맞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또 글을 올린 사람이 예전에도 떠도는 루머를 함부로 올렸던 장본인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악용하고 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 변호사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다.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같은 소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 글썸, 아마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것만큼의 대우는 받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여자의 뒷 배경에는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류가 너무나 안타깝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나 이겠지만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다. PC통신 게시판의 역기능이 극에 달한 지금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남의 소중한 아이까지 연관시켜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상식과 건전한 이성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믿고 싶다. □

편집 2

사실에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터 잡은 것이거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000년 2월 2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이훈규 본부장 및 수사본부 소속 검사 11인이 조

선일보와 정중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 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

고들에게 각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실의 주내용이 휴대폰 통화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며, 당시 위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실의 게재, 배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특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각 사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전제 사실을 간접,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실에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이거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999년 7월 2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과정 중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강희복과의 휴대폰 통화내용과 관련, 이들이 말뚱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였다. 이를 취재한 관련 기사를 참작하여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피고 정중현은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

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 사 건 : 99가합77460 손해배상(기)
 원 고 : 1. 이 훈 규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 22동 305호
 2. 이 귀 남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0의 301
 삼익아파트 1동807호
 3. 주 철 현
 서울 서초구 잠원동 56의 3
 잠원한신아파트 4동 503호
 4. 길 태 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1
 파크타운 대림아파트 103동 304호
 5. 윤 석 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208동 809호
 6. 김 필 규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106동 201호
 7. 조 은 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의 15
 서광골든빌라 301호
 8. 최 석 두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아파트 111동 802호
 9. 한 무 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삼성아파트 1027동 604호
 10. 김 경 석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의 34

한신 로얄아파트 1동 403호

11. 이 광 형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1

무지개마을 104동 504호

12. 신 경 식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의 5

한양아파트 2동 103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Ⅲ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2. 정 중 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른.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0. 1. 26.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2000. 2. 2.까지 연 5%,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썬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썬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들이 각 연대하여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썬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설'란에 별지 제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썬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 수사 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훈규는 본부장, 원고 이귀남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회사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중헌은 피고 회사 논설위원이다.

나.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형구는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 단체, 그

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 본부를 구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형구와 강희복의 집과 대검찰청 공안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진형구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 결과 위 사건은 '진형구가 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형구를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수사 과정에서 진형구가 강희복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사 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 전화기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 전화기를 강희복에게 전하였고, 진형구와 강희복이 그 휴대폰으로 수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마. 한편, 원고들은 위 수사 본부에서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브리핑을 가끔 하였는데, 1999. 7. 29.에는 강희복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형구가 강희복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 거야...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 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 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 조정은 조폐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다.

바.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

사 소속 이종혁 기자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통화 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사. 피고 정중현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 보도를 참작하여 별지 제1 사설 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 절차,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별지 제1 사설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 이훈규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법조 출입 기자에게 위 사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고 정중현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절차를 거친 다음 제목만 달리하고 내용은 비슷한 제2 사설 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내부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별지 제2 사설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을 1의 4.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피해자의 특정과 사실의 적시

살피건대, 언론 보도로 말미암아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

하고,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각 사실의 주된 내용이 진형구와 강희복 사이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위 파업 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위 각 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파업 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 파업 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특정된다.

다음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각 사실은 '검찰의 감청 의혹' 또는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① 검찰은 통화 내용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 인물도 강, 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혔다는 표현, ② 검찰이 전날까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태도를 바꾸어 통화 내역을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③ 검찰이 강씨 진술을 진씨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발표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일반 독자가 위 각 사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각 사실의 제목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사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전제 사실을 간접, 묵시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각 사실은 비록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각 사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2) 명예훼손

또한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형구와 강희복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그러한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지 않은 채(심지어는 원고 이훈규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위 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들이 위 각 사실에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이거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사실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각 사실은 검찰이 당시 사회

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휴대폰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위 각 사실 중 ① 검찰이 통화 내용은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 인물도 강, 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힌 사실, ② 검찰이 전날까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태도를 바꾸어 통화 내역을 공개한 사실, ③ 검찰이 강씨 진술을 진씨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발표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며(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 회사나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들인데,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들만으로 위 사실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사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듯한 전제 사실을 담고 있어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점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다시, 위 각 사실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 사실에 터잡아서 위 각 사실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배포하였고, 위 각 사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이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

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터잡아 볼 때, 피고들은 다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위 각 사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사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강희복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형구가 강희복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 거야... 알겠지.”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브리핑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위 각 사실의 다른 전제 사실에 대한 진실이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여러 사실들을 부당히 더한 다음 그러한 여러 사정을 합쳐 볼 때 원고들이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위 각 사실을 작성, 신문에 게재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각 사실 내용이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전제되는 중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위 각 사실이 게재된 신문이 배포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각 사실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위 각 사실의 신문 게재 시점과 신문 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원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된 크기, 게재 면 수,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 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다. 간접 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 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썬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2000. 2. 2.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별지〉

제1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1999. 7. 31.자 신문에 '검찰의 감청 의혹' 또는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이른바 조폐 공사 파업 유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형구 전 대검 공안 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사이의 휴대폰 통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진형구 전 대검 공안 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사이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였다거나 감청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일보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위 파업 유도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제1 사실

검찰의 감청의혹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됐던 불법 도청-감청 의혹 문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통화내용이 강씨 진술이라며 감청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황묘사나 대화의 구체성으로 미루어 볼 때 의심을 받을 여지는 다분하다. 우선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또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도 석연

.....

치 않은 대목이다. 강씨 진술을 받아 적었다면 1인칭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다. 한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 거야... 알았지” 할 정도로 상세히 기술됐다는 것은 웬지 자연스럽지가 않다. 더욱이 강씨의 일방적 진술을 진씨의 직접 화법으로 발표한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온당치 못한 처사다.

우리는 검찰이 진씨의 전화통화를 감청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또 수사상 불가피했다고 해도 불법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통화내역과 검찰의 처신을 보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통화내역이 이미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청과 감청은 법률이 정한 특수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나 누구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보급대수 1000만대를 넘어서 국민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마저 도청된다면 이는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후 정부는 이례적으로 ‘불법감청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광고를 각 신문에 실었다. 여-야도 도청과 감청 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작업에 나섰으나 공청회만 거친 상태다.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도청을 100%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최근에 나온 디지털휴대폰은 도청이 안된다고 선전하지만 인간이 만든 이상 불가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개발된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간 통화 감청장비가 국내에 도입돼 정보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이번 수사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결국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제2 사실

휴대폰도 도청되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진 후 진형구 전 대검 공안 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말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휴대폰 통화를 했다는 내역이 검찰에 의해 공개되자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씨는 감청을 우려해 제3자를 통해 강씨에게 핸드폰을 전달하고 비밀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10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은 “혹시 휴대폰도 도청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통화내용은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인물도 강-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씨가 강씨에게 핸드폰을 사 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두 사람의 통화내용이 강씨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감청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부연 설명이 행여 일반에게 휴대폰 통화도 엿들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말을 사실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공개과정의 처신과 통화 내용의 구체성 등에서도 세간의 의혹을 살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욱이

강씨의 진술을 진씨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발표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감청은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에는 도청과 감청에 대한 공포감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도청-감청문제가 논란되자 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과거 정권에 대한 피해망상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례적으로 '불법감청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광고를 각 신문에 실었다. 여-야도 수

사기관의 감청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작업에 나섰으나 아직 공청회만 거친 상태다.

지금 휴대폰은 1000만대 이상이 보급돼 국민들의 생필품이나 다름 없다.

만약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대폰 통화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도청된다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최신 디지털 휴대폰은 도청이 안된다고 선전하지만 100% 도청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이미 국내에도 휴대폰간 통화 감청장비가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반사적으로 도청을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

미국판결

피체포자의 주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가치로서의
언론자유 침해가 아니다

Los Angeles Police Dept.(LA 경찰국) v. United Reporting Publishing Corp.
미국 연방대법원 1999. 12. 7.판결

판시요지

체포를 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피체포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법률로 제한한 캘리포니아 주법 (Cal. Govt. Code §6254(f)(3))에 대하여, 한 출판회사(United Reporting Publishing Corp.,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그 위헌성을 제기한 소에서 지방법원은 이를 위헌이라 판결한 약식판결을 인용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도 위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주정부가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전달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포경력자의 정보를 얻으려는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는 거부되었고, 이 사건은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주정부가 거부한 것일 따름이다.

또한 관례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위 법 조항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 회사가 진술한 나머지 주장들 가운데 위 항소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다룰 길이 열려있다.

소송경과

이 사건 회사는 최근에 체포된 개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변호사, 보험회사, 마약 및 알콜 중독자 상담원, 운전학교 등과 같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Cal. Govt. Code §6254(f)(3)에서 피체포자의 주소 제공을 주정부에게 요구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요구가 위 조항이 열거하는 다섯 가지 목적 중의 하나를 위한 것이고, 주소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물건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였다.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건회사는 이 같은 정보를 LA경찰국(이하

‘상고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의 각종 법률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입수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선언적이고 임시적인 가처분적 구제를 구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중국적으로 위 개정조항이 그 자체로서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약식판결을 선고하였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위 판결을 지지하면서 위 수정조항이 상업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는 위 법 Cal. Govt. Code §6254(f)(3)에 대하여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적어도 법 조항이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조항은 어느 개인의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순히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어느 개인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문제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에게 만약 그가 피체포자들의 주소를 제공받기 원하면 그로 하여금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함이 없이 피체포자들의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법 자체에 대한 무효 주장은 그러한 주장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예를 들면, 이 사건 회사의 잠재적인 고

객들)에 대한 법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인 한 판례법에 따라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위험성이나 혹은 금전적인 지원이 중단되는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장은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적절하게 진술되고 유지된다면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 판결은 파기한다.

판결이유

Cal. Govt. Code §6254(f)(3)은 일반 대중이 피체포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그러한 요구가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다섯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주소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물건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은 기간을 정함이 없이 위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항소심도 위 법조항이 상업적인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판결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문제가 된 위 법 조항이 그 자체로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상고인인 LA경찰국은 피체포자들에 관련된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피상고인인 이 사건 회사는 사적인 출판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체포된 개인들의 이름과 주소들을 변호사, 보험회사, 마약 및 알콜중독자 상담원, 운전학교 등과 같은 그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위 법 조항을 개정. 1996. 7. 1.부터 일반 대중의 피체포자 및 범죄피해자들에 관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였다.

개정 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하여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위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즉, “공공기관에 의해 체포된 모든 개인들의 현 주소와 범죄피해자의 현 주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자는 그러한 요구가 학문적, 저널리즘적, 정치적, 정부차원의 목적이거나 혹은 인가받은 개인 탐정의 수사상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한 후 진술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의 주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하여 얻어진 주소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개인 혹은 집단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것 역시 위증의 처벌을 전제로 진술하도록 한다” Cal. Govt. Code §6254(f)(3)(West Supp. 1999).

위의 법 개정 이전의 같은 법 §6254(f)(1)과 (2)는 주와 지방법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체포당시 상황뿐 아니라 그 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모든 개인들의 이름, 직업, 외모, 생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정된 §6254(f)는 오직 피체포자들의 주소에 대한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된 위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는 43 U.S.C. §1983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조항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선언적이고 가처분적 구제를 구하였다.

위 개정조항이 발효되던 날, 이 사건 회사에 따르면 “피상고인(이 사건회사)의 피고용인들이 Code §6254(f)(3) 조항에 따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인과 다른 공공기관들은 피상고인의 주소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가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선서하에 그 자신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그 조항에 정하는

목적들 중 하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주소정보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법원이 지적하기까지는 진술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기록도 없다 (Code §6254(f)(3) 참조).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청구를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지방법원은 위 잠정적 금지명령을 발하였고, 며칠 후 사전 가처분을 발하였다. 그리고 약식판결을 청구하여 그것은 인용되었다. 그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의 청구를 위 수정된 Code §6254(f)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United Reporting Publishing Corp. v. Lungren).

항소법원은 이러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United Reporting Publishing Corp. v. California Highway Patrol). 법원은 위 법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가치로서의 상업적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에서 Central Hudson Gas & Elec. Corp. v. Public Serv. Comm'n of N.Y. 사건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장된 바와 같은 피체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는 주정부의 이익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Code §6254(f)(3)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저널리즘적,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수사목적 등을 제외한 수많은 예외가 위 조항을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어떤 사람의 이름, 범죄, 주소가 지방지에 보도되는 것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변호사, 약물오남용 상담자 혹은 운전 학교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보다 프라이버시에 더욱 모욕적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예외

들이 피체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정부적 이익을 “손상시키고, 반작용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항소법원은 이 사건 회사를 지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인용하고 Code §6254(f)(3)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우리는 위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Code §6254(f)(3)에 대하여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회사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의 주된 주장은 Code §6254(f)(3)가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현재도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떤 자에게 어떤 법 조항이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는 그 조항이 잠재적으로 범정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들에게 위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New York v. Ferber) 전통적인 원칙이다.

이 전통적인 원칙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외가 바로 어떤 법이 포괄적인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위헌이라고 제기되는 경우이다. “적어도 어떤 법이 언론의 자유…혹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이를 박탈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행위가 상생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의 요건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이 부당하게 광범위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Gooding v. Wilson). “이것은 어떤 사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만일 그러한 권리행사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권리행사를 주저할 것이므로 필요한 것이다”(Gooding v. Wilson, Thornhill v.

Alabama).

예를 들어 Gooding 사건에서 피고는 베트 남전에 반대하여 육군성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그룹들 중의 하나였다. 경찰과의 대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Gooding은 “평온을 깨트리는 모욕적 언사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Thornhill 사건에서는 피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합법적인 기업의 영업을 방해, 지연시키거나 간섭, 침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장이나 회사, 단체 등의 영업소나 업무장소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법 조항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형사적인 기소의 위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이 없는 사건에서도 적당한 경우 법 조항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자에게 어떤 법 조항이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는 그 조항이 잠재적으로 범정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들에게 위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New York v. Ferber)는 전통적 원칙에 대한 예외인 것이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우리 헌법 질서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즉, 헌법적 권리의 개개의 성격,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신중한 한계의 설정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헌법 원칙의 발전에 필요한 비슷한 사건들에만 치중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판단들에 연관된 자료들에 관하여 현실적인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그러한 주장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하여 무효(overbreadth doctrine)’라는 원칙은 상시적으

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어떤 법이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은 그 광범위한 영향들 때문에 위 원칙은 극약처방에 해당하고, 따라서 우리는 위 원칙의 적용을 주저하고 그 적용은 항상 최후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어떤 법이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은 전통적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인한 작용은 처음에는 제한된 것이겠지만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서 이제는 주정부가 재제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순수한 “언론”의 자유에서 “행위”,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행위”(비록 그것이 표현에 불과하다하더라도)로 그 범위를 옮겨가는 것과 함께 약해지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Code §6254(f)(3)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상고인은 문제가 된 그 조항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언론의 자유에 연계된 어떤 사람의 권리도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경찰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적어도 문언 그 자체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상고인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 이 사건은 어느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건이 아니다

(Rubin v. Coors Brewing Co.). 캘리포니아 주 법은 단순히 피상고인에게 만약 그가 피체포자들의 주소를 얻고 싶으면 그로 하여금 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피상고인은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소정보에의 접근

은 거부되었다. 법 조항 그 자체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단지 주정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함이 없이 피체포자들의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Houchins v. KQED, Inc.).

이 사건 회사의 법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은 그러한 주장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예를 들면, 피고상고인 회사의 잠재적인 고객들)에 대한 법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인 한, 관례법에 따라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위험성이나 혹은 자금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피상고인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고는 여타 다른 부담이 없이 스스로 위 법에 따라 정보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법 조항이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은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박탈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Bates v. State Bar of Arizona).

그러므로 항소법원이 Code §6254(f)(3)가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가 원판결유지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며 주장한 다른 주장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인용되지 못하였고, 재심리과정에서 다시 항소법원에 적절히 주장, 유지된다면 그 심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er, Vol. 28, 1041-1050

번 역 : 채동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

프랑스 판결 1

명예훼손적 표현이 반드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내지 특정인을 지명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Sociétés Les Editions du Jeudi

파기원(Cour de cassation) 1999년 6월 10일 판결

사실관계

주간지 '에벤느망 뒤 즈디(Evènement du Jeudi)'지는 1995년 5월 10일자에 세르즈 포베르(Serge Faubert) 씨가 작성한 "극우파 학생", "신의 과격집단을 자처하는 영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는 "방위연맹단(GUD, Groupe Union Défense)이라 자칭하는 이 단체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단체설립이 벌써 27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사스(Assas, 역사 주 : 이는 파리2대학교 법학부의 소재지를 지칭함)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이들이 주창하는 이데올로기는 파시즘이고, 선호하는 무기는 철봉이다. 카톨릭 역사에 심취해 있으며, 우파정치의 진정한 양성소로서 매우 과격한 양태를 띠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되고 있다.

"방위연맹단은 1983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저질렀다. 그것은 우파의 자극에 따라 파리2대학교 법학부 학생들이, 1983년 봄 알랭 사바리(Alain Savary) 당시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등교육개혁안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뛰쳐 나왔다. 그들의 시위목적은 분명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권좌파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1968년 5월에 일어났던 좌파학생운동에 대한 반동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시위과정에서 '기다려라, 우리는 너희를 정복하였다. 우리는 미테랑 대통령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1983년에 전개된 이와 같은 학생시위의 배후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방위연맹단이 자리잡고 있다. 이 당시 시위의 중심적 위치에 있던 아르노 뤼탱(Arnaud Lutin)이라는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정부에 대한 적대적 행동에 호의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철봉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예스, 예스, 예스, 노, 노, 노'라는 구호를 외쳐대면서 그들의 깃발을 흔들었다. 리샤르드 앙토니(Richard Antony), 마크 및 브루노 텔렌느(Marc et Bruno Tellenne)는 이번 가두시위의 곡예사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오늘날 칼 제로(Karl Zéro) 및 바스티 드 코흐(Bastile de Koch)라는 가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모작그림 전문가로서 잘롱(Jalon)그룹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에 마크 텔렌스 및 브루노 텔렌스 씨는 ‘에벤느망 뒤 즈디’의 발행인인 베르(Verret) 씨와 이 잡지를 발행하는 즈디 에디시옹회사(la société Les Editions du Jeudi) 및 기사작성자인 포베르(Faubert)씨를 상대로 1881년 7월 29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항소이유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

원고는 1881년 7월 29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기초하여 위 기사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나 신체에 대한 명예나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적 주장이나 비난은 명예훼손이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이나 비난이 직·간접적인 것과 관계없이 공표하는 것은 처벌된다. 비록 이와 같은 공표가 의심을 나타내는 형태나, 사람이나 신체를 분명하게 지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설·고성·협박·서간이나 인쇄물, 플래카드나 광고물 등의 방식을 통해서 동일성이 식별될 수 있을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에 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모욕이나 욕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모욕적인 표현은 불법행위가 된다.

판시사항

항소법원은 원고인 마크 텔렌스 씨와 브루

노 텔렌스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정치단체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념상의 문제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적 토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다. 마크 텔렌스(일명 칼 제로) 씨나 브루노 텔렌스(일명 바스티 코흐) 씨는 이 사건 기사에서 방위연맹단이 선동하여 일으킨 바 있는 과격한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곡예사 정도로 비유적으로 묘사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나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분명한 적시도 없었다.”

그러나 생각건대 문제의 기사가 정당의 역할이나 정치이론에 대하여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원고들이 방위연맹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바로 연예활동을 하는 원고들의 직업예술가로서의 명예나 평가에 대한 침해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에 이 사건을 항소법원에 파기환송한다.

해설

언론보도가 개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여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명되고 지칭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지명되고 지칭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표가 의심을 나타내는 형태나, 사람이나 신체를 분명하게 지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설·고성·협박·서간이나 인쇄물, 플래카드나 광고물 등의 방식을 통해서 동일성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출판의 자

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이다.

이 사건 항소법원의 판결에서는 원고인 마크 텔렌느 씨와 브루노 텔렌느씨가 방위연맹단이 주도한 과격한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곡예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파기원)은 이 사건 기사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반드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내지 특정인을 지명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최고법원이 언론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더욱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9년 제8(1999, no 165), p.140.

프랑스 판결 2

공판전 검찰수사기록을 일부 재구성하여 보도했을 지라도 형사절차와 관련된 기록문서의 공표를 금지하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S. July et autre

파기원(Cour de cassation) 1999년 6월 22일 판결

사실관계

파기원(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살펴보면, 1996년 10월 28일자 종합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지는 "칼에 찢린 사랑"제하의 기사에서 젊은 여인의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피의자에 대한 검찰

의 구술신문 및 조사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요지를 재구성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이 조사 내용의 일부인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 결론 부분도 게재하였다. 이에 검찰은 리베라시옹의 발행인인 세르즈 쥐리(Serge July) 씨와 이 기사의 작성자인 파트리시아 투랑쇼(Patricia Tourancheau)씨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1981년 법률 제38조 제1항에 기초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제38조 제1항은 “공개된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기 전에 공소장 및 기타 모든 경죄 및 중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기록문서를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8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10조, 1881년 7월 29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8조 형사소송법 제593조에 기초하여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항소법원에서는, 동 법률조항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타인의 명예의 보호와 사법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규정이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범죄기록문서의 공표를 행한 리베라시옹의 기사는 유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한 기사를 특정화시키기 위하여, 범죄수사 기록의 요지문이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게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의자 중 1인에 대하여 기자가 질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형사기록문서와 동일한 것이었다.” 1881년 7월 29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모든 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비록 그것이 재생산된 것이거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항소법원의 판단은 정확하며, 항소인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한다.

해설

이 사건은 공판전 검찰수사기록을 통하여 입수한 범죄관련보도로 인하여 피소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언론의 범죄관련보도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실명보도는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유죄의 확정판결시까지 보도할 수 없다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언론보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게 된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재판공개 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09조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곧 공개된 재판에 관련된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일용 합헌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6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

고 있다.

하지만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6. 1. 28. 85다카1973). 또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보도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기사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민사지법 1993. 12. 6. 93카기3254).

또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 아니된다는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재판보도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관의 독립-특히 사회 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인자인 바, 언론기관의 보도는 판사에게 예단을 주거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의 정신을 고려하여 신문윤리강령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에서는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하여야 한다”라는 자율규정을 두고 있다.

생각건대 한국에서의 범죄보도 특히 수사기록관련보도는 그것이 공개재판을 통하여 제기된 것이냐의 여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사건 관련 법 조항과 법원의 판단은 한국에서의 수사기관의 기록보도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9년 제8호(1999, no 165), p.139.

번역 및 해설 :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

영국사례 1

수감된 범죄자의 가족이 작성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없는 기사내용을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 받아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내용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지 1999년 6월 9일자의 Victoria Aitken 씨가 작성한 “나의 아버지는 너무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James Barlow 씨는 보도실천강령 제16조(기사에 대한 대가의 지급 : Payment for articles)를 위반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되었다.

Aitken 씨는 위증죄와 재판과정을 악용한 죄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또한 유죄판결이전의 여러 사건들과 그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미친 영

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편집장은 기사를 작성한 자 역시 그 범죄의 희생자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결코 범죄를 미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신청인의 불만에 반박했다. 또한 Aitken 씨가 작성한 기사에는 언론이 범죄자 가족을 괴롭히고, 언론보도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들을 담고 있어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결

위원회는 제16조에 해당되는 이전의 평결들을 기초로 4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그 기사는 공익적인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가? 둘째, 정보를 얻는데 대가를 지불했는가? 셋째, 결과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공중에게 유용한가? 넷째,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졌는가? 위원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신문사가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문제의 기사는 분명한 공익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대신에, 그 기사는 범죄자 친인척간 누군가에 의해 쓰여질 법한 범죄가 범죄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 작성자인 Aitken씨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 고통받는다는 사실도 공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범죄자 가족들이 언론의 조사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들을 얻는데 따른 지불이 필요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다른 신문사가 Aitken 씨에게서 정보를 얻었지만 그녀에게 적·간접적으로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았다.

셋째, 그 기사속의 Jonathan Aitken 씨의 범죄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정보나 관점도 유용한 것이 아니었다. 기사는 당시의 기사 작성자 자신의 느낌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넷째, 적어도 Aitken 씨가 이 지불로 인해 이익을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범죄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이전의 경우와 서처럼, 위원회는 기사에 대한 대가가 정보제공자에 대한 순수경비의 지급이었던지 확인하였

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신문사가 지적한 것처럼 범죄의 희생자인 Aitken 씨에게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도실천강령의 규정들은 적용되었다.

신문사는 기사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해 그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또한 왜 지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보가 소개되었는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그 불만신청을 수용하였다. □

었다.

신청인은 이 기사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 제10조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신문사는 사진들을 프리랜서 사진작가로부터 받았으며, 강간범의 “별난 생활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신문사는 신청인이 사진 찍히는 것을 알았으며 포즈 취하는 것에 행복해 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보도실천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평 결

위원회는 편집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했으나,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그런 개인적인 사진을 사적인 것으로 남겨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신청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공익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사과문을 발표하겠다는 제안은 불충분한 구제책이라고 평결했다. □

영국사례 2

범죄자의 여자친구인 신청인의 사진과 신원을 공표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내용

‘데일리스타(Daily Star)’지가 1999년 5월 21일 “Bodmin의 짐승”이라는 제하의 기사 사진과 사진설명(caption)에서 신청인의 신원을 공표한 것이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와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불만은 수용

되었다.

기사는 강간범 Richard Baker 씨에 대한 것으로 그와 관계가 있는 수많은 여성사진들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 중 하나가 가슴을 드러낸 신청인의 사진이었으며, 사진설명에는 그녀의 이름과 거주지를 밝히고, 그녀가 Richard Baker의 여자친구라고 언급되어 있

호주사례

살인사건 기사 표제에 사이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켰다고 불만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호주신문 평의회는 '헤럴드선(The Herald Sun)' 지가 한 여성의 잔인한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 헤드라인에 '사이코(psycho)'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신건강법률센터가 제기한 불만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정신질환(psychiatric disability)을 이유 없이 강조하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편지가 거부당했다는 부분은 수용하였다.

정신건강법률센터(the Mental Health Legal Centre Inc.)는 '사이코(psycho)'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데 '헤럴드선'지의 Psycho Knife Killer라는 표제는 정신질환자는 폭력적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부정적으로 연상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하였다.

'헤럴드선'지는 기사 어디에서도 살인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였다. 또

한 사이코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살인자의 정신적 상태보다는 오히려 "야만적인", "광기어린"으로 기술되어진 "그 살인사건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코라는 단어는 무시무시한 나이프 살인사건을 다룬 같은 제목의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의 연상으로 인해 행동의 특성을 전달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평의회는 사이코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몇몇 독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잘못된 스테레오

타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평의회는 어떤 단어의 사용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신문사의 단어사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가 보도되고 난 5일 후, 정신건강법률센터는 사이코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편지는 보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편지는 5주 후,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한 반박내용과 함께 돌아왔다.

신문평의회는 통상 보도 내용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기사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할 때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정신건강법률센터는 즉각 그같은 행동을 취했으나 그 노력이 헛되어 되고 말았다. □

미국사례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없이 공적 기록에 의존하여 편향적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

사건배경

1998년 2월, Roy Carlson 씨(이하 '신청인')의 가족 소유인

Budget Towing사에서 Mary Carlson 씨가 성추행(sexual harassment)을 주장하면서 신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

었다. 1998년 9월에 양측은 그 사건을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법정 밖에서 해결을 보았다.

1999년, 신청인은 Savage시의 시장 후보가 되었다. 신청인의 상대후보이자 현재의 시장인 Rob Fendler 씨의 전직 선거운동 책임자인 Tom Gould 씨는 신청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청인과 관련된 그 고소장을 들춰낸 다음, 신청인이 시장으로서 성추행을 주장한 Mary Carlson 씨가 고소장에서 묘사한 방식대로 시 행정을 본다면 Savage시는 많은 회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Savage Pacer지 편집장에게 그 사건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불만내용

신청인은 기사가 편파적(one-sided)이며 공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소송이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나는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폭로성의 그런 가혹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기사는 유권자와 공중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고소장을 인용한 기사내용은

Budget Towing사가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작업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내가 대표하는 그 회사를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다. 회사는 지역내 상위 1%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청인은 현직시장이 Mary Carlson 씨에게 그 기사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 기사가 보도된 후, 신청인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선거활동을 하였을 때, 여성들이 그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심의내용

언론위원인 Monika Bauerlein 씨는 공적 기록(the public record)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Groeneveld 씨도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자세히 기술하였고 Budget Towing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서류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그것은 손쉬운 저널리즘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자세는 기사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 맡긴 것이

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Shelby 씨는 “이 보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Mary Carlson의 친구들은 “그녀는 지옥을 통과해 갔고, 출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했을런지 모른다. 공적 기록에 없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일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취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되었다.”고 말했다.

언론위원인 John Kostouros 씨는 “정보원은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원이 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 관련 부분을 떠나, Budget Towing사의 작업환경에 대한 보도내용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언론규범에 따라 조사 및 취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평 결

1999년 10월 26일, Savage Pacer지가 신청인에게 불공평했는지에 대해서 미네소타신문평의회는 11 : 3으로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하였다. □

위원회소식

2000년도 정기 위원총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0년도 정기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2000년도 운영위원회 위원과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

위원장. 송정재 부위원장, 유원규, 김재욱, 김학수, 나무석, 조균상, 김현구, 신용준 위원

◆ 시정권고위원

위원장. 서정우 부위원장, 최선열, 송선무, 최준근, 신진근, 김재덕 위원

개정 선거법, 통합 방송법 공포·시행에 들어가

1999년 12월 28일 새 방송법이 통과되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었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하여 방송법 체계를 정비한 새 방송법은 기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 분산되어 있었던 반론보도청구 관련 조항을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에 규정하고 있으며, 반론보도청구 대상주체를 방송사업자라 규정하여 전 광판방송도 반론보도청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2000년 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조항도 일부 개정되어 후보자와 언론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법에는 후보자와 언론사간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언론사 대표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헌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기사를 자체 심의하고 국회의원 임후보자가 신청한 시정요구사항 및 반론보도 청구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시정요구사항과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사무처와 지방에 설치된 10개 지역사무소에서 접수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활동할 선거기사심의위원 9명을 선거법 규정에 따라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며, 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위원장에 이창구 변호사, 부위원장에 윤석홍 단국대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이창구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추천)
- 부위원장 : 윤석홍 (단국대 언론학 교수, 한국언론학회 추천)
- 위원 : 송호빈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한나라당 추천)
- 남시욱 (진 문화일보 사장, 한국신문협회 추천)
- 이시현 (진 동아일보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추천)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별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추천)

안영도 (변호사, 대한변협 추천)

고혜련

(한국여성언론인협회 이사, 자민련 추천)

유선영 (변호사, 새천년민주당 추천)

*고혜련 위원은 3.20.자 위촉(3.14.자로 사임한 이진우 위원 후임)

신임 중재위원 위촉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3월 9일 법원인사이사로 공석이었던 전국 11개 중재부 중재부장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중재부장과 지난 1월과 2월에 새로 위촉된 중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중재부 송경자 전 무등일보 편집국장
1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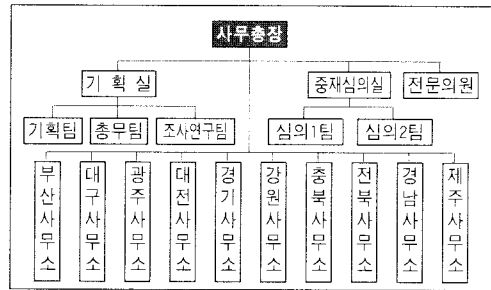
서울제4중재부 윤기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대전중재부 이문욱 전 대전광역시 가정복지국장
이상 2월 14일자

서울제4중재부 이상훈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이진성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중재부 최진갑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중재부 최우식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중재부 김용일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중재부 한상근 대전지법 부장판사
경기중재부 김만오 수원지법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조해섭 춘천지법 부장판사
충북중재부 허근녕 청주지법 부장판사
전북중재부 방극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중재부 이홍철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상 3월 9일자

사무처 직제 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 15일,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2팀을 신설, 사무처 직제를 2실 5팀제로 개편하였다. 한편 조사연구팀은 중재심의실에서 기획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개편된 사무처 직제표)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기획실장에 김용주 기획팀장을 승진 발령하고, 사무처 직제개편에 따라 2000년 2월 18일 다음과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 기획실장 김용주
- 총무팀장 겸 기획팀장 심영진
- 심의1팀장 장원상
- 심의2팀장 오광건
- 경기사무소장(2급 승진) 이진숙
- 대전사무소장(3급 승진) 강현석
- 전북사무소장(3급 승진) 권오근

이준철 기획실장 정년퇴임

위원회 창립때부터 18년 동안 근속한 이준철 기획실장의 정년퇴임식이 1999년 12월 31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식 위원장은 위원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준철 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준철 기획실장은 국방부, 서울지방방무청, 문화공보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장을 거쳐 문화공보부 기획관리실 사무관으로 재직 중 1981년 위원회 창립과 함께 관리실장을 맡아 초창기 위원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후 중재심의실장, 조사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원지방사무소 이전

강원중재부는 지난 2월 16일 같은 빌딩 6층에서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2층 □

On-Line 중재상담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999년 12월 1일 개설한 인터넷 ON-LINE 중재상담실(www.pac.or.kr)에는 중재 신청과 관련한 많은 문의와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ON-LINE 중재상담실에는 중재신청 절차와 해당 기사의 중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이밖에 위원회의 역할을 오해하여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사항을 개진하거나 신문구독에 대한 불만 제기, 방송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 손해배상이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지는 위원회의 역할과 중재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ON-LINE 중재상담실의 일부 내용을 매호 게재하고자 한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편집자주



언론보도로 유망 벤처기업 도산 위기 직면 !!!

포럼디지털(주)는 2월 12일 언론 보도자료(2월 11일, 금감원자료) 때문에 현재 모든 마케팅 및 경영, IR 등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이 심각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익명의 자료였다고 하나 이미 모든 언론이 실명으로 다루어서 급성장하려는 당사의 사업에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몇개월후에나 나올텐데 어쩌해야 할지 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krhee



귀하는 언론사가 금감원의 발표자료를 실명으로 보도하여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방송법 제41조 등에 의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언론중재신청의 대상은 회사의 이름을 실명으

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가 그 대상이 되며, 공기관의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도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중재 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 및 중재상담

저는 대한적십자사에 근무 중인 의사로서 임상 병리와 전문의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발행된 월간 '병리협보'에 실린 허위기사로 인해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병리협보'는 사단법인 대한임상 병리사협회에서 발행하여 자체 회원에게 배포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물론 등록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번호는 서울라06872, 발행인은 협회장인 안○○입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언론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당해 협회의 회원인 3만명의 임상병리사들이 본인과는 직업상 같이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느끼는 실질적인 명예훼손의 정도와 지속 시기는 일생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고 봅니다.

일간신문이 아닌 단체의 회원신문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중재가 불성립할 경우 제소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hys0107

Q 언론중재신청의 대상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등 정기간행물 및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병리협회> 협회보도 정기간행물로서 중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32-6031로 중재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여 년 전 보도에 대해서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 20여 년 전의 국내 유력 일간신문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 본인 가문 중 한 분에 관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있어서 그 기사의 관련 당사자는 물론 가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본지 1달 이내, 보도된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신청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6개월 전 이전의 보도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소급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사를 바로잡고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imsh

R 중재신청은 중기간행물의동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1월 이내에 알았다하여도 그 사실보도가 있을 후 6월이 경과한 때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허위광고 시정 신청도 되나요?

모 회사 초고속 통신망이 TV광고로는 거의 10M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광고하나, 실제로 1M도 안나옵니다. 사용자들은 이로 인해 분개하고 있고 회사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그대로더군요. 시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zorgi

R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동료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중이나 반론보도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잡지, 기타 간행물, 방송의 사실보도에 의한 피해여야 하며, 광고에 의한 피해는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984년 귀하의 경우처럼 광고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광고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는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Q 유명언론 '○○경제신문' 처벌방안이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장간된 ○○경제신문은 전 기사를 '푸드인포'라는 인터넷 서비스 내용과 일간지의 식품관련 뉴스 기사를 그대로 베껴 만듭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기자들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당시 말란 두달치 임금 역시 받지를 못했지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기사를 바꾸고 있으며 기자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처벌방법이 없을까요? 받지 못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악덕 사이버 언론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인지 기자들 급여나 각종 지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수습 기자는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경리직원과 남자 직원 역시 6개월 이상 월급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수경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을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신문사의 급여문제, 신문제작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언론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내의 사이버기자신고센터 전화 02-734-4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있는지?

저는 피해사례라기 보다는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사 언론사의 고의인 경우와 실수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경우 언론사 자체내규나 법적으로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재 언론의 힘은 아주 크고 그런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이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런 피해가 정정이나 사과만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vietkong



오보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모

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는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배상액산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차별...

안녕하세요?

2000년 2월 17일 모 방송 9시 뉴스에 나온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대학 중에서 장애인을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 신고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서울의 K대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가 있어서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대학에 대해 나왔는데, 유독 지방대라는 이유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대학의 차별화로 인한 지방대 학생들의 손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처럼 서울지역 대학들은 감싸고, 지방대는 대놓고 말해 버리는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기자가 뇌물을 받고 K대는 아니설만 지방의 O대학에서는 뇌물을 안 주어서 학교 이름까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언론은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결여된(서울 지역 대학 이름은 밝히지 않고, 지방대는 이름을 밝힌 점) 보도를 하는 방송사는 즉각 같은 시간대에 다시 방송하여 타 대학의 이름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애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언론의 통일성을 잃어버린 보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글을 보냅니다. 언론의 발전을 위한 한 학생의 행동입니다.

언론의 피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kgenetic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을 제16조 및 제17조, 방송법 제41조 등에 의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 명백히 오보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보도 들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당사자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써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바에 따르면, 보도내용이 오보라기 보다는 보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방송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보도내용은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또한 귀하는 그 보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방송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02-3219-51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도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인가?

우연히 검색을 하던 중 언론사 유명인사 DB 사이트에 본인의 잘못된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상에 게재된 내용이 해당 언론사의 보도라 보아도 됩니까?

이 글을 올리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지만 방명록에 짧은 사과문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명예에 누를 끼쳐놓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언론사의 대응방식에 저 같은 경우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swatch523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DB내용은 언론보도로 볼 수 없으므로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하는데요...

저는 약대생인데요, 저번 12월 7일 '○○경제신문' 네티즌 생각에 보도되었던 약대생의 한약사 시험에 대한 설문조사 기사(송○○ 기자)에 대해 할 말 있어요.

이때 기사에서는 약대생의 한약사 시험이라고 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daum측의 실수로 약대생의 한의학 시험이라고 되어 있었고 daum 측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잘못된 설문조사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신문은 이것을 변형 보도하였습니다. 또 함께 실렸던 약사의 양심 고백인가?하는 글은 이미 통신상에서 오래된 것으로 약대생이나 약사의 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글입니다. 저희 약대생들은 이런 잘못된 보도에 관해 ○○경제신문 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0174607



귀하는 지난 12월 7일 ○○경제신문에 보도되었던 약대생의 한약사 시험에 대한 설문조사기사에서 잘못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원회는 ○○경제신문 1999년 12월 7일자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 보았으나 귀하가 문제삼고 있는 여론조사 관련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보도가 정확히 어디에 보도되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에 의거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하면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제삼고 있는 기사가 정기간행물인 ○○경제신문에 게재되지 않고, 인터넷상에만 띄워진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의 권한 밖이고, 신문에 게재된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것일지라도 중재신청 자격은 기사에 거론된 자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02)732-60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

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

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을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 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여하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소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39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사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당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용의가 있다가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부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을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도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

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와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재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재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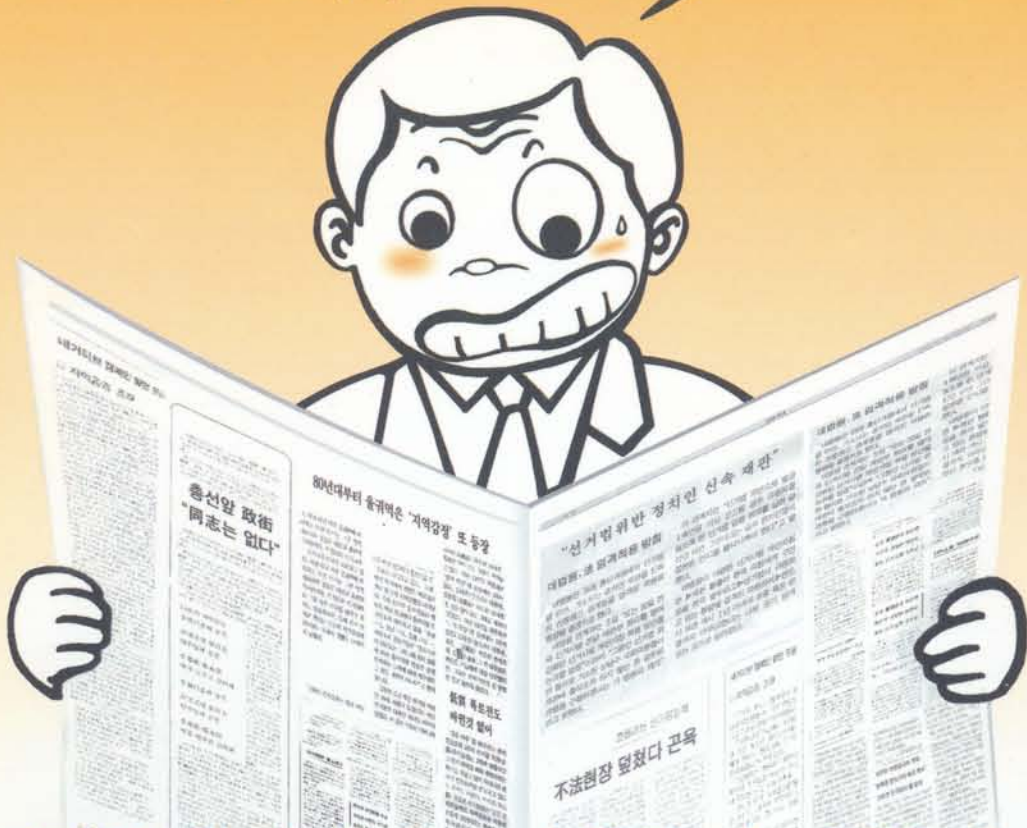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찾아 주십시오.
왜곡되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심의합니다.
- 선거기사에 대한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건을 회부받아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제보해 주십시오. (<http://www.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담: (02)732-6078, 6031

<http://www.pac.or.kr>